KRILi series ; 10

KRILi 도서관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Ⅱ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연구소

ISBN 978-89-7383-412-9
ISBN 978-89-7383-223-1 (세트)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10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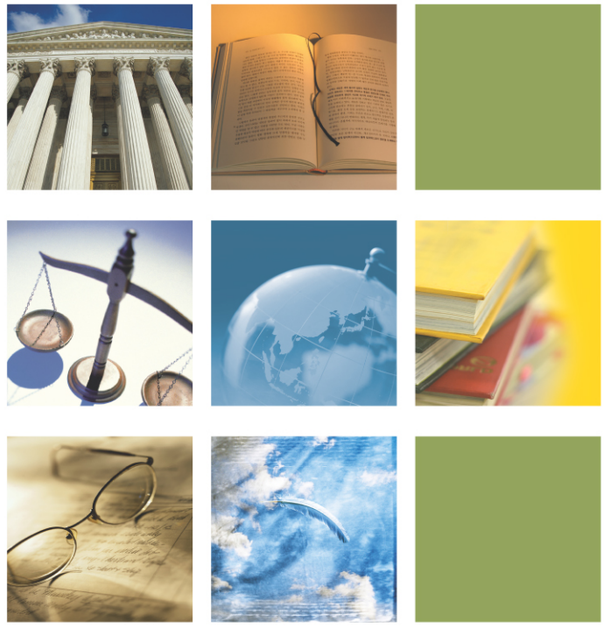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Ⅱ」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도서관연구소 웹진에서 연재되었던
주요국 도서관법 해설기사들을 엮은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2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p. ; cm. --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KRILI series ; 10)

ISBN 978-89-7383-412-9 9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223-1(세트)

도서관법(법률)[圖書館法]

021.3-KDC4
344.092-DDC21 CIP2009001677

Contents

주요국 도서관법

1. 나미비아「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 2000」 ····· 1
2. 남아프리카공화국「법정납본법 1997」 ····· 19
3. 노르웨이「공공도서관법 1985」 ····· 31
4. 노르웨이「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 ····· 39
5. 덴마크「도서관법 2000」 ····· 49
6. 덴마크「출판자료납본법 2004」 ····· 61
7. 말레이시아「국립도서관법 1972」 ····· 71
8. 모리셔스공화국「국립도서관법 1996」 ····· 81
9. 스웨덴「왕립도서관령 1996」 ····· 91
10. 스페인「국립도서관 정관 1991」 ····· 97
11. 아이슬란드「아이슬란드국립및대학도서관법 1994」 ····· 109
12. 아이슬란드「도서관법 1997」 ····· 117
13. 에스토니아「공공도서관법 1998」 ····· 125
14. 캐나다「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 135
15. 캐나다「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 159
16. 터키「국립도서관설립법」과「국립도서관이용자서비스규정」 ····· 167

나미비아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 2000」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 2000」

– 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ct 4 of 2000

1. 나미비아의 도서관활동

아프리카서남부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199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한 민주공화국이다. 한반도의 4배나 되는 큰 면적의 국가이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고원으로 되어 있고, 극도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인구는 약 200만 명 남짓으로 몽골다음으로 인구밀도가 적은 나라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인접 국가의 경우와 같이 나미비아는 1883년~1915년 동안 독일의 식민통치를 겪었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배를 받다가 최근에야 독립을 이룬 신생국가이다. 종족구성도 다양하고, 선진국의 자원독점과 높은 문맹률, 그리고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등을 이유로 국가경제발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미비아는 전국 13개 행정단위인 지역의회(Regional Council) 아래 모두 107개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현재 나미비아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61개관, 학교도서관 1,630개관, 대학도서관 9개관, 관변 연구도서관 22개관 등 모두 1,722개관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177개 도서관이 나미비아 국립도서관의 상호대차협력에 참여하며 활발한 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미비아공화국의 도서관행정 추진체계는 2000년 제정된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정부 내 도서관지원행정은 기초교육문화부에서 맡고 있

다. 장관은 전국의 도서관들이 참여하는 협약기구로서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을 설치하여, 도서관 등록과 폐관을 주관하고, 회원도서관들에게 교육훈련과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정보국은 도서관행정주무기관으로서 도서관활동을 감독하고, 재정 및 자료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정보국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나미비아도서관정보기금(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Fund)'을 운영하며, 기금의 운영은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Council)'에 의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2.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의 주요내용

'도서관정보서비스법'은 모두 5개부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이법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2부는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의 설립과 국장의 임무, '국립도서관', '나미비아도서관정보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 '도서관정보국장'은 '도서관정보위원회'와 협의하여 도서관활동을 감독하고, 교육자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서비스조건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 '국립도서관장'은 납본 및 수집을 통하여 나미비아 자료의 수집과 보존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가서지기관으로 공헌하는 것과 상호대차와 네트워킹을 주관하는 것, 국내외 정보서비스의 중심기관으로 역할 하는 것 등의 국립도서관의 주된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나미비아도서관정보기금'의 사용범위를 도서관정보국에 의해 추진되는 자원개발 및 수집이용, 네트워킹사업 등으로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법정납본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 모든 관청은 일반적 생산 문헌의 20부를 국립기록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생산 자료의 5부를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관, 장관 등은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납본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본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제9조에서 납본의무자는 해당 문헌을 발간한 후 14일 이내에 국립기

록관 및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마감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에서는 도서관정보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서 납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본관련 정책에 관하여 장관에게 자문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납본위원회는 국립도서관장, 국립기록관장, 납본처장,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지명한 위원, 기타 문헌생상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의 개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제4부는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나미비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도서관정보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14조에서 위원회는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장, 국립도서관장, 국립기록관장, 의회도서관장, 나미비아대학교 사서, 나미비아공과대학 사서 등 도서관계의 대표를 포함하고, 정보기술전문가, 도서관이용자 및 대중매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제1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하는 일과, 도서관정보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는 일, 정보자원의 개발과 정보기술네트워킹을 촉진하는 것 등으로 명시하였다. 제17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재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를 정족수로 하고, 가부동수의 의결일 경우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5부는 앞의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총칙으로서,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납본의무에서 면제되는 사항과 납본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 및 구금 등의 처벌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22조에서는 장관과 도서관정보국장, 도서관정보위원회 등이 도서관정보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를 기초교육문화부 직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24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거나 선의로 수행된 모든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면책을 설정함으로써, 관련 실무자의 사업의욕을 보장하였다. <이하 법령 전문>

「나미비아 도서관정보서비스법 2000」

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ct 4 of 2000

(2000년 2월 28일 승인, 2001년 4월 30일 시행)

이 법은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 국립도서관,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 등의 설치와 법정납본의 수행, 기타 부차적인 문제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령이다.

제1부 서론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입도서관**"은 제3조 3항에 의해서 참가한 협약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회원도서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국립도서관;

(b) 다음을 위하여 국가에 의해 건립되고 지원되는 기타 도서관들

(i) 지역사회;

(ii) 1995 공공서비스법(1995년 제13호 법령)의 제1조에서 정의된 업무, 기관 혹은 부처.

(iii) 학교;

(iv) 교육대학; 그리고

(c) 제3조 (4)항에서 회원도서관으로 공표된 모든 기관 혹은 지역.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를 의미한다.

"**문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저장된 문자, 그림, 시청각 또는 기타 인식 가능한 형태 등의 정보,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현저히 다른 것으로 개별 문헌으로 간주되는 번역 혹은 편집물을 의미한다.

"**기금**"은 제7조에 의해 설립된 '나미비아도서관정보기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은 문헌과 관련하여, 비용지불과 관계없이 다음의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문헌을 의미한다.

(a) 모든 사람

(b) 모든 사람에게 회원자격이 개방되어 있는 조직체의 회원

"**관공서**"는 다음을 의미한다.

(a) 1995년 공공서비스법(1995년 법령 13) 제1조에서 정의하는 관청, 기관 혹은 부처

(b) 1992년 지방자치법(1992년 법령 23) 제1조에서 정의하는 지방자치의회
(c) 1992년 지방의회법(1992년 법령 22) 제1조에서 정의하는 지방의회
(d) 의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구

"**기록관장**"은 1992년 기록관법(1992년 법령 12) 제1조에서 정의하는 기록관장을 의미한다.

"**국립도서관장**"은 제5조 (1)항에 의하여 국립도서관장으로 임명된 직원을 의미한다.

"**국장**"은 제4조 (1)항에 의하여 국장으로 임명된 직원을 의미한다.

"**납본**"은 제8조에서 납본처에 납본이 요구되는 문헌 혹은 정보를 의미한다.

"**납본위원회**"는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납본위원회를 의미한다.

"**도서관**"은 리소스센터, 정보센터 혹은 다큐멘태이션 센터 등을 포함한다.

"**장관**"은 기초교육문화부 장관을 의미한다.

"**부**"는 기초교육문화부를 의미한다.

"**국립기록관**"은 1992년 기록관법(1992년 법령 12)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나미비아국립기록관을 의미한다.

"**국립도서관**"은 제5조 (1)항에서 국립도서관으로 공표되었던 건물을 의미한다.

"**납본처**"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국립기록관
(b) 국립도서관
(c) 의회도서관, 또는
(d) 제8조 (1)항에서 납본처로 지정된 곳

"**규정한다**"는 것은 제21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는 다음의 사람 혹은 관공서를 의미한다.
(a) 일반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문헌의 원본을 발간하는 사람 혹은 관공서
(b) 일반적으로 나미비아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나미비아 밖에서 만들어진 문헌을 나미비아 밖으로부터 수입하는 사람 혹은 관공서

"**국**"은 제3조에서 언급되는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을 의미한다.

"**직원**"은 1995년 공공서비스법(1995년 법령 13) 제1조에서 정의되는 직원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제21조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용자위원회**"는 제6조 (2)항에서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제2조 적용

이 법은 제20조를 제외하고 국가에 적용된다.

제2부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

제3조 국의 설립

(1) 모든 회원 도서관들로 이루어지는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은 기초교육문화부에 소속된다.

(2) 자신의 도서관을 도서관정보국에 가입시키기를 희망하는 개인, 혹은 자신의 도서관을 도서관정보국에 가입시키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나 기타 기관은, 국장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입신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전 (2)항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를 받는 즉시, 국장은 신청한 당사자, 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나 기타 기관 등과 문서상 가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은 양자에 의해 상호 합의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4) 주무장관은 어떤 기관이나 건물을 관보(*Gazette*)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회원도서관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제4조 국장

(1) 장관은 기초교육문화부의 직원을 국장으로 임명해야하고, 국장은 국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2) 국장은 회원도서관에 대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a) 해당 도서관 활동을 감독한다.

(b) 도서관정보위원회와 협의하여, 그리고 기타 법령에 따라 해당 도서관을 폐관할 수 있다.

(c) 교육이나 자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d) 해당 도서관을 대신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e) 전(3)항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도서관 내에서 지불되어야 하는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 지불하는 요금, 그리고 이용자 벌금으로 해당 도서관에 지불되는 모든 금액을 결정한다.

(f) 이용자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조건을 결정한다.

(g) 이용자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과 관련한 명령을 포함하여, 해당 도서관의 적절한 기능, 그리고 도서관에서 정보기술의 이용 등을 보장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h) 주무장관과 관련 개인이나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리고「1991년 국가재정법(1991년 법령 31)」제18조에 따라서, 회원도서관의 자료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히 해당 개인이나 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다.

(3)「1991년 국가재정법」제22조 (a)항에 따라서, 회원도서관은 도서관정보위원회의 추천으로 주무장관이 규정하는 종류의 기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 할 수 없다.

(4) 국장은 가입도서관에 대하여 다음을 수행한다.
(a) 가입도서관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거나 해당 도서관을 대신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b) 재무부 및 도서관정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서 해당 목적으로 승인된 금액에서 해당 도서관에게 재정 혹은 자료 지원을 할 수 있다.
(c) 해당 도서관의 가입조건에 따라 그 활동을 감시한다.
(d) 해당 도서관에게 3개월 전 종료고지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가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은 협약에 따라 공급받은 모든 자료를 도서관정보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5) 국장은 도서관정보국에 대하여 다음을 진작할 수 있다.
(a)「1991년 국가재정법」제19조에 따라 도서관정보국에 주어지는 재산을 수령할 수 있다.
(b) 도서관정보국 가입도서관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 조정 실행할 수 있다.
(c) 만약 해당 문헌이 제8조에 의해 납본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도서관정보국에 제공하기 위한 문헌생산 목적으로 도서관정보국의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복사본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국장은 도서관정보국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의 직원들에게 자문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7) 국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제7조 (4)항에서 언급된 회계연도 동안 도서관정보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 이전까지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장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도서관정보국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국립도서관
(1) 장관은 국립도서관이 될 곳을 관보(*Gazette*)에 공지함으로써 공표하고, 부처의 직원을 국립도서관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2) 국립도서관장이 수행하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납본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하여, 나미비아에서 생산된 또는 나미비아와 관련된 자료의 장서를 구축하는 것.
(b) 충분한 국립도서관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관 자료의 수집, 교환, 폐기 또는 보존 등을 조정하고 보충하는 것
(c) 서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서지기관으로 공헌하는 것.
(d) 상호대차, 편목,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이용서비스 등을 통하여, 나미비아 안팎의 소장자료 및 기타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
(e) 정보자원의 국내외 공급센터로서 역할 하는 것.
(f) 나미비아국민에게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업무를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
(g) 도서관정보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기준의 이행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

(h) 나미비아에서 생산된 혹은 나미비아와 관련한 자료의 보존을 위한 국가센터로서 노력하는 것.
(i) 현존하는 나미비아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j) 문학 필사본의 수집 및 보존 센터로서 활동하는 것.
(k) 이 법의 목적에 따라 국장이 허락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6조 기타 도서관

(1) 국립도서관을 제외한 회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자료를 수집 개발 보충하는 것.
(b) 「1992년 기록관법」(1992년 법령 12)에 따라서, 지역 행사, 관습 및 역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거나 기록하는 것.
(c) 사람들에게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것.
(d) 이용자에게 자문 및 안내를 제공하는 것.
(e) 요청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는 것.
(f) 사람들에게 도서관정보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조성하고 책임지는 것.
(g) 국장에 의해 승인된 기능을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
(2) 제4조 (2)항 (g)호에 의해 제정된 명령에 따라, 회원도서관은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해야하고, 이는 도서관이 봉사하는 지역사회 회원들과 관련부처 사무차관에 의해 해당 목적을 위해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가입 협약의 조건에 따라, 가입도서관은 전(1)항에서 언급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나미비아도서관정보기금

(1) 이 법에 의하여 나미비아도서관정보기금으로 알려진 기금이 설치되며, 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도서관정보국의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에서 할당받는 자금
(b) 제4조 (2)항 (e)호의 조건으로 수령하는 자금
(c) 제4조 (5)항 (a)호의 조건으로 수령하는 기부금 및 보조금
(d) 기타 재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2) 기금의 자금은 나미비아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도서관정보국에서 도서관정보자원의 개발 및 이용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자원 공유의 증진과 개발
(b) 자원의 수집과 이용
(c) 정보기술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장
(d)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의 진흥
(3) 자금은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해당 목적을 위하여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위원회는 도서관정보기금의 이름으로, 「1998년 금융기관법」(1998년 법령 2)에 의해 은

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금융기관에게, 도서관정보국을 대신하여 수령한 모든 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해야 한다.

(b)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정보국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c) 위원회는 기금의 이자로 받은 자금과 기금에서 지출된 자금에 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d) 기금의 회계장부는 아래 4항에서 언급된 회계연도 말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는 「1951년 공인회계사 및 감사 법」(1951년 법령 51)의 조건에 의해 회계사 및 감사로서 등록된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e) 위원회는 아래 4항에서 언급된 회계연도 말 이후 60일 이내에 전(d)호에서 언급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고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5) 전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협약의 조건에 따라, 회원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자금은 기금으로 지불되지 않는다.

제3부 법정 납본

제8조 납본

(1) 장관은 관보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특정 장소를 납본처로 공표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이용에 제공될 목적으로 생산된 모든 문헌에 대하여 생산자는(이 법에서 달리 면제되지 않는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만일 해당 생산자가 관청일 경우, 국립기록관에게 문헌의 20부를 납본해야 하고, 또는 만일 생산자가 관청이 아닐 경우, 국립도서관에게 문헌의 5부를 납본해야 한다.

(b) 만일 생산자가 관청일 경우 국립기록관에게, 생산자가 관청이 아닐 경우 국립도서관에게 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전(2)항에서 언급된 문헌은 규정된 형식 및 품질에 의한 문헌이어야 한다.

(4) 국립도서관 혹은 국립기록관, 장관 등은 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납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조항의 규정으로부터 생산자 또는 문헌을 제외하거나 문헌의 납본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5) 관청인 생산자에 의해 전(2)항에 따라 만들어진 납본을 받는 즉시, 기록관장은 납본 문헌의 한 권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신속히 국립도서관에게 전달한다.

(6) 국립도서관장은 전(2)항과 (5)항의 조건에 따라 수령한 납본 문헌을 보유 후에 그 중 한 부를 국립기록관 이외 납본처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양도된 납본문헌은 국립도서관의 재산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7) 국립도서관장은 납본위원회와 협의 후에, 전(6)항의 조건으로 보유 중인 납본문헌을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보존목적으로 국립기록관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9조 납본시기

(1)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제8조 (2)항에서 명기된 것처럼,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문헌이 이용 가능해진 지 14일 내에 또는 특별한 경우로서 장관이 허락하는 연장기간 내에 납본문헌을 기탁할 수 있다.

(2) 관청인 생산자가 전(1)항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기록관장은 생산자에게 통고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국립기록관에게 문헌을 납본하도록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보내야 한다.

(3) 관청이외의 생산자가 전(1)항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국립도서관장은 생산자에게 통고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국립도서관에게 문헌을 납본하도록 요구하는 서면통보를 보내야 한다.

(4) 전(2)항 혹은 (3)항에서 언급된 30일의 기한까지, 생산자가 요구받은 납본문헌을 납본하지 않는다면, 기록관장 또는 국립도서관장은 경우에 따라 문제의 납본문헌을 수집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생산자로부터 수집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제10조 납본비용

납본에 따른 비용은 생산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

제11조 납본처의 의무

(1) 「1994년 저작권 및 인접권리 보호법」(1994년 시행6조)의 제29조에 따라, 납본처는 납본의 기록을 수령 보유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납본문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2) 다른 납본처와 기타 도서관 등의 도움으로, 국립도서관은 제8조에 의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서지와 전국서적생산통계 등을 편찬해야 한다.

(3)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장은 납본위원회의 추천과 합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다음을 허가할 수 있다.

(a) 납본문헌의 처분

(b) 납본문헌의 기록, 통계 혹은 국가서지 등에서 생략

(c) 납본문헌에 대한 접근 제한

(4) 만일 납본처가 합당한 기한 내에 전(1)항 또는 (2)항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문헌을 납본한 생산자는 납본처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항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만일 납본처가 합당한 기한 내에 전(4)항에 의해 작성된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생산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만일 관련 납본처가 이 법에 따르지 못할 경우, 장관은 납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관보의 공시함으로써, 제8조 (1)항의 조건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납본위원회

(1) 이 조항에 의하여 도서관정보위원회의 하위 위원회로서 납본위원회가 설치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국립도서관장
  (b) 기록관장
  (c) 국립도서관 및 국립기록관을 제외한 모든 납본처장
  (d)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지정한 위원회의 위원
  (e)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생각하기에 나미비아 문헌생산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조직에 의해 지명된 개인과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지명한 개인

(2) 전(1)항 (e)호에서 언급한 위원을 처음 임명하는 경우와 나중에 해당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서관정보위원회는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조직에게 명기된 기간 내에 납본위원회에 임명할 사람을 지명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3) 만일 전(1)항 (e)호에서 언급된 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요청기간 내 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임명할 수 없는 경우, 도서관정보위원회는 나미비아 문헌 생산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합당하게 판단되는 특정 개인을 임명해야 하고, 그렇게 임명된 개인은 해당 조항에 따라 지명되는 것으로 재직해야 한다.

(4) 전(1)항 (d)호나 (e)호에서 명시된 대로 지명 또는 임명된 납본위원회 위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위원은 위원회가 임명시기에 결정하는 해당 기간 동안 재직한다. 하지만 재직 만료 즉시 재임명될 수 있다.
  (b) 위원은 제17조 (2)항에 언급된 경우에 사퇴한다.

(5) 전(4)항 (b)호에서 언급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납본위원회의 모든 공석 또는 납본위원회 위원의 사망으로 야기되는 공석은 이 조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임명된 모든 위원은 사퇴하거나 사망한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해야 한다.

(6) 도서관정보위원회는 납본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회의는 납본위원회가 결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7) 국립도서관장은 납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들은 첫 회의에서 자신들 중에서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8) 납본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납본관련 모든 문제 또는 위원회 및 장관에 의해 언급되는 모든 문제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문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b) 납본과 관련하여 납본처의 활동을 조정하거나, 납본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납본처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c) 보존을 목적으로 납본 받은 모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립도서관장에게 허락할 수 있다.

제4부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

제13조 위원회의 설립

이 법에 의하여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가 설립되며, 위원회의 주된 사업목적은 나미비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나미비아에서 도서관정보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장

(b) 나미비아대학교 사서

(c) 국립도서관장

(d) 기록관장

(e) 의회도서관장

(f) 나미비아공과대학의 사서

(g)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i) 장관이 생각하기에 나미비아 지방의회를 대표한다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협회 또는 조직에 의해 지명되는 개인으로, 반드시 지방의회 의원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내 도서관정보 문제에 정통한 사람.

(ii) 장관이 생각하기에 나미비아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대표한다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협회 또는 조직에 의해 지명되는 개인

(iii) 기초교육문화부의 직원

(iv) 고등교육직업훈련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v) 정보방송부 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vi) 장관이 생각하기에 나미비아 도서관정보 분야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협회 또는 조직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vii) 장관이 생각하기에 정보기술 전문가, 도서관정보 관련분야, 도서관 이용자 및 대중매체 등 각각에서 해당분야 이익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3명 이하의 개인.

(2) 전(1)항 (g)호 (i)목, (ii)목 혹은 (vi)목에서 언급한 위원을 처음 임명하는 경우에는, 장관은 사전에 관련 협회나 조직에게 위원회에 임용할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은 지명을 받는 즉시 장관이 생각하기에 관련 이익집단의 이익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협회나 조직의 각각에서 한 명씩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3) 전(1)항 (g)호 (vii)목의 조건에 따라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개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안된 지명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인쇄물 및 시청각 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개인의 지명을 권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만일 전(1)항 (g)호 (i)목, (ii)목 혹은 (vi)목에서 언급된 협회 또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개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관련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타당하게 생각되는 개인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5) 장관은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하고, 위원들은 자신들 중에서 기타 상임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 (3)항에서 부과된 기능에 더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다음에 대하여 조사하고 장관에게 자문하는 일.
  (i) 장관이 위원회에 문의하는 모든 문제
  (ii) 위원회의 견해에서 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모든 문제
  (iii) 나미비아의 국립도서관 및 정보정책의 수행과 변화
  (iv) 도서관정보국을 위한 적절한 자금지원 수준
  (v) 정보자원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b) 다음을 촉진함으로써 정보 분야를 지원하는 일
  (i) 정보자원의 개발 및 활용
  (ii) 정보기술 네트워크의 조정
  (iii) 국립도서관이 정한 기준의 준수
  (iv) 납본의 조정
  (c) 도서관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
  (d) 장관의 지시를 받아 도서관정보활동과 관련된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일.

제16조 위원회의 권한

(1) 이 법에서 위원회에 대해 언급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때때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위원회에서 복무할 개인을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선출된 사람은 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 투표하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b) 모든 문제에 관해 위원회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c)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i)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해당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ii) 해당 소위원회 위원 한명을 해당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소위원회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회의 소집방식과 그에 뒤따르는 절차, 그리고 납본위원회나 기타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회의 정족수를 포함하여, 해당 소위원회 의결에 요구되는 표결 수, 가부동수인 경우에 따르는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일치하지 않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1) 전(2)항에 따라 제14조 (1)항 (g)호의 조건으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임명일로부터 3년 동안 재직한다. 그러나 재직 만료 때 재임용될 수 있다.

(2) 전(1)항에서 언급된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사퇴해야 한다.

(a) 위원이 자신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였던 기관, 단체, 이익집단 등의 회원이 되었거나 더 이상 회원이 아닌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b) 위원이 회생이 불가능한 파산자인 경우

(c) 위원이 '1973년 정신보건법'(1973년 시행18조)에 의한 정신병자로 판단되는 경우

(d) 위원이 부정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 지불의 선택사항도 없이 구금된 경우

(e) 합당한 변명 없이 연속해서 세 번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f)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장관에 의해 면직되는 경우

(3) 전(2)항에서 언급된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원의 공석 또는 위원의 사망에 의한 공석 등은 제14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임용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임명된 모든 위원은 사퇴하거나 사망한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해야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첫 회의는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의 회의는 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 열려야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하고, 만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참석 위원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신들 중 한명을 선출해야 한다.

(3) 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이루어야 한다.

(4)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이 되어야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일반 표결에 더하여 캐스팅보트를 가진다.

(5) 만일 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위원의 필수 과반수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거나 조치가 승인되었다면, 위원회의 일시적 공석을 이유로 또는 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당 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조치가 승인을 얻었던 시기에 위원으로서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의 권한으로 내려진 결정이나 조치는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

(6) 만일 위원회 위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자녀, 또는 위원의 직계 가족, 또는 위원의 파트너, 관련 기관이나 업체 등이 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되는 어떤 사안에서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즉각 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적 이해관계의 성격과 범위를 밝혀야 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위원이 해당 사항과 관련한 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7) 전(6)항을 따르지 못한 회원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2000나미비아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이나 6개월 내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진다.

(8) 위원회는 의사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위원회는 회의에서 따라야 할 절차와 준수해야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의회의 행정업무와 지출

(1) 장관은 재무부의 장관과 의논하여 위원회 위원, 납본위원회, 제16조 (c)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 또는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일을 한 모든 사람 등에게 지불해야 하는 급여와 수당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전일제로 고용 중인 사람에게는 급여와 수당이 지불될 수 없다.

(2) 전(1)항에 따라 지불되는 자금은 의회에 의해 승인된 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부 사무차관에 의해 해당 목적을 위해 배치되는 부의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5부 총 칙

제20조 위반과 벌금

제9조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위법이며, 2000 나미비아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6개월 내 구금, 혹은 벌금 및 구금 모두의 처벌에 처해진다.

제21조 규정

(1) 장관은 다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제8조 (2)항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문헌 또는 문헌의 종류, 그리고 면제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범위에 관한 규정

(b) 이 법의 조건으로 규정되기 위해 요구되거나 허가되는 모든 문제, 또는 이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

(2)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된 모든 규정은, 조항에 따르지 않거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0 나미비아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6개월 이내 구금, 또는 벌금 및 구금 모두 등의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과 임무의 양도

(1) 장관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제21조에 따른 권한을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해 장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임무를 부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2) 도서관정보국장은 이 법에 의해 국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임무를 부의 직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3) 도서관정보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의회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한과 임무를 납본위원회 혹은 제16조 (c)항의 조건으로 설립된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4) 전(1)항에 의한 장관, 전(2)항에 의한 도서관정보국장, 또는 전(3)항에 의한 도서관정보위원회 등에 의한 위임과 양도는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 있다.

(a) 장관, 국장 또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조건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b) 장관, 국장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c) 장관, 국장 또는 위원회는 그렇게 위임되거나 양도된 모든 권한의 수행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제23조 공지업무

이 법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공지는 다음의 조건이라면 전달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a) 마지막으로 기록된 개인의 주거지 혹은 직장 주소에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16세 이상의 개인에게 공지가 전달되었을 경우,

(b) 마지막으로 기록된 개인의 주거지 혹은 직장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을 경우,

(c) 마지막으로 기록된 개인의 주거지 혹은 직장 주소로 팩스로 전송되었을 경우.

제24조 의무의 제한

국가를 포함하여 누구도 이 법에 의해 모든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선의에 의해 수행되거나 생략된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제25조 1923년 포고 17의 18조, 1981년 도서관 법령과 1983년 도서관개정법령 등의 폐지

1923년 특허디자인포고의 18조(1923년 포고 17)와 1981년 도서관법령(양원제 의회의 1981년 법령 4)과 1983년 도서관개정법령(양원제 의회의 1983년 법령 4)은 이에 의하여 폐지된다.

제26조 간략 표제와 개시

이 법은 2000년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으로 불리며, 장관이 관보에 공지하여 정한 날로부터 실시된다.

[참고자료]

1) Republic of Namibia. <http://www.grnnet.gov.na/grnabout.html>

2) National Library of Namibia. <http://www.nln.gov.na/about.html>

3)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정납본법 1997」

「법정납본법 1997」

– Legal Deposit Act, 1997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납본제도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NLSA; the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은, 프리토리아(Pretoria) 소재 주립도서관(the State Library, 1887)과 케이프타운(Cape Town) 소재 남아프리카도서관(South Africa Library, 1818)이 단일기관으로 통합되어 1999년 11월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설립되었다.

남아프리카의 공공도서관서비스는 찰스 서머셋(Charles Somerset) 케이프식민지 총독에 의해 1818년 제정된 공공도서관 설치 포고령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포고령은 지구촌 오지인 남아프리카 식민지 청년들에게 세계의 지식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주세(wine tex)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설치를 규정하였다고 한다.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네덜란드개혁교회 초기 이주자들이 기증한 저명한 장서를 기초로 하여 성장하였으며, 특히 네덜란드어 문학 및 교회관련 자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인쇄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는 노력은 1842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전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인쇄 자료를 제도적으로 수집하는 납본제도는 1873년 남아프리카공공도서관이 케이프식민지의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된다.

1997년 「법정납본법」에 따라, 법정납본처(Places of Legal Deposit)로 지정된 도서관은 모두 6곳으로, 1) 블룸폰테인 소재 시립도서관서비스(the City Library Services), 2)

케이프타운 소재 국회도서관(Library of Parliament), 3) 피터마리츠버그 소재 나탈학회도서관(Natal Society Library), 4) 케이프타운 소재 남아프리카도서관(South African Library), 5) 프리토리아 소재 주립도서관(the State Library), 6) 프리토리아 소재 국립영화영상녹음기록관(the National Film, Video, and Sound Archives) 등이다. 이 중에서 케이프타운의 남아프리카도서관과 프리토리아의 주립도서관은 전술한 대로 1999년 단일기관으로 통합하여 정식명칭은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NLSA) 케이프타운 캠퍼스와 프리토리아 캠퍼스로 각각 불린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는 납본안내에 따르면, 문헌의 유형과 인쇄제작부수에 따라 납본부수와 납본처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정납본법에 의한 납본부수 규정〉

문헌의 유형	인쇄부수별 납본부수			각 납본처 납본부수					
	0-20	20-99	100-	(1)	(2)	(3)	(4)	(5)	(6)
도서: 보급판	0	1	5	1	1	1	1*	1	
도서: 양장본	0	1	1				1		
도서: 재쇄	0	1	1					1	
마이크로필름	0	1	5	1	1	1	1*	1	
지도	0	1	5	1	1	1	1*	1	
악보	0	1	5	1		1	1*	1	1
포스터	0	1	1					1	
연속간행물	0	1	5	1	1	1	1*	1	
영상필름	1	1	1						1
전자문헌(고형)	0	1	5	1	1	1	1	1*	
멀티미디어	0	1	5	1		1	1	1	1*
녹음자료	1	1	5	1		1	1	1	1*
비디오	1	1	5	1		1	1	1	1*
cf. *표시는 1부만 납본될 경우의 우선 납본처									

국립도서관에서 발간한 '2007/0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ISBN신청건수와 실제 납본부수를 비교하여 추정한 남아프리카의 출판물 납본비율은 약 60%에 그치고 있는 것

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국립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전자출판물이 전체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관련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실제 법정납본법상 '문헌' 혹은 '매체'의 포괄적 해석의 범위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요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적 출판물에 대한 법리적 혼란을 줄이고 납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자매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와 납본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분명한 명시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 '법정납본법'의 주요 내용

'법정납본법'은 남아프리카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공공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출판자는 생산하는 모든 출판물을 간행 후 14일 이내 법정납본처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제2조, 제4조). 또한 납본되는 출판물에 관한 서지정보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납본비용은 출판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그러나 출판물의 제작비용이 너무 비싸서, 납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은 해당 출판자의 신청을 받아 납본위원회와 협의하여 문제 문헌의 납본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납본의무의 이행에 따른 출판자의 재정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문제 문헌의 추가생산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법정납본처는 앞서 언급한 6개 기관과 장관이 정하는 도서관 등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장관은 각 지방마다 이들 기관 중 1곳을 지정하여 정부간행물보존소로 활용하고, 일반 출판물을 제외한 정부간행물만을 수집, 보존 및 서비스하도록 하며, 법정납본처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6조).

법정납본처의 임무는 제출된 문헌을 수령, 등록, 편목, 보존하고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법정납본처와 협력하여 국가서지와 국가출판통계를 간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간행물보존소로 지정된 법정납본처는 정부간행물의 수집과 보존을 책임지며, 정부정보에 대한 공공적 접근을 활성화하는 정부정보비스센터로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제7조).

이들 법정납본처의 장들과 정부인쇄소장, 정부간행물보존소 대표, 출판계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법정납본위원회는, 이 법에서 다루는 납본관련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장관에게 자문하고 권고하며, 법정납본처 간의 문제사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제8조).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은 제9조 및 제10조의 제재조항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납본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출판자에게는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납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문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직접 구매하거나, 절판으로 구입이 어려운 경우 복제를 실시하고, 출판자로부터 해당 구매 혹은 복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제10조).

또한 이 법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사항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관이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별도조항을 둠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이하 법령전문>

「법정납본법 1997」

- 법률 제54호 -

이 법은, 출판 기록물의 법정 납본을 통해 국가기록유산의 보존을 규정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간행되거나 남아프리카어로 번역된 출판기록물을 보존 및 편목하고 그 접근을 보장하며, 또한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과 법적납본위원회에 관해 규정하고,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남아프리카공용어 전문은 1998년 11월6일 대통령에 의해 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정의

이 법령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제8조에서 언급된 법정납본위원회를 의미한다.

'**부**'는 예술문화과학기술부를 의미한다.

'**문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활자, 도표, 그림, 소리 또는 기타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려는 목적의 모든 대상을 의미한다. 또한 그 정보 내용과 명료성 혹은 물리적 표현 등에서 해당 문헌과 현저히 다른 문헌의 모든 번역본이나 개정판은 개별문헌으로 간주된다.

'**매체**'는 지속적인 열람, 청취 또는 시청을 목적으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장관**'은 예술문화과학기술부 장관을 의미한다.

'**정부간행물**'은 국가나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 그리고 1992년 공공기관신고법령(1992년 법률 제93호) 제3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등재된 반관조직이나 기타 기관 등에 의해 출판된 문헌을 의미한다.

'**정부간행물보존소**'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법정납본처를 의미한다.

'**법정납본처**'는 제6조에서 언급된 도서관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규정되었다**'는 것은 제12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들의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부수 혹은 여러 장소에서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a) 구입, 임대, 대차, 구독, 사용허가 또는 무료 배포 등을 통해서 모든 공중의 일원에게; 또는

(b) 공중에게 그 자격이 개방되어 있는 협회나 학회의 회원

'**출판자**'는 공공이건 민간이건 다음과 같이 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a) 문헌을 출간하고 배포하는;

(b) 개인이나 단체 혹은 다른 이에 의해서건,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문헌 생산의 재정적 위험을 위임하고 감수하는;

(c) 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자에 의해 해외에서 제작된 문헌, 또는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시장용으로 특별히 개작된 문헌 등을 수입하는,

'**이 법**'은 제12조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

제2조 문헌 및 정보의 납본

(1) 출판자는 개개의 간행물에 대해, 각 번역본과 매체 유형마다 규정된 형식과 품질의 사본을 규정된 수만큼 규정된 법정납본처에 공급하여야 한다. 정부간행물을 제외하고 규정된 문헌의 부수는 5부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출판자는 개개 간행물마다 해당 문헌에 딸린 규정된 정보를 국립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비용

제2조 (1)항에 따라 제출된 문헌, 제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그리고 해당 문헌 및 정보의 제출과 제공에 드는 비용은 출판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

제4조 납본 시기

이 법에서 별도 규정된 바가 없다면, 출판자는 해당 출판물이 간행되고 14일 이내에 제2조 (1)항에서 언급된 문헌을 신속히 제출하고, 제2조 (2)항에서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면제

(1) (a) 만일, 어떤 특정 문헌의 높은 출판비용이나, 특별한 혹은 노동집약적인 생산기법을 이유로, 제2조 (1)항의 조건에 따라 모든 법정납본처에 무료로 해당 문헌 1부를 납본해야 하는 출판자가 해당 문헌의 출판에서 심각한 재정 혹은 기타 어려움을 겪는다면, 장관은 출판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장관에 의해 지정된 바대로, 법정납본처 혹은 그 일부에 해당 문헌을 공급해야 하는 출판자의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

(b) 장관은 전(a)항에 해당하는 출판자에게서 남아프리카공화국도서관이나 국립영화영상녹음기록관에게 문헌 1부를 납본하는 의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 국립도서관에게 제2조 (2)항에 따른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c) 장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도서관 혹은 국립영화영상녹음기록관 등에게 특정 문헌을 납본하는 의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고충을 겪는 출판자에게 재정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승인되는 재정지원은 해당문헌의 추가생산

비용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만약 법정납본처의 어느 기관이 제2조 (1)항에 의한 특정 문헌이나 특정범주 문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납본처의 장은 해당 문헌 또는 해당범주 문헌들 1부를 제출하는 의무를 출판자에게 서면으로 면제할 수 있다.

(3) 만약 출판자가 이 조항에 따라 국립도서관에게 문헌1부를 납본하는 의무를 면제받는다면, 해당 출판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헌과 관련하여 제2조 (2)항에서 명시한 서지정보를 국립도서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4) 특정 문헌 혹은 특정 범주의 문헌에 대하여 제1조 (a)항이나 제(2)조에서 승인된 면제는, 사정에 따라 장관 또는 해당 납본처의 장에 의해 서면으로 철회될 수 있다.

제6조 법정납본처

(1) 법정납본처는 다음과 같다.

(a) 블룸폰테인 시립도서관서비스

(b) 케이프타운 국회도서관

(c) 피터마리츠버그 나탈학회(Natal Society) 도서관

(d)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도서관

(e) 프리토리아 주립도서관

(f) 특정 범주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토리아 국립영화영상녹음기록관 그리고,

(g) 기타 특정 범주의 문헌들을 목적으로, 장관에 의해 규정된 기타 도서관 또는 기관

(2) (a) 장관은, 각 주에서 도서관을 관장하는 집행위원회 위원의 권고에 따라, 각 지방 마다 최소 1곳의 법정납본처를 지정하여 정부간행물 보존소로 활용한다. 정부간행물 보존소는 모든 정부간행물의 1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기타 부류의 문헌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b) 장관이 생각하기에, 해당 법정납본처가 제2조 (1)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고, 정부간행물 이외 문헌을 입수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전 (1)항 (b)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간행물보존소는 현존 법정납본처에서 지정될 수 있다.

(3) 장관 또는 각 지방 집행위원회의 관련위원은, 사정에 따라 해당 목적으로 국회 또는 관련 지방의회에 의해 승인된 자금에서, 법정납본처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총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법정납본처의 임무

(1) 법정납본처는 미리 규정한 제한에 따라서 제2조 (1)항에 따라 제출된 문헌들을

(a) 수령, 등록, 보유, 보존하여야 한다. ;

(b) 편목하거나 목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 그리고,

(c)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립도서관은 다른 지역의 법정납본처와 기타 관련 도서관 혹은 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다음을 편찬하여야 한다.

(a) 국가서지,

(b) 제2조 (1)항에 따라 제출되는 문헌과 제2조 (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지정보에 기초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문헌의 간행통계.

(3) 남아프리카국립도서관과 국립영화영상녹음기록관은 다른 법정납본처의 도움을 받아, 현재 및 미래의 이용을 위해 제2조 (1)항에 따라 제출되는 매 문헌의 최소 1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정부간행물보존소는,

(a) '1992년 공공기관신고법령(1992년 법률 제93호)' 제3조에서 명시된 정부 및 기관 등에 의해 보유된 정부간행물과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접근을 활성화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b) 공중이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정보자원에 대한 공공적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5) 전(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납본처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제2조 (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법정납본처에 공급되는 특정 범주의 문헌들을,

(a) 처분할 수 있다.

(b) 목록 혹은 장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c) 국가서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또는

(d) 접근에 제한을 둘 수 있다.

(6) 만일 법정납본처가 전(1),(2),(3),(4)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보에 공지함으로써, 모든 출판자에게 제2조 (1)항에 따라 문헌을 해당 법정납본처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납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법정납본위원회

(1) 이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정납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제6조 (1)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정납본처의 장

(b) 정부인쇄소의 장

(c) 규정된 방식으로 장관에 의해 지정된 모든 지방의 정부간행물보존소 대표 1인, 그리고

(d) 규정된 방식으로 장관에 의해 지정된 출판계 대표 2인

지정방식을 지시하는 규정이 투명성과 대표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2) 장관은 규정된 방식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의 대표자를 포함한 기타 관련 부서들을 대표하는 4인 이하의 위원을 추가로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

(3) 장관은 출판자 및 도서관정보서비스부와 같은 다양한 이해집단들과 협의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위원 중 1인을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연임할 수 있는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4) 위원회의 목표는 이 법령의 시행을 조정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5) 위원회는

(a) 이 법령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해야 한다.

(b) 이 법령에 따라 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모든 규정에 대해 장관에게 권고해야 한다.
(c) 납본 업무에 관하여 다양한 법정납본처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d) 이 법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정납본처에게 조언해야 한다.
(e) 이 법에서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어떤 과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분과위원회나 실무그룹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조사나 과업 기간동안 해당 분과위원회나 실무그룹에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f) '1992년 공공기관신고법령(1992년 법률 제93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납본처의 활동과 재무에 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허용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장관이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타당한 수준의 여비 및 필수 비용 이외에, 위원회의 위원이나 분과위원회 혹은 실무그룹의 위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될 수 없다.

제9조 위반

제2조, 제3조, 제4조 혹은 제5조 (3)항을 위반하는 출판자는, 유죄에 대해 20,000랜드(역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화폐단위 Rand) 이내 벌금형이 부과되어야 한다.

제10조 불응에 대한 구제조치

(1) (a) 출판자가 제2조 (1)항에서 요구하는 문헌을 한 곳 이상의 납본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장관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문헌을 30일 이내에 해당 법정납본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b) 만일, 납기 만료 까지 해당 문헌을 문제의 법정납본처에 제출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은 즉시 구매를 통해 해당 문헌을 수집하거나, 해당 문헌이 절판인 경우 신뢰할 수준의 문헌복제를 실시하고, 출판자로부터 해당 구매 혹은 복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2) 만약 담당공무원이 해당 문헌을 입수하거나 복제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전(1)항에 따른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면, 해당 부처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출판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1) 장관은 이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해당 부서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전(1)항에 따른 위임은 장관 자신에 의해 문제의 권한 실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규정

장관은 다음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이 법령에 따라 규정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사안
(b) 일반적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정되는 것이 필요하거나 유리한 모든 사안

제13조 법령의 국가 구속력

이 법은 제9조를 제외하고 국가에 적용된다.

제14조 법률의 폐기

별표에 기술된 법률은 이 법에 의하여 셋째 칸에 기술된 범위까지 폐기된다.

제15조 간략표제 및 개시

이 법은 '1997년 법정납본법'이라 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일자에 관보에 공표함으로써 그 효력이 개시된다.

[별표] 폐기 법령

법령의 연번 및 연도	제 목	폐기 범위
1977년 법률 제11호(트란스케이)	국립도서관서비스법, 1977	제12조
1978년 법률 제8호(보프다츠와나)	보프다츠와나 국립도서관서비스법, 1978	제19조(5)항
1980년 법률 제18호(크와줄루)	크와줄루 도서관법, 1980	제7조
1980년 법률 제19호(씨스케이)	씨스케이 도서관서비스법, 1980	제12조
1981년 법률 제12호(벤다)	벤다 국립도서관서비스법, 1981	제14조(4)항
1982년 법률 제4호(가잔쿨루)	국립도서관서비스법, 1982	제14조(4)항
1982년 법률 제17호	정부간행물 법정납본법, 1982	전체
1983년 법률 제10호(콰콰)	국립도서관서비스법, 1983	제14조(4)항
1991년 법률 제7호(레보와)	중앙도서관서비스법, 1991	제18조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 Annual Report 2007/08. [2009.4.15] <http://www.nlsa.ac.za/NLSA/News/publications>

2) Legal Deposit Act 1997 in Republic of South Africa. [2009.4.6] <http://www.nlsa.ac.za/NLSA/abou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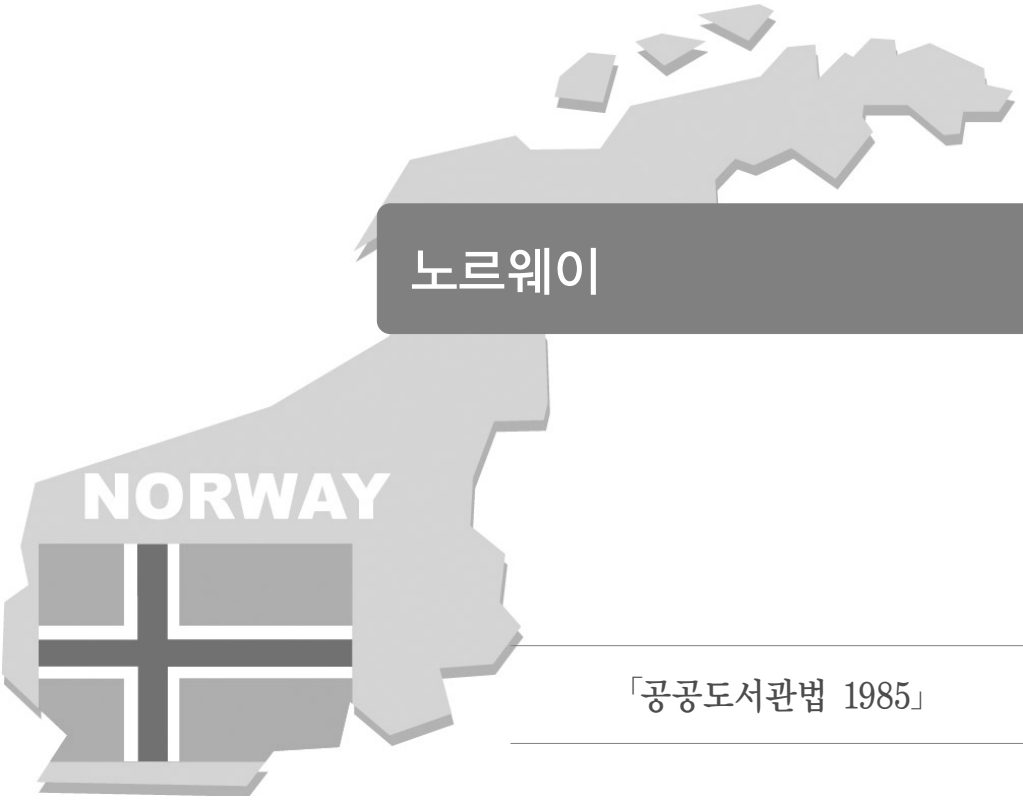

노르웨이

「공공도서관법 1985」

「공공도서관법 1985」

– 공공도서관에 관한 1985년 12월 20일 제108호 법령

1. 노르웨이 도서관활동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스웨덴과 등을 붙이고 대서양을 굽어보는 노르웨이는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일본이나 독일보다 조금 넓은 국토면적에 약46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소득을 자랑하고 있다.

선진 유럽의 각국이 그렇듯이 분권적 지방자치문화에 기초하는 노르웨이 역시 1935년 처음 제정된「도서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전국 19개주(州)[fylke]와 431개 기초자치단체[kommune]에서는 2004년 현재 모두 892개 공공도서관이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르웨이 전국에는 336개의 학술연구전문도서관과 3,400여개의 학교도서관, 600여개의 박물관 등을 포함하여 모두 5,400여개의 도서관 박물관 등이 운영중인 것으로 소개된다(Annual Report for ABM-Utvikling 2004).

현재 노르웨이의 도서관관련 정책업무는 '노르웨이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당국(Norwegian Archive, Library and Museum Authority, 이하 ABM-Utvikling)'이 담당하고 있다. ABM-Utvikling은 2003년 1월 1일에 발족한 통합기구로서 직전까지 도서관법에 근거해 운영되었던 '노르웨이 공공도서관 관장회의(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Public Libraries)'와 '노르웨이 박물관국(Norwegian Museum Authority)', 그리고 '연구

도큐멘테이션과 학술 및 전문도서관 담당 국가사무국(the National Office for Research Documentation, Academic and Special Libraries)'을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ABM-Utvikling은 정부의 '문화교회부(the Ministry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를 대신하여 노르웨이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분야에 있어 자문과 집행기능을 수행하며, 이들 분야 서비스의 전반적인 진흥을 위한 부처간 공동사업을 주도하기도 한다.

ABM-Utvikling은 2004년 '문화교회부'와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의 요청으로 노르웨이 모든 도서관을 포함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받고, 2006년도에는 장래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서비스의 합리적인 생존전략을 고민하는 『도서관개혁 2014』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노르웨이 도서관서비스가 이전의 전통적 서비스모델을 혁신하고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매체로서 변신하기 위한 전략과제로서, 노르웨이 전국의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연계하는 '전국 도서관(The Norwegian Nationwide Library)'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은 물론 사립도서관과 대학 및 전문도서관 등의 전통적 정보자원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새롭게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인터넷 지식자원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식자원의 확장을 통해, 전 국민의 지식생산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전국의 공공도서관 협력 및 지원체제에 대한 정비와 함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 강화, 재가학습자 및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접근성 확장,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선도성 강화, 대학 및 연구도서관의 개방 및 공유, 전국적인 초고속 무선 네트워크의 보급, 전국적인 상호대차 및 원문서비스제체 구축, 정보서비스확대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등의 개혁과제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노르웨이 공공도서관법의 개요

노르웨이 공공도서관법은 모두 4개 장(章)과 16개 조(條)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비교적 간결한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제1장은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서비스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제1조에서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서적 및 정보의 보급을 통해 계몽 및 교육, 기타 문화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지역공공도서관과 주립공공도서관, 중앙정부의 자문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 활동의 전반을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2장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당국이 운영하는 시립공공도서관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모든 시 당국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며, 제5조에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도서관장을 임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의 조직적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과 학교교육을 연계하는 협력적 정보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 공공도서관 활동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특징적인 조항으로 지적된다.

제3장은 주립도서관의 활동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주민서비스를 우선하는 시립도서관과는 달리, 상급 도서관으로서 지역 도서관활동을 촉진하는 협력 및 지원의 임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9조에서 주립도서관은 지역 내 도서관상호대차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공동노력에 책임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심도서관으로서 지역 내 낙오지에 대한 이동도서관이나 선상도서관의 운영을 명시하고 관련 자치단체와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조에서 주립도서관은 도서관문제에 대한 자문과 회의개최, 교육 등을 담당하고, 지역 내 학교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서 주립도서관은 중앙정부의 자금배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중앙정부의 연구 및 계획수립에 협력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국가 도서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노르웨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당국(ABM-Utvikling)'이 문화부를 대신하는 도서관 주무기관으로 제시되고, 제14조에서는 특별한 도서관 사업을 위한 중앙정부의 특별보조금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공공도서관에 관한 1985년 12월 20일 제108호 법령」

제1장 공공도서관서비스의 목적과 활동

제1조 목적

공공도서관의 임무는 정보의 보급과 서적 및 기타 적절한 정보자료를 노르웨이 거주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계몽, 교육 및 기타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개별도서관은 아동 및 성인서비스에 있어서, 고품질의 포괄적 최신자료의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도서관 활동은 공중에게 지향되어야 하며, 그 서비스는 적극 홍보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들은 국가적인 도서관 시스템의 일부분이 된다.

제2조 법의 범위

이 법은 시(市)가 운영하는 지역공공도서관(제2장)과 주(州)가 운영하는 주립도서관(제3장), 그리고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및 자문서비스(제4장) 등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 활동 전반에 적용된다.

공공도서관 활동은 병원 및 보건기관의 환자를 위한 서비스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대출 협력 및 서지 통정 등

도서관은 대출 협력, 서지 통정 그리고 통계 및 연차 보고서의 편찬 등에 관한 표준화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 및 교회업무 담당 부처[이하 "문화부"(역자)]'는 필요한 경우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시립(Municipal) 공공도서관

제4조 일반 조항

제1장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시 당국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시 당국 자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다른 시 당국 및 주 당국 등과 협력하여 부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시 당국은 문화부에 의해 제정된 권고지침에 기초하여 공공도서관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직원

각 시 당국은 전문 자격을 갖춘 도서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문화부는 이 조의 규정상 예외를 허용하고, 자격 요건 및 과도 계획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와의 협력

시 당국 산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에는 조직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 문화부는 해당 협력에 관한 권장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제7조 조정기구 (폐기)

제3장 주립(County)도서관

제8조 일반 조항

제1장에서 정한 주(州) 수준의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주 당국은 전문 자격을 갖춘 도서관장에 의해 운영되는 주립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경험적 여건에 비추어, 문화부는 모든 주 당국이 주립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요구조건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운영을 위해 문화부에 의해 제정된 권고지침에 기초하여 주립도서관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 도서관 상호대차

주립도서관은 주 당국 내에서 도서관 상호대차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간 대출협력을 조직하며,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연합계획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주립 도서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이동도서관이나 선상도서관을 통한 직접적인 대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주립도서관은 하나 이상의 시 당국과 함께 공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기구 등

주립도서관은 지방 당국에 자문하고, 전문사서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며, 도서관 문제들에 관한 회의와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주립도서관과 주 학교당국 사이에는 조직화된 협력이 있어야 한다.

주립도서관과 주 학교 당국간의 협력은 도서관의 전문지식을 학교 당국의 재량에 둔다는 협약의 방식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 특별의무

주 당국은 제3조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자금 배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중앙정부 당국의 연구 및 계획수립 등에 조력해야 한다.

제12조 조정기구(폐기)

제4장 중앙 정부의 임무

제13조 노르웨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당국(ABM–Utvikling)

이 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임무는 문화부를 대신하여 노르웨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당국(ABM-Utvikling)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14조 중앙정부 특별 보조금

중앙정부의 특별보조금은 개별 자치단체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가도서관체제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전문적인 도서관 사업을 위해 주어질 수 있다. 해당 보조금에 대한 상세규정은 문화부장관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15조 왕실 권리(폐기)

제16조

이 법은 국왕이 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관련 법령들의 변동조항은 동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법은 1986년1월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자료]

1) The National Library of Norway. <http://www.nb.no/english>
2) The Norwegian Library Association. <http://www.norskbibliotekforening.no/index.php?c=234&kat=About+us>
3) The Norwegian Archive, Library and Museum Authority. <http://www.abm-utvikling.no>
4) The ABM-Utvikling. 2006.『Library Reform 2014』<http://www.abm-utvikling.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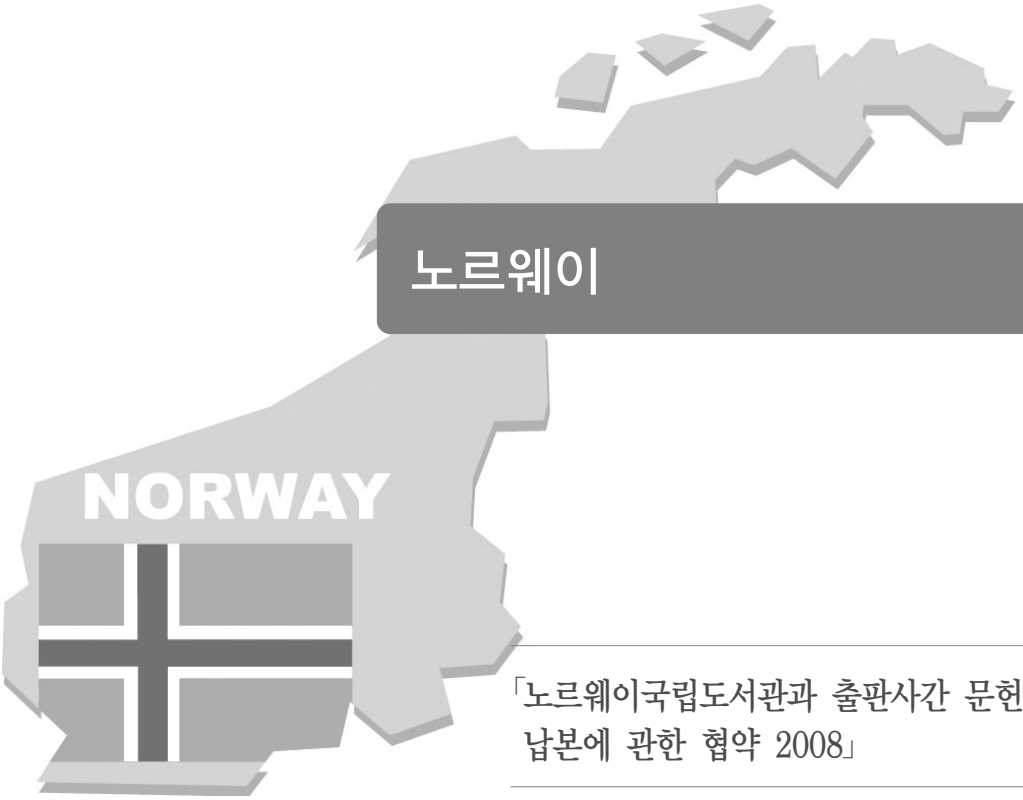

노르웨이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

– 국립도서관의 장기디지털보존소 운영을 목적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2008년 9월 29일 노르웨이출판사협회와 출판물 납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납본법령과 저작권법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노르웨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와 잡지의 원본을 수집하고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납본협약'은 납본법 및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도서관의 납본자료에 대한 수집 및 이용권한을 인쇄원본에서 디지털 파일로 확대하기 위하여, 출판사들과 체결하는 별도의 협약을 소개하는 것이다.

납본법상 노르웨이국립도서관에 납본되는 도서와 잡지는 인쇄본으로 수집된다. 최근의 출판기술에서는 도서와 잡지의 제작과정에서 디지털데이터가 발생하고 있고, 간혹 디지털 매체로 유통되는 경우 디지털본이 함께 수집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서와 잡지의 경우 인쇄본만이 유통되고 결국 인쇄본만이 납본되고 있다.

이 협약은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의 디지털장기보존소(Digital Long Term Repository) 운영을 목적으로, 인쇄본으로 출판되는 도서와 잡지의 디지털데이터를 출판사로부터 제출받아, 국가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도모하고, 이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서 허락하는 도서관 구내 열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출판사와 저작자 등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존시스템에서 자신의 출판물을 보존할 수 있고, 도서관은 소장 도서와 잡지에 대해 전자적 방식의 편리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라 도서관은 보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제작할 수 있고, 기관의 단말기를 통하여 개인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9년 7월 9일 법령 제32호 납본법령에 다르면, 공중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노르웨이의 모든 출판물은 노르웨이국립도서관 라나분관(the National Library of Norway, Rana Branch), 오슬로대학교도서관(the University of Osolo Library), 노르웨이영상원(the Norwegian Film Institute) 등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본에 따른 보상은 없고, 납본에 소요되는 우편비용 역시 납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납본부수는 인쇄문헌, 마이크로폼, 사진 등은 7부, 기타 녹음자료, 필름, 비디오영상, 전자문헌, 복합매체 등은 2부,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은 1부를 각각 납본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납본 문헌의 형식이나 품질은 출판물로서의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을 유지하고, 문헌에 따르는 겉표지, 포장상자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납본의 시기는 가능한 신속히 제출을 요구하지만, 최장 1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납본법에서 규정하는 '전자문헌'은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디스켙, 자기테이프, 카세트 등의 고형매체에 고착하여 50부 이상 제작되는 전자적 형식의 문헌을 말하고 이는 2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과 텔레비전, 데이터통신망 등에서 온라인 전송으로 제공되는 전자문헌의 경우는 개별 문헌에 대하여 보존소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2부가 납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 전자문헌은 무조건 납본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온라인 전자매체는 보존소의 요청에 의해서 납본의 이행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하 협약전문>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

제1조 목적과 범위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법정납본법(일반적으로 유통 중인 문헌의 법정납본에 관한 법령)과 2007년 11월 23일 제1281호 규정(2008년 1월부터 발효)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FOR-2001-12-21-1563)에 대한 규칙의 조항에 의거하여 노르웨이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와 잡지의 사본을 수집한다. 도서와 잡지는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납본된다. 이것은 종이매체로 배포되는 도서와 잡지는 디지털버전이 아닌 문서형태로 납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지어 문서형태로 판매된 도서와 잡지의 제작을 기초로 전자파일이 생성되었더라도 디지털형태가 아닌 문서형태로 납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보존 및 보안을 목적으로 이 협약에 포함되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디지털 형태 사본을 저장하고, 이를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의 구내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노르웨이국립도서관에 의해 설립된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저작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출판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노르웨이국립도서관으로 양도되는 모든 권리는 독점할 수 없다. 그것은 양도되는 모든 권리는 비상업적 용도로 양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출판사의 사업과 경쟁하여 도서의 배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

이 협약은 노르웨이저작권법, 법정납본법, 저작권법에 대한 규정 또는 이 협약에 대한 양자간 실시되는 모든 사용권 협약 등에 근거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어떤 당사자도 이 협약에 근거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조 납본

a. 제작파일

출판사는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는 저작물 제작의 기초를 형성하는 디지털파일을 지속적으로 납본한다.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납본된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개요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제작파일은 PDF/A(CMYK) 형식으로 납본되고 있다. 그것은 출판물에 포함된 모든 그림 자료는 인쇄품질을 가져야 하고, 문자자료는 숨겨진 텍스트형식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일명은 노르웨이국립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가능하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파일 제출의 실용적 수행 방법을 출판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XML 형식에 기초한 구조의 표식방법에 대한 국가기준을 설정하여,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개방적이고 공급자 독립적이며, 표준화된 형식으로 납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메타데이터

출판사는 노르웨이국립도서관에 이 협약의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납본해야 한다. 메타데이터는 이 협약에 첨부된 부록1에 의거하여 납본되어야 한다.

제3조 사본의 제작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보존과 보안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본을 만들고, 이 협약의 제4조에 따라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의 구내에서 해당 사본을 열람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4조 노르웨이국립도서관 구내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열람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기관의 구내에서 사진복사와 출력 등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저작권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에서 기술되어 있는 해당 내용에 따라서, 자신의 구내에서 제공되는 단말기를 통해, 개인에 의한 연구목적 또는 개인적 연구목적에 대해, 이 협약에 해당되는 모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이 도서관 구역 밖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제공하려면, 특별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 기존 협약은 모든 해당 권리를 출판사에게서 노르웨이국립도서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조 메타데이터의 이용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이 협약의 제2조 b항에 의거 제출된 메타데이터를 자신의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 다른 도서관들은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의 목록에서 메타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의 목록에서 취하는 메타데이터는 상대 당사자의 웹 포탈 및 검색 엔진과 기타 비사업적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장서의 활용 및 이용을 증대시키려는 노르웨이국립도서관 측의 적극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결과로 이 협약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 또한 증대될 것이다.

제6조 권리 허락

출판사는 자신이 이 협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출판사의 접근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출판사가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이 협약에 의해 포함되는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의 아카이브에서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사본을 해당 출판사에게 무료로 제

공해야 한다.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출판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접근권이 주어지는 서비스를 개설하여야 한다.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은 해당 출판사와 서면 협약 없이는, 다른 저작권자나 저작권 보유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전체 혹은 부분에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본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위반

어느 한 쪽에 의해 모든 자료에 대한 계약위반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위반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되었어야 한 이후 적절한 기일 내 위반사항을 공지하고, 해당 공지가 주어진 후 1개월 이내 위반이 개선되지 않는 한, 상대측은 협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9조 협약기간

이 협약은 서명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되어야 한다. 양측이 협약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시기 이후 협약은 한번에 일년씩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다. 협약의 해지는 최소 1개월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종료

계약위반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에 의해서, 협약이 종료된 경우, 이 협약에 의해서 양도된 모든 권리는 출판사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출판사는 디지털 버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보존과 보안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디지털 버전을 저장하는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의 권리는 협약의 종료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르웨이국립도서관 측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협약 제4조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열람시키는 노르웨이국립도서관의 권리는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

양측의 이 협약에 대한 이행 혹은 해석과 관련한 분쟁 시, 해당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 방식에 의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 6주 이내 협상에 대한 양측의 요구사항이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은 법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재판 관할은 오슬로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두개 사본이 각 당사자마다 하나씩 준비되었다.

오슬로, 2008.9.29

[참고 1]

노르웨이 납본법령/시행령
- 주요 조항 -

[납본법령]

제4조 납본되어야 하는 것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문헌은 다음과 같이 납본되어야 한다.

- ○ 종이문헌 또는 유사종이매체, 마이크로필름, 사진 등은 7부
- ○ 녹음, 필름, 비디오, 전자문헌, 기타 복합매체는 2부
- ○ 방송프로그램 녹화물은 1부

해외에서 출판된 문헌은 노르웨이의 출판사가 생산하거나, 또는 노르웨이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납본되어야 한다.

국왕은 납본의무를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납본 문헌의 형식과 품질, 그리고 문헌에 동반되는 메타정보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 납본의무자와 기타 납본조건

납본의무는 공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문헌의 출판사, 인쇄자, 수입자 등에게 주어지며, 또한 법이나 허가에 의해 방송에 종사할 자격을 갖는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다.

문헌은 보상 없이 납본되어야 한다. 만일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자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경우, 납본소는 신청을 받아 해당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문헌을 납본소에 보내는 비용은 납본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한다.

국왕은 누가 납본의 의무를 가지는지, 납본되어야 하는 문헌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언제 보내야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법에 따른 납본자가 부재할 때

납본자가 파산이나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납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처벌

이 법에 따른 관련조항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벌금형에 처한다.

[납본법시행령]

제1조 형식과 품질

문맥으로서 분명하거나 특별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문헌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형식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납본 원본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문헌의 커버, 상자 등을 포함여야 한다.
납본 원본은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제4조 납본시기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판사와 수입자는 문헌이 공중에게 제공되는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히 납본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문헌이 제작되고 1개월 이내에 납본하여야 한다.
납본소는 납본자료를 보내는 별도의 기한에 대하여 납본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납본을 위해 문헌을 보내야 하는 주소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라나분관(Rana Branch)은 종이문헌, 마이크로필름, 사진, 복합매체 문헌, 전자문헌, 방송프로그램녹음자료 등에 대한 납본처이다.
오슬로대학교도서관은 녹음자료 납본처이다.
노르웨이영상원은 필름과 비디오영상에 대한 납본처이다.

제9장 전자문헌 제30조 범위

최소 50부 이상으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디스켈, 자기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의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전기통신, 텔레비전, 데이터통신망 등의 온라인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전자문헌은, 개별 문헌마다 납본처의 특정한 요구가 있을 때 2부가 납본되어야 한다.

[참고 2]

노르웨이 저작권법
- 도서관복사서비스 관련조항 -

제12조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사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적 사용을 위한 출판 저작물의 1부 복사는 허용된다. 해당 복사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저자는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연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왕은 보상의 분배와 관련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서문의 규정은 다음의 권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a) 건물의 건축을 통해 건축상의 작품을 복사하는 권리
b)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기계가독형식으로 복사하는 권리

c) 기계가독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기계가독형식으로 복사하는 권리
d) 복사물이 원본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진복사, 투사 혹은 압인 또는 기타 유사 복제 수단에 의해 예술작품을 복사하는 권리

서문의 규정은 다음의 복제에 대해 외부 도움을 약속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a) 음악작품
b) 영화작품
c) 조각 작품, 직물회화, 예술적 수공예술품 및 응용예술품 등
d) 기타 예술작품의 예술적 복제

장애인은 이 규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저작매체의 불능장치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득을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외부 도움을 받아 음악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의 복제를 행할 수 있다.

이 서문에 따라 제작될 수 없는 복사는, 제2조에 배치되는 저작물의 표현을 기초로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출판물이 제53조 3항 제2호에 의해 필요하지 않다면, 복사본이 안전한 기술적 보안장치의 우회적 접근의 결과이거나 그 주된 문제가 되는 복사를 기초로 하는 경우 제작될 수 없다.

제16조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의 복제

국왕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교육 및 연구기관 등이 보전 및 보안, 기타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제작하는 권리에 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왕은 당해 기관의 구내에서 단말기를 이용하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및 교육기관 등이 개인이용자들에게, 연구 또는 개인적 조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a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확장된 공동 허락

제16조 서문에서 기술된 대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은 소장된 출판물의 복제를 제작할 수 있고, 제36조 서문에 따라 확장된 공동 허락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중에게 해당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Act no. 32 of 9 June 1989 Relating to the Legal Deposit of Generally Available Documents. <http://www.nb.no/fag/for_utgjevarar_og_trykkeri/pliktavlevering/legal_deposit#Instructions>
2) The National Library of Norway. <http://www.nb.no/english>

덴마크

「도서관법 2000」

▌ 덴마크

「도서관법 2000」

– 2000년 5월 17일자 제340호 법령

덴마크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주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분관 및 이동도서관 등으로 구분되는 3단계의 위계적 서비스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272개 자치단체에는 16개의 주립도서관을 포함하는 227개 공공도서관과 447개 분관 및 48개 이동도서관을 합하여 모두 72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인구 540만 명에 비교하면 이동도서관을 제외하고도 1관 당 약 8,000명의 봉사인구로 보급되어 있는 셈이다. 앞서 소개되었던 뉴질랜드의 1관 당 13,400명과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보급수준이며, 우리나라의 1관당 봉사인구 86,000여명 수준(2006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는 무엇보다 1920년대 도입되었던 선구적 공공도서관법의 의무조항을 기회로 하여 일찍부터 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 설치를 추진해왔던 국가적 노력의 결과로 여겨진다.

덴마크 도서관법은 초기 공공도서관법의 이념적 취지를 이어받아, 모든 자치단체에게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통적 의무를 지우고, 인터넷접근을 포함하는 모든 도서관 자료에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무료이용의 기본원칙을 승계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도서관법은 서비스환경의 기술적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문속달서비스 및 컨설팅서비스 등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도서관들에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변화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00년 도서관법은 인터넷시대 덴마크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연계하는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도서관인프라의 개발에 있어

보다 유연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매체와 관련하여 보다 확장된 역할을 부여하는데 법 개정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보다 편리한 검색을 실현하는 인터넷 통합목록을 구축하고, 모든 학술도서관들을 상호대차시스템에 참여시키고,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입법의 동기를 구하고 있다.

덴마크 도서관법은 모두 4개 부 3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공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의 내용상 특징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도서관의 목적 및 서비스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제3조에서는 모든 지방의회(The Municipal Council)는 아동 및 성인 부서를 갖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기본 임무를 부여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관장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문화부장관이 공공도서관 자료이용과 관련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회사나 기관 등과 협약하여 서비스거점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7조에서는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학교도서관과 협력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두 관종 간에 단일 목록 시스템의 사용을 권장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제8조는 도서관 간 협력을 장려하고,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 자료에 편리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정부의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주립도서관(County Library)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덴마크 공공도서관 서비스체계에 있어서 중심적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립도서관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주립도서관은 우리나라의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9조에서 주립도서관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들이 보유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자료대출을 중개하는 지역 대출센터로서 역할이 설정되고 있으며,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 해당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에서 주립도서관을 지정하되, 주립도서관의 전문적 기능수행에 요구되는 시설, 자료, 직원 등의 기준요건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또한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주립도서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제11조), 정부는 주립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정부도서관의 범위와 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은 그 시설 및 자료이용에서 일반에게 개방되며, 도서관자료 공유를 위한 상호대차에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주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센터의 역할을 부여하여, 전국적 상호대차의 임무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보존도서관의 기능, 망명자 및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 등을 기본 임무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대출을 수행하는 전국 대출센터로서 정하고 있다.

제3부의 특별조항에서는 공공도서관서비스 중 무료의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적 유료서비스 혹은 벌금 등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도서관 시설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외 대출과 자문서비스 등에 비용을 요구하고, 다른 자치단체 도서관 간 상호대차에 의해 발생하는 대출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가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몇 가지 조항은 북유럽의 도서관사정을 반영하는 특이한 내용으로 참고할 만하다.

덴마크 공공도서관서비스에서 관심을 끄는 사항은,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사업결과 축적되는 지식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업적 서비스를 허용하고, 도서관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에 대해 비용부과를 허용하며, 별도의 하위 규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연체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이다.

덴마크 도서관법은 2000년 10월 24일「도서관서비스에 관한 부령(Ministerial Order regarding library services)」이 제정되어 본 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시행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규칙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도서관법」(Act regarding library services)

- 2000년 5월 17일자 제340호 법령

하느님의 은총으로 덴마크 여왕 마그레테 2세는 다음의 법령을 공포하고, 덴마크 하원은 이를 가결하였으며, 덴마크문화부는 왕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령을 승인하였다.

제1부
공공도서관 : 목적 및 서비스

제1조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서적, 연속간행물, 음성도서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전자정보자원, 그리고 음악녹음과 같은 기타 적절한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와 교육, 문화활동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2) 공공도서관은 영상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사회 관련 정보를 증진해야 한다.

제2조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이용에 제공되는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 자료의 질과 주제의 포괄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 등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만이 결정적인 요인들이 되어야 하며, 자료에서 표현된 어떠한 종교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인 견해가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지방 의회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방 의회와 공동으로 아동 및 성인 부서를 갖춘 공공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지방 의회는 다른 지방 의회와 전체 혹은 부분적 도서관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지방 의회는 가능한 한 아래의 사항들을 수행해야 한다.

1)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2) 도서관 개방시간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하고,

3) 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관을 설립하거나 기타 서비스거점을 제공할 것.

(3)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지방의회는 복수 지방자치단체 간 도서관업무의 조정을 위한 도서관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문화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에 의해 공공도서관 자료와 그 이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도서관장서의 구성과, 특별한 경우 대출관련 납본요구와 자료대출의 제한가능성 등을 규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공도서관은 자료대출 및 시설이용에 있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자료대출 의무는 제1조 (1)항에서 언급된 항목들에 적용된다.

(2) 일반적인 상호대차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못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공공도서관은 회사 및 기관 등에 서비스거점을 설치 운영하거나, 이들과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2)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비(非)자치단체 기관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기관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

제7조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은 관내 학교도서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는 동일한 편목시스템 등이 이용되어야 한다.

제2부
도서관영역 내 정부임무

정부의 임무

제8조 정부는 도서관간 협력을 장려하고,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을 통해 정부와 정부지원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참조 제9조-제18조.

주립도서관

제9조 주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해당 자료 습득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위한 주요 대출센터로서 활동한다. 참조 제11조.

제10조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들과의 검토를 거쳐, 주립도서관으로도 활동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을 결정한다.

(2)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도서관의 자료, 직원, 시설 등의 모두가 주립도서관의 특별 임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제11조 문화부장관은 주립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이 속한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2) 협약은 주립도서관이 지원하는 복수의 공공도서관들을 대표하여 주립도서관이 수행하는 임무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협약은 주립도서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협약은 규정된 지리적 권역 내에서 지역적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도서관 내 전문기술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임무를 기술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주립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다.
(2) 주립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부세출예산에 명기된다.

정부도서관

제13조 정부는 교육시설, 기관 및 연구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도서관을 운영한다.
(2) 정부도서관은 시설이용 및 자료대출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해당 임무가 도서관 보조금의 선결조건 일부를 구성하는 한, 도서관의 일반적 상호대차 협력에 참가한다.
(3)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은 시설이용과 자료대출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며, 해당임무가 도서관 보조금을 위한 선결조건 일부를 구성하는 한, 도서관의 일반적 상호대차 협력에 참여한다.
(4) 관련부처 장관과 검토를 거쳐, 문화부장관은 제2항과 3항에서 언급된 정부 지원을 받는 도서관들과 정부의 임무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해당 규정은 특별한 경우 대출 관련 납본을 요구하는 도서관의 선택권과 도서관의 자료대출 제한 가능성 등을 규정할 수 있다. 규정을 결정할 때는 개별 도서관들과 관련한 특정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다.

제14조 주립 및 대학도서관은 다음에 의해 공공도서관을 위한 주요 대출센터로서 활동한다.
1) 도서, 연속간행물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공공도서관에게 제공함으로써,
2) 전국 및 국제적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3) 공공도서관 및 기타 관련기관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망명자 및 이민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4) 공공도서관에 대한 중심 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제15조 덴마크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특별히 시각장애인, 즉 시각적 장애를 가진 사람, 독서장애인, 그리고 장애 때문에 인쇄 문서를 읽기에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진흥할 목적의 자료를 도서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을 위한 주요 대출센터로서 활동한다. 덴마크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위에 언급된 이용자 그룹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대출을 실시한다.
(2) 덴마크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제1항에서 언급된 이용자그룹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한 조건들에 관하여 도서관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

기타 정부의 과제

제16조 정부는 전국도서관공동목록을 구성하는 국가서지의 편찬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다.

(2) 정부는 가능한 한 전국도서관공동목록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정부는 남부 유틀란트 반도에 살고 있는 독일계 소수민족을 위한 도서관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2) 정부는 기타 특별한 집단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불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계정제안, 감사기법 및 감사과정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문화부장관은 보조금 수혜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감사를 위해 국가 감사관(National Auditors)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는 공공 및 학교도서관 간 발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3부
특별조항

공공도서관

제19조 공공도서관의 자료대출과 도서관 제공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제20조 및 제29조 참조.

제20조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일반적 서비스와 관련된 특별한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울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는 시설 내 이용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자료대출과 일반적 자문 등에 해당한다. 자치단체는 또한 일상적 도서관 업무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되어 공공도서관에서 축적된 지식을 판매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해당 지식의 판매를 예상하여, 이러한 지식을 분류 및 처리하고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판매는 불합리하게 일반적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준비 되어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서비스는 명백히 이용자에 의해 요구되어야 한다.

(3) 지방의회는 제1항에서 언급된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한다. 다만 제4항 참조.

(4) 만일 제1항에서 언급된 서비스가 민간부문과 경쟁하여 제공된다면, 해당 서비스 가격은 불공정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5) 경쟁에 의해 제공되는 자치단체의 서비스 판매는 3년을 넘게 합계 적자를 보여서는 안된다.

(6)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문화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제1항에서 언급된 자치단체의 서비스판매와 관련한 회계 제출 등에 관한 상세규정을 제정한다. 제4항 및 제5항 참조.

제21조 자치단체는 연체 자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 이용자가 동일대출기간으로 함께 빌려서 함께 반납하는 동시 대출 자료에 대해서, 요금은 20크로네를 초과할 수 없으며, 14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10크로네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대출기간이 7일을 초과한다면, 요금은 110크로네까지 인상될 수 있지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55크로네를 초과할 수 없다. 만일 대출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요금은 220크로네까지 인상될 수 있지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해 요금은 110크로네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금액은, 5로 나누어지는 금액으로 반올림한 요금 조정비율로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에 조정된다.

제22조 자치단체는 상호대차협력에 참여함으로써, 대출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립 도서관 기능의 일부로서 실시된 대출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보상은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

(2)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문화부장관은 제1항에서 언급된 보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한다. 해당 규정은 부과되는 요금고시를 포함하여 요금의 규모와 부과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합리적인 고지를 통하여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의 이용자가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하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불은 이용자의 거주지 자치단체로부터 요구되며, 이용자에게는 부과될 수 없다.

(2)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서 언급된 보상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제정한다. 해당 규정은 부과요금의 통보를 포함하여 요금의 규모 및 부과방식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자치단체는 대체 티켓 발행에 대해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도서관

제25조 제13조 2항 및 3항에 따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부지원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료로 자료를 대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제27조 1항 및 제29조 참조.

제26조 제13조 2항 및 3항에 따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부지원도서관은, 공공도서관들에게 무료대출을 실시한다.

제27조 제13조 2항 및 3항에 따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정부지원도서관은, 일반적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한 특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울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는 시설 내 이용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자료대출과 일반적 자문 등에 해당한다.

(2) 문화부장관은 관련 장관들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서 언급된 정부와 정부지원 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규정을 제정한다. 해당 규정은 금액의 규모를 포함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관해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정부도서관은 자료 연체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요금은 단위당 5크로네를 초과

할 수 없다. 만일 대출기간이 7일 이상 초과하면, 요금은 25크로네만이 인상될 수 있다. 만일 대출기간이 30일 이상 초과하면, 50크로네만이 인상될 수 있다. 금액은 5로 나누어지는 금액으로 반올림한 조정비율로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 마다 조정된다.

(2) 정부지원 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연체 자료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규정

제29조 제한된 이용자 집단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것에 관한 도서관과 공급자 혹은 권리 보유자 사이의 협약은, 집단 밖 이용자들에 대한 자료 전달이 인가요금으로 결정된 특별한 소비자의 비용으로 실시될 수 있다는 효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도서관은 해당요금이 이용자에게 부과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자료주문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공동목록에 접속하는 것에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2) 요금은 주문을 실행하는 도서관에 의해 부과된다.

(3)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장관과 협의하여 1항에서 언급된 요금 부과에 관한 상세 규정을 제정한다. 해당 규정은 금액의 규모와 이행 방식은 물론 지불예외기관도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 도서관은 만일 문제 개인이 대출받은 자료를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했다면, 해당 이용자를 도서관대출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2) 또한 만일 이용자가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요금 지불을 하지 않았다면 도서관 대출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3) 문화부장관은 자치단체 및 관련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배제와 관련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배제와 통보 및 배제기간 등에 대한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 만일 만기금액이 200크로네를 넘으면,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집행관의 명령이 정해진 요금에 대하여 집행될 수 있다.

제33조 제21조 및 제28조 1항에 따른 미해결 요금은, 원천공제에 관한 법령의 개인 조세 수집에 관한규정에 따라, 징수당국에 의한 추가비용 추징으로 급여원천징수 등에 의해 징수될 수 있다. 더욱이 추가비용 추징으로 미결 요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자치단체는 원천공제에 관한 법령에 의한 조세지불의 신속한 반환은 물론 배상과 이자 등으로 과다지불세금과 노동시장 분담금 지불에 대한 권리를 개시한다.

(2) 문화부장관은 급여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징수당국은 세무당국과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자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1항에서 언급된 금액의 징수에 실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정보는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제34조 제33조 2항에 따라 미지불 요금에 대한 급여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절차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해당 조항의 위법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형법 제5장의 관련조항에 따라 회사(법인)등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제35조 도서관은 이용자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대출자 확인조건, 대출기간, 납본비용, 손상 없이 반환해야 하는 대출자료 반환 의무 위반, 벌금 및 요금의 부과, 그리고 집행관의 명령 수행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부
결론적 조건

제36조 이 법은 2000년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동시에 공공도서관 등에 관한 1993년 12월 제22-1100호 법령은 폐기된다.
(2) 제5조 1항에서 거주 자치단체의 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녹음음악자료와 멀티미디어를 빌릴 수 있는 권리는 2003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정부지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체 자료에 대한 비용청구는 2003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7조 이 법에 의해 문화부장관이 주립도서관으로 활동할 도서관을 지명하기까지, 현재의 주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등에 관한 1993년 12월 제22-1100호 법령 제8조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더구나 언급된 법령 제11조에 따라 주립도서관서비스에 상응하는 해당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코펜하겐과 프레데릭스베르그의 대도시 자치단체에게 특별 교부금이 운영되어야 한다.
(2) 공공도서관 등에 관한 1993년 12월 제22-1100호 법령 제18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연체 자료에 대한 비용청구 가능성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어야 한다.

제38조 이 법은 페로 제도(Faeroe Islands) 및 그린란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왕의 서명과 승인아래,
2000년 5월 17일, 크리스티안보르 성에서.

[참고자료]
1) Danish National Library Authority. 2001.「Act regarding library services」 <http://www.bs.dk/publikationer/english/act/pdf/Act_reg__library_ser.pdf>
2) Nordic Libraries and their organizations in the 21st Century. 2005. <http://www.dbf.dk/Default.aspx?ID=4126>

덴마크

「출판자료납본법 2004」

「출판자료 납본법 2004」

–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

1. 덴마크의 납본자료

덴마크의 납본제도는 1697년 왕령으로 모든 출판업자들로 하여금 출판물의 5부를 왕립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명령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1781년 법에 의해 납본제도는 왕국 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1902년 당시 성장하는 출판 산업을 관장하던 관련법령에 따라 왕립도서관에 대한 납본도서의 양이 급증하자, 1927년 납본법은 왕립도서관에 대한 납본부수를 1부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납본제도의 혁신을 가져온 1997년 납본법령에 의해서, 덴마크 납본제도는 복제매체에 관계없이 덴마크 내에서 간행되는 모든 저작물의 범위로 납본대상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상 출판 저작물도 포함하게 되었다. 2004년 최신 납본법령에 이르러, 덴마크 납본제도는 인터넷 도메인 <.dk>로 생산되는 전자적 통신망상의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는(harvesting)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전자적 네트워크라 함은 유선 및 무선 통신망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덴마크문화부는 당분간 무선통신망에 의해 공중에게 이용되는 자료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덴마크에서 생산되는 출판자료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국가기관에 의해 분담수집되고 있다. CD 및 테이프 등의 소리기록물과 비디오테이프 및 DVD 등의 영상비디오, TV 및 라디오 등의 방송자료, 그리고 신문 등은 국립 및 대학도서관(The State and University Library)에 의해 수집되고,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화작품은

덴마크국립영상원(The Danish Film Institute)에 의해 수집된다. 또한 문헌과 결합된 사진자료와 비디오를 제외한 물리적 매체의 디지털저작물 등은 왕립도서관(The Royal Library)에 의해 수집되고, 인터넷상의 전자문헌들은 국립 및 대학도서관과 왕립도서관의 협력사업으로 수집된다.

2. 출판자료 납본법의 주요 내용

덴마크의 2004년 제정 출판자료 납본법은 모두 6개 부(part) 25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법령의 범위로서 납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전통적으로 납본대상이 되어 왔던 물리적 형태의 출판물을 다루고 있다. 제2조에서는 덴마크에서 출판된 저작물을 2부씩 납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덴마크인들에게 이용될 목적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출판물을 포함하여 납본을 요구하고 있다. 제3조에서 납본자료는 출판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출할 것과, 기술 장비가 응용된 경우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시키는데 필요한 암호와 기타정보를 포함하여 납본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납본의무를 출판물의 최종생산자에게 지우고 있으며, 제5조에서 모든 출판물에는 출판자명과 주소지를 명기하도록 하고, 제7조에서 납본용의 자료생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출판자가 지불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제3부는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제8조에서 덴마크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출판물에 대해 해당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접근이 허용되는 납본기관의 의해 납본이 수행되도록, 즉 납본기관에 의한 수집(harvesting)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특히 덴마크에 할당된 인터넷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의 출판자에게 납본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4부에서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납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며, 제13조에 따라 프로그램 기록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납본기관이 납본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는 납본기관에게 암호를 알려주고, 일반 공중의 이용 제공에 필요한 기타 정보에 제공하도록 납본의무를 정하고 있다.

제5부 제16조에서 다루는 영화에 대한 납본은 원래 영화법에 포함되어 있던 규정으로,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덴마크어 영화에 대한 영화 제작자에게 납본의무를 지우고 있다. 현재 영화필름의 납본은 덴마크국립영상원(The Danish Film Institute)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납본 복제본 생산에 드는 비용은 제작자에 의해 지불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하 법령전문>

「출판자료 납본법 2004」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년 12월 22일 법령 제1439호
비공식 번역

하느님의 은총으로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선언한다.

다음의 법령은 덴마크 국회에서 가결되고, 칙허에 의해 승인되었다.

제1부
법령의 범위

제1조 법령은 다음의 법정납본을 다룬다.
1) 물리적 형태의 출판물(제2부 참조)
2)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상의 출판물(제3부 참조)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제4부 참조)
4)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제5부 참조)

제2부
물리적 형태의 출판물

제2조 덴마크에서 출판된 저작물은 두 부씩 법정납본기관에 납본되어야 한다.
(2) 저작물이 저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작품의 복제본을 판매나 기타 방식 등으로 공중에게 배포하는 경우, 출판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저자의 동의를 얻어 작품의 복제본이 출판되고, 주문에 따라 배포될 것으로 공중에게 알려진 경우도 출판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덴마크에서 출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1. 출판본이 덴마크에서 생산되었을 때
2. 출판본이 특히 덴마크 내 유통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생산되었을 때
(4)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양한 특성의 저작물을 구성하지 못하고 저작물과 함께 출판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법정납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저작물은 제20조 (1)항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출판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납본되어야 한다.

(2) 저작물이 기술 장비의 이용에 의해서만 접근될 수 있다면, 납본자료는 납본기관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에 접근하고, 사본을 생산하며, 일반 공중에게 이용시키는데 필요한 암호와 기타정보 등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납본의무자는 암호 등이 제삼자에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저작물의 개정판도 납본대상이 된다.

제4조 납본의무는 출판물의 완성본을 생산하는 사람이 진다.

(2) 생산자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판자가 납본의무를 진다.

(3) 해외에서 생산되는 출판물에 관하여, 출판자는 납본의무를 지며, 혹은 출판자가 덴마크 거주자가 아닌 경우 수입자가 덴마크 내 출판자를 대신한다. 출판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덴마크 내 수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판자가 납본의무를 진다.

제5조 덴마크에서 출판되는 모든 저작물(제2조 참조)에는 출판자의 이름이나 회사, 주소지를 명기해야 한다.

제6조 출판자는 납본기관의 요구에 따라 국가서지에 저작물을 정확히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납본용의 생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출판자가 지불해야 한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사본의 비용은 제4조 (3)항에 따라 납본의무를 지는 사람이 지불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납본기관이 생산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제3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

제8조 덴마크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은 납본대상이다. 납본의무는 해당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접근이 허용되는 납본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2)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은 다음의 경우 덴마크의 출판물로 간주된다.

1) 특별히 덴마크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 등으로 출판되는 경우

2) 기타 인터넷 도메인 등으로 출판되고 덴마크 내 공중에게 전해지는 경우

(3) 문화부 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라 납본 의무의 한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 명확히 덴마크에게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하여, 납본의무는 해당 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부과된다. 기타 인터넷 도메인 등의 출판물에 관해서는,

해당 자료의 출판자가 납본의무를 진다.

제10조 납본의무자는 요청이 있는 대로 접근 코드에 대하여 납본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자료의 접근과 자료의 사본생산, 일반 공중에 대한 자료제공 등에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납본 의무자는 암호 등이 제삼자에 의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명확히 덴마크에게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 등의 관리자는 요청이 있는 대로 등록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메인 목록의 전자형태 사본을 납본기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비용은 납본기관에 의해 지불된다.

제4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13조 덴마크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납본의 대상이다. 납본의무는 프로그램 기록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납본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 덴마크의 것으로 본다.

1)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법에 따라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회사에 의한 방송

2) 덴마크 외부에 소재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회사에 의해 방송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덴마크 공중에게 전해지는 경우

(3) 문화부 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라 납본의무의 한계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한다.

제14조 납본의무에 따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는, 요청이 있는 즉시 납본기관에게 암호를 알려주어야 하고, 프로그램에의 접근, 프로그램의 사본 생산, 일반 공중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납본의무를 갖는 회사는 암호 등이 제 삼자에 의해 이용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프로그램의 기록과 관련한 비용은 납본기관에 의해 지불된다.

제5부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제16조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덴마크 영화의 제작자는 관련 홍보자료 두 부를 납본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덴마크 영화는 영화법에 따라 덴마크어로 제작된 영화이다.

(2) 덴마크어 영화 원본(negatives)은(전(1)항 참조) 납본기관에 무료로 제공되고, 이 기관이 덴마크어 영화의 원본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때까지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3) 합법적으로 납본되는 사본의 생산과 관련한 비용은 제작자에 의해 지불된다. 문화부장관은 납본기관이 생산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제6부
일반 규정

제17조 "출판자"는 자료출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18조 납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해당 재산은 납본 의무에 따르게 된다.

제19조 제2부에 따른 납본은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두 곳의 서로 다른 장소에 저장된다.

(2) 제3부~제5부에 의해 납본자료를 저장할 때, 문화부 장관은 해당 자료의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3) 법적 납본자료는 수령기관의 장서에 포함된다. 수령기관은 수집 및 저장의 목적으로 해당 자료의 사본을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법정 납본자료에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은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4) 문화부 장관은 법정 납본자료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상세규정을 제정한다.

제20조 문화부 장관은 납본 저작물에 동반해야 하는 정보, 납본의 기간제한, 납본이 제출되어야 하는 기관 등을 포함하여 납본 형식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한다.

(2) 문화부 장관은 특정 종류의 자료 또는 한정판으로 제작된 자료는 납본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납부의무 예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문화부 장관은 문화적으로 혹은 연구목적을 위해 보존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는 납본자료의 폐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우편, 운송, 기타 비용은 납본기관이 지불하고 그 이상의 것은 문화부 장관이 규정한다.

제21조 이 법 제2조 (1)항,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1)항과 (2)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다.

(2) 제8조 (3)항, 제13조 (3)항, 제19조 (4)항, 제20조 (1)항에 따라 명기된 규정에서, 해당 규정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식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3) 형법 제5부의 규정 따라 회사 등 법인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제22조 이 법령은 2005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문화부 장관은 2007~08 의회년도 이내에 법령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3)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1997년 6월10일의 제423호 법령은 폐기된다.

제23조 영화에 관한 1997년 3월12일자 제186호 법령, 제11조 (3)항의 수정, 1997년 6월 10일자 제423호 법령, 2003년 12월 17일자 제1156호 법령의 제4조 등에서 다음의 수정안이 만들어진다.

1. 제12조, 제14조~제16조는 폐기된다.
2. 제25조 (1)항의 "제12조, 제13조" 그리고 (2)항의 "제15조와"는 삭제된다.

제24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법에서, 참조 2004년 6월 10일자 제506호 행정명령의 제89조는 폐기된다.

제25조 이 법은 페로스 제도와 그린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4년 12월 22일, 마르셀리스보르그 성에서
여왕 마르그레테 R.의 서명 날인으로.

[참고자료]

1)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http://www.kb.dk/en/kb/service/pligtaflevering-ISSN/lov.html>

2) Valberg, Trond. Legal deposit of audiovisual and multimedia materials in Scandinavia. WLIC: 74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10-14 August 2008, Quebec, Canada.
<http://www.ifla.org/IV/ifla74/ papers/095-Valberg-en.pdf>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법 1972」

「국립도서관법 1972」

1. 말레이시아의 도서관활동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섬에 걸쳐 양분되어 있는 말레이시아는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연방제 입헌군주국가이다. 13개주와 3개 연방직할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말레이시아는 인종적으로 말레이계, 중국계, 인디아계, 기타 인종으로 구성되고, 언어 역시 공용어인 말레이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타밀어, 아랍어 등이 사용되며, 종교적으로 국교인 이슬람교를 비롯하여, 불교,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치경제 질서는 매우 안정되어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2005년 집계한 세계 GDP순위 33위, 1인당 GDP순위 61위를 기록하는 등, 동남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와 더불어 가장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주목받는 나라이다.

말레이시아 문화예술유산부와 국립도서관이 발간한 「말레이시아도서관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말레이시아 전국에는 1,229개의 공공도서관과 576개의 전문도서관, 357개의 대학도서관 등 모두 2,063개의 도서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수치상으로는 1관당 22,500여명으로, 우리나라의 80,000여명이나, 일본의 41,000여명 보다 앞서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 공공도서관 활동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 및 지역(Metropolitan & Regional)공공도서관이 20개관, 소규모(Branch & District) 지역분관이 115개관, 중소도시(Town)공공도서관이 60개관, 기본적인 컴퓨터장비를 갖춘 소규모 농촌사이버정보도서관(Rural Cyber Information Library)이 844개관, 이동도서관(Mobile)이 90개관 등으로 분류되어, 대도시 보다 농촌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이 보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교육·문화시설로서 모범적인 공공도서관서비스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은 원래 1956년 결정된 '말레이안도서관그룹(Malayan Library Group)'이 국가적 수준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서관 설립을 검토할 실무그룹으로 제안한 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에 의해 그 설립이 시작되었다. 1966년 제정된「도서보존법(Preservation Book Act)」에서 말레이시아 국내 출판도서 2부씩을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는 규정이 실시됨에 따라, 국립기록관(National Archives)의 단위부서로 설치되었던 국립도서관은, 1972년「국립도서관법(The National Library Act)」의 제정으로 비로서 독립 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얻고, 1977년에는 연방정부의 단위기관으로 성장하였다.

1986년에는 이전 「도서보존법」을 대체하는 「도서관자료납본법(The Deposit of Library Material Act)」이 제정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출판되는 인쇄자료는 5부, 비인쇄자료는 2부씩을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는 강화된 납본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87년에는「국립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도서관이 새로 설치되는 문화예술유산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2. 「국립도서관법」의 주요내용

말레이시아「국립도서관법」은 모두 5개부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법령의 명칭(제1조)과 용어정의(제2조)가 규정되어 있고, 제2부에서는 국립도서관의 설립(제3조)과 관장의 권한(제4조)을 다루고 있다.

국왕에 의해 임명되는 국립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관리·감독에 있어 포괄적인 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국가적 도서관정책과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주무장관에게 조언하고 자문하는 역할, 국가장서의 수집과 보존에 따른 국립보존소(National Depository)와 국가서지센터(National Bibliographic Centre), 국립말레이필사본센터 등의 업무를 확립하는 임무를 관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전국적인 공공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 도서관간 자원공유협력을 주도하고, 도서관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서교육을 제공하는 임무도 관장의 관리감독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국립도서관 관장에 의해 관리 감독되는 '국립도서관기금'을 설치하여(제4부),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장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수행하고(제9조), 주무장관과 재무장관, 양원 의회 등에게 사업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

마지막 제5부에서는 도서관문제와 관련하여 국립도서관장이 다른 기관 및 개인 등과 협약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고(제12조), 정부 내 부서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자원을 국립도서관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제13조). 또한 주무장관은 국립도서관장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도서관 건물 내 질서유지, 대출도서의 손상과 분실 및 연체 등에 대한 벌금, 그리고 정보서비스 및 복사에 대한 요금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국립도서관법 1972」

2006년 1월까지의 모든 개정사항을 통합한 내용임.

1972년 7월 5일 국왕재가
1972년 7월 13일 관보공포

국립도서관의 설립과 그에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법령

[말레이시아 반도-1972년 9월 1일, P.U.(B) 348/1972]

통합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승리자 국왕폐하에 의해서, 그리고 동일한 절차의 권한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법률로 규정한다.

제1부 서문

제1조 간략표제와 적용

(1) 이 법은 1972년 국립도서관법으로 불린다.
(2) 이 법은 말레이시아 반도에만 적용된다.

제2조 해석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지정일**"은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제5조 (2)항 (a)호에 의해 지명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장서**"는 도서관 내에서 수집되고 관리되는 도서관 자원을 의미한다.
"**관장**"은 하위조항 제4조 (1)항에 따라 임명된 국립도서관의 관장을 의미한다.
"**기금**"은 제7조 (1)항에 따라 설립된 국립도서관기금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도서관을 의미한다.
"**도서관 건물**"은 도서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거나 도서관에 의해 이용되는 모든 건물이나 토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해 도서관용으로 임대나 임시 임대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이용되는 모든 건물이나 토지를 의미하며, 이에는 도서관의 일부를 형성하는 이동도서관의 자동차와 배 등을 포함한다.

"**도서관 자원**"은 그 위나 안에 정보를 기술, 인쇄, 저장, 표현 혹은 재생하는 매체로서, 모든 형태의 필기, 인쇄 혹은 그림 매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매체에는 필사본, 타자본,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팸플릿, 지도, 마이크로필름, 악보, 사진, 영화 필름, 음반, 비디오 및 오디오 기록 등과, 종이와 필름이나 기타 물질 등에 표현된 기타 기록물, 그리고 그 복제물 등을 포함한다.

"**장관**"은 도서관업무를 책임지는 장관을 의미한다.

제2부 국립도서관의 설립과 경영

제3조 국립도서관의 설립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칭한다.)은 다음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설립된다.

(a) 국가적 도서관장서 자원을 현재 및 후속세대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b) 국내와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자원에 대한 전국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

(c) 도서관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제4조 관장에 의한 국립도서관의 관리·감독과 관장의 권한

(1) 국립도서관은 국왕이 임명한 관장에 의하여 관리되고 감독되어야 한다.

(2) 관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a) 도서관 관련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국가정책과 도서관 관련 기타 문제 등에 대해 장관에게 조언하는 것.

(b) 도서관의 국가적 계획 및 개발에서 조언하고 조력하는 것.

(c) 인류의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반영하는 대표적 국가 장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적·문학적·문화적 유산을 반영하는 도서관 자원의 포괄적인 국가 장서를 획득하고 보존하는 것.

(d) 국립도서관 내에서 다음을 확립하는 것.

(i) 수집된 도서관자원의 보관 및 보존을 위한 국가보존소(National Depository)

(ii) 국가서지네트워크와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그리고 전국적 서지 및 문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서지센터(National Bibliographic Centre).

(iii) 말레이 필사본의 수집·정리·이용을 위한 국립말레이필사본센터

(e) 참고, 정보, 조회, 복사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f) 국립도서관 내에서 다음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것

(i) 국가정보시스템을 위한 전국적 중심

(ii) 출판물의 국내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도서관 자원의 대출 및 교환 목적의 국립센터

(g) 국가 도서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조정하는 것.

(h) 규정의 국가기준에 따라 전국적인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

(i) 규정의 국가기준에 따라 특수도서관의 네트워크 설립을 장려하는 것.

(j) 도서관간 자원공유와 국내외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

(k) 도서관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촉진하는 것.
(l) 도서관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m) 독서습관 교육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
(n) 말레이시아 공용어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것.
(o)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차원에서 전문기구 및 기타 단체 등과 협력하는 것.
(p) 도서관의 일부를 형성하는 도서관자원을 대여하고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분하는 것.
(q) 제3조에서 언급된 목적을 실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을 수행하는 것.

(3)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해당 직원들은 그때그때 임명되어야 한다.

제3부 자문위원회의 설립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립

(1) 장관은 국립도서관의 발전에 대하여 관장에게 조언하는 목적의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a)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
(b) 관장
(c) 당분간 국립도서관을 책임지는 장관의 대리인
(d) 4명 이상 7명 이하 장관이 임명하는 기타 위원

(3) 관장은 위원회 회의의 모든 회의록을 적절히 관리하는 위원회 간사로서 일하도록 직원 중 누구라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장과 전(2)항 (d)에 의해 임명된 모든 위원들은, 그 임명이 곧 취소되지 않는 한, 3년 동안 재직하고, 재지명의 자격을 갖는다.

(5) 위원장과 전(2)항 (d)에 의해 임명된 모든 위원들은,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5A) 장관은 아무 때나 의장이나 전(2)항 (d)에 의해 임명된 모든 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형법[법령 574]의 효력 안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2) 위원장과 4인의 위원이 정족수를 이룬다.

(3)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절차와 그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규율하는 자체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부 국립도서관 기금

제7조 국립도서관기금의 설립

(1) 도서관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의 기금이 1957년 재정절차법[법령 61] 두 번째 부칙에 통합되어 설립된다. 즉, “국립도서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기금은 이 부의 조항에 따라 관장에 의하여 감독되고 관리된다.

제8조 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자금

(1) 1957년 재정절차법과 1966년 개발기금법[법령 406]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음이 기금으로 지불된다.

(a) 개발기금 또는 기타 도서관발전을 목적으로 의회에 의해 승인된 해당 자금

(b) 국립도서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부 혹은 유산의 방식으로 받은 자금

(c) 기금의 채권에 의해 자금투자로부터 받는 이자

(d) 재무장관이 기금으로 지불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기타 자금 다만 이 하위조항에 따라 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지정일 이전에 국립도서관용으로 정부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모든 차액이 지정일 혹은 이후에 해당 자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이 기금 내에서 보고되어야 하다.

(2) 전(1)항 (a)에서 언급된 자금의 기금으로의 지불은 재무장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장관이 지시하는 총액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제9조 기금 자금의 적용

(1) 1966년 개발기금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채권에 의한 자금은 관장에 의해 다음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a) 국립도서관의 부지매입, 건설, 건물확장,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지불

(b) 도서관발전을 위한 자문비용 지불

(c) 도서관발전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도서관자원 및 서비스의 비용으로 지불

(d) 도서관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지불

(2) 기금의 채권에 의한 자금은 1957년 재정절차법의 제8조 (3)항 (a)에 따라 투자될 수 있다.

제10조 예산

매년 관장은 재무부가 정한 기한 내에 다음 해에 있어서 기금의 예상 수입 및 지출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재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장은 해당 보고서에서 다음 년도에 수행을 예정하고 있는 발전프로그램의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회계 및 감사

(1) 관장은 기금에 대하서 적절한 회계 관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2) 관장은 회계감사를 받자마자 즉시 모든 지적사항과 함께 회계감사보고서를 주무장관과 재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주무장관은 제출할 것이 있다면, 의회 양원 앞으로 지적사항과 더불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부 기타

제12조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협약

관장은 장관이 승인한 임기와 조건으로 도서관 문제에 관하여 말레이시아이건 혹은 다른 곳이건 당국 또는 개인과 협력하거나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 도서관 자원의 이전

장관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모든 부서나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서관자원을 해당부서나 기관으로부터 국립도서관으로 이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서관자원은 주정부당국의 사전 동의 없이 주정부의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국립도서관으로 이전될 수 없다.

제14조 규정

장관은 관장 임무의 적절한 면책에 대해 그리고 국립도서관 및 건물의 관리 감독에 대해 이 법의 해당 규정과 상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고, 전술한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을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국립도서관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b) 도서관 건물 및 역내 질서 유지와 불법 예방

(c)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해 제정된 규정에 따라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발견된 사람을 국립도서관 또는 국립도서관건물로부터 추방하거나 배제

(d) 대출된 도서관자원의 손상, 분실이나 연체 등에 대해 관장이 징수할 수 있는 벌금의 금액, 그리고 해당 벌금의 예외 혹은 환불 등에 대해.

(e)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 또는 모든 도서관자료 복제의 제작 및 인증에 대해 관장이 부과한 요금, 그리고 해당 요금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지불의 예외에 대해

제15조 연차 보고서

(1) 관장은 매년 말 국립도서관의 발전과 활동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준비시켜서 가능한 빨리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주무장관은 모든 해당보고서의 사본을 의회 양원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1987년 4월15일 개정 (법령A667호)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A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참고자료]

1) Law of Malaysia, National Library Act 1972.
http://www.agc.gov.my/agc/oth/Akta/Vol.%202/Act%2080.pdf

2) National library of Malaysia. http://www.pnm.gov.my/pnmv3/index.php?id=50

모리셔스공화국

「국립도서관법 1996」

▌ 모리셔스공화국

「국립도서관법 1996」

– 위원회 중심의 지휘체계

모리셔스(Mauritius)는 아프리카대륙 남동부의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동쪽으로 약 900km나 떨러진 인도양 상의 작은 섬나라이다. 국토의 면적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2~3배 규모이고, 인구는 약 130만 명으로 지난 호 살펴 본 에스토니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리적 특성상 아프리카 국가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로 통용된다. 1968년 영국으로부터 입헌군주국으로 독립하였으나, 1992년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중심제 공화국이 되었다.

모리셔스공화국 국립도서관은 1996년 '국립도서관법'에 의해 정부 예술문화부에 소속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0년 1월 정식 개관되었다. 도서관법에 따라 국립도서관은 위원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립도서관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국립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예술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국립도서관은 최종적으로 예술문화부장관의 감독 아래 운영된다.

국립도서관은 전국 12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구축한 단행본 국가통합목록과 연속간행물 통합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과 출판시도서목록(CIP)를 발부하는 서지센터기능을 수행한다. 국립도서관은 2006년 현재 모두 279,000여종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자료보존을 위하여 제본과 마이크로필름제작을 수행하고, 전국의 도서관들에게 운영기술을 보급하는 교육훈련과 컨설팅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의 직원은 모두 관장 이하 10여명의 사서를 포함하여 모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도서관은 국제적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인 ISO 9001: 2000기준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한 결과 2005년에는 ISO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모리셔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명부에는 모두 60여개의 도서관이 게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국립도서관과 5개의 공공도서관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모리셔스등록사서협회(Mauritius Council of Registered Librarians)의 홈페이지에서도 모두 25개의 도서관이 열거되어 있으며,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대법원도서관과 함께 5개의 공공도서관이 소개되고 있다. 동 협회에서 제공하는 등록사서의 명부에는 모두 53명의 사서가 소개되고 있다.

모리셔스 국립도서관법은 작은 국가의 국립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집약한 합리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립도서관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국립도서관의 지휘체계와 운영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술문화부장관과 국립도서관위원회, 국립도서관장 등의 임무와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권한과 책임도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 둘째, 간단하지만 명료한 납본규정에 따라 모리셔스에서 생산된 모든 간행물의 6부를 무상 납본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도서와 잡지, 신문은 출판자가, 비도서자료는 제작자가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세, 벌금, 과징금, 요금 등으로부터 면제되는 면책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의 우편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립도서관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위원회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법의 구조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장은 일상적 업무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국립도서관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재정 및 인사, 규칙제정 등의 실질적 권한은 가지며, 예술문화부장관은 국립도서관 정책의 최종 지휘 감독자가 된다. <이하 법령 전문>

「국립도서관법 1996」
- 1996년 법령 제32호

1996년 12월 17일 국회 가결.

이 법령은 국립도서관 설립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리셔스의회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1조 약칭

이 법은 1996년 국립도서관법으로 불린다.

제2조 해석

이 법에서

"위원회"는 제5조에 의해 설치된 국립도서관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한다.

"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관장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제3조에 설립된 국립도서관을 의미한다.

"도서관 자료"는 글자나 그림 형태의 모든 기록물을 의미하며, 이는 필사본, 타자본, 도서, 신문, 연속간행물, 악보, 사진, 지도, 그림 기타 그래픽아트 형태, 그리고 테이프나 디스크와 그 복제물 등을 포함하는 필름, 영사 슬라이드, 시청각 자료 등과 같은 비도서 자료를 포함한다.

"모리시아나(Mauritiana) 부문"은 다음과 같은 도서관 자료로 구성되는 부문을 의미한다.

(a) 모든 주제와 관련하여 모리셔스에서 출판된 것, 혹은

(b) 모리셔스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판된 것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한다.

"장관"은 예술, 문화, 여가업무 담당 장관을 의미한다.

제3조 국립도서관의 설립

1) 국립도서관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다.

2) 도서관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모리셔스 연구원 도서관의 모리시아나(Mauritiana) 부문

(b) 기록국의 모리시아나(Mauritiana) 부문

3) (2)항에서 언급된 바 있는 제2조에서 구성된 도서관 자료는 이 법이 개시될 때 국립도서관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4) 국립도서관은 법인이 된다.

제4조 국립도서관의 목적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도서관 자료이용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b) 일반적인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는 것, 특히 모리셔스와 관련한 도서관 자료의 포괄적인 장서를 수집하는 것.

(c) 도서관에 납본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수령하고 보존하는 것.

(d) 공중에게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는 것.

(e) 공중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는 것.

(f) 모리셔스의 도서관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참여하고, 도서관분야 연구를 증진하며, 정보취급기술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

(g) 국가서지센터로써 활동하고, 국가서지 및 기타 서지들을 유지하는 것.

(h) 도서관자료의 국내외 대출과 교환을 위한 주관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

(i) 국립도서관과 국내외 다른 도서관들 간 협력을 주도하고 증진하는 것.

제5조 위원회

(1) 국립도서관을 지휘 관리하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위원장은 탁월한 학술적 업적을 이룬 개인이어야 하며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b)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표자

(c) 예술문화여가부의 대표자

(d) 경제계획정보통신부의 대표자

(e) 재정부의 대표자

(f) 기록관장

(g) 도서관 간부회의 대표

(h) 다음의 5인 사서

(i) 학술도서관 사서 1인

(ii) 공공도서관 사서 1인

(iii) 전문도서관 사서 1인

(iv) 도시자치단체연합회에서 지명한 사서 1인

(v) 지역의회연합회에서 지명한 사서 1인

(2) 위원회는 위원회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간주되는 개인을 자체심의에 의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전 (1)항의 (b), (c), (d), (e), (f), (g) 등에서 명시된 위원 이외의 모든 위원은 3년 임기로 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재임명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a) 최소 월 1회 혹은,

(b) 위원 5인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의 회의는 9인의 위원을 의사정족수로 한다.

(3) 이 조항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회의 및 의사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사업목적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a) 기금 모금.

(b) 공중의 도서관 자료 이용에 대해서 요금 및 비용 징수.

(c) 자산의 취득과 매도.

(d) 보조금, 증여, 기부와 유증 등의 수령.

(e) 장관과 협의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을 임명.

제8조 관장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임기와 조건으로 국립도서관의 관장을 임명해야 하며, 관장은 높은 학문적 지위를 가지고,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서로서 다음을 책임져야 한다.

(a) 위원회 정책의 실행

(b) 모든 도서, 기록, 증서, 문서 및 위원회 의사록 등의 보관을 포함하는 국립도서관의 일상업무에 대한 감독과 관리

제9조 직원 임명

(1)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과 임기로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해당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모든 공무원은 관장의 행정적 지휘를 받는다.

제10조 위원 및 공무원의 보호

국립도서관의 시업목적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 문서의 효력

다음에 의해 서명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서도 국립도서관을 대신하여 실행될 수 없다.

(a) 위원장 혹은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위원.

(b) 관장 혹은 관장 부재 시 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도서관의 공무원.

제12조 장관의 권한

(1) 장관은 이 법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을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 업무와 관련한 해당 정보 및 문서를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기부

나폴레옹 규약 910조는 국립도서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회계

(1) 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 혹은 그 이전까지, 동년 6월 30일 종료되는 12개월에 대한 국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감사보고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위원회의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5조 도서관 자료의 납본

(1) 다음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의한 해당 방식으로 국립도서관에 무상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모리셔스에서 생산된,

(a) 모든 도서 6부

(b) 모든 잡지 6부

(c) 모든 신문 매호 6부

(d) 비도서 자료 6부

(2) 전 (1)항 (a) 및 (c)에서 언급된 도서관 자료는 출판자에 의해 납본되어야 하고, 전(1)항 (d)에서 언급된 도서관 자료는 제작자에 의해 납본되어야 한다.

제16조 면책

모든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a) 도서관은 모든 조세, 벌금, 과징금, 요금 혹은 세금 등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b) 도서관은 편지 및 우편소포를 무료 송달할 수 있고, 무료로 우편환을 송금하거나 전보를 칠 수 있다.

제17조 규정

(1)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전(1)항에서 제정된 규정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서 유죄판결로 1000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18조 후속 개정

(1) 법인(회계감사)법은 고유 알파벳순으로 추가되어 2부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국립도서관

(2) 1952년 제71호 아카이브법의 제8~14조는 폐지된다.

(3) 법인(회계감사)법의 제5조 (1)항에서 지명된 감사는 감사관리관이 된다.

제19조 경과 규정

법인(회계감사)법에도 불구하고,

(a) 이 법의 개시일로부터 이어 오는 6월 30일까지 경과기간은 국립도서관의 첫 번째 회계연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법인(회계감사)법의 제7조 (1)항은 국립도서관의 첫 번째 회계연도에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 개시

이 법은 선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Mauritius.
<http://www.gov.mu/portal/sites/ncb/mac/nlibrary/natlib.html>

2) The Republic of Mauritius, National Library Act.
<http://www.gov.mu/portal/sites/ncb/mac/nlibrary/nlact.html>

스웨덴

「왕립도서관령 1996」

「왕립도서관령 1996」

– Instructions for the Royal Library, Decree 1996:505

1. 스웨덴의 도서관활동

스웨덴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동부에 위치하는 입헌군주국가로서,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와 안정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치, 세계적인 산업경쟁력 등으로 많은 나라들이 닮고 싶어 하는 선진 강소국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주 소개되는 나라이다.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전통으로 하는 스웨덴의 행정체제는 전국이 21개 주와 290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자치권한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맡는다. 2007년 현재 스웨덴에는 자치단체마다 1관씩 모두 290개의 공공도서관 본관이 운영되고 있고, 각 본관에 대하여 모두 1,090개의 분관, 90여개 이동도서관이 확인되어 전국적으로 모두 1,470개 공공도서관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웨덴의 도서관업무는 문화부 내 문화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문화부에 속하지만 그 권한은 관장에게 귀속되는 독립 기관으로 운영된다. 국립도서관은 정부에 의해 지명된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지도를 받지만, 그 운영의 책임은 관장이 진다. 또한 정부의 도서관지원사업은 스웨덴문화공무국가위원회(The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ultural Affairs)의 문화기금사업을 통하여 실시된다. 동 위원회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국가 문화정책을 구현하는 정부기관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순수예술 등의 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스웨덴 전국의 대학도서관은 37개, 학교도서관은 약 5,000여개, 정부지원을 받는 전문연구도서관은 70여개, 병원도서관은 100여개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왕립도서관령의 주요 내용

스웨덴 국립도서관은 15C 왕궁 내 도서관에서 출발한 왕립도서관이 맡고 있다. 왕립도서관은 일찍이 1661년 제정된 납본법령에 따라 성장하여, 1878년 일반 공중에게 서비스하는 국립도서관으로 발전하였으며, 1952년 국가서지작성 임무를 시작하고, 1997년 웹하베스팅 프로젝트를 통하여 디지털자원을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다른 국가기구와 같이 정부제정 훈령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훈령은 해당기관의 임무와 조직구조 등 전반적인 운영의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왕립도서관령」은 모두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국립도서관으로서 왕립도서관의 구체적인 임무가 열거되어 있다. 왕립도서관은 납본법에 따라 제출되는 국내 모든 출판물의 수집과 보존, 이용을 책임진다. 특히 전자적 문헌의 수집을 명기하고 있고, 고문서, 필사본, 지도, 사진 등에 대한 보존임무와 신문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제작임무도 명시되어 있다.

왕립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서지를 작성하고, 스웨덴 도서관들의 통합목록인 LIBRIS를 운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연구도서관들이 소장하는 외국문헌 통합목록을 작성하는 일과 해외 서지기관과 협력하는 업무, 스톡홀름 지역 내 연구도서관들 간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2조에서 왕립도서관은 도서관분야 협력과 연구개발 등 연구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다른 도서관들에게 특정 사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제4조에서는 왕립도서관의 관장을 국가사서로 부르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왕립도서관의 감독기구로서 10명 이내의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다.

제7조에서는 왕립도서관 이사회로 하여금 연구도서관들 간 개발현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마다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왕립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왕립도서관령 1996」

– Instructions for the Royal Library, Decree 1996:505

정부는 다음과 같이 왕립도서관의 임무를 규정한다.

제1조

왕립도서관(Kungl. Biblioteket)은 국립도서관이다. 따라서 왕립도서관은 문헌제공 및 서비스 시설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왕립도서관은 다음을 수행한다.

- 일정한 전자적 문헌과 함께 스웨덴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수집·보존·기술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그에 따라 납본법(1993:1392) 및 납본령(1993:1439)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해외에서 출판된 것으로 스웨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보존·기술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대표적으로 선정되는 외국 문헌을 수집·보존·기술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고서와 희귀본, 단명 출판물, 필사본, 지도와 사진 등의 도서관 장서를 보존하고 개선한다.
- 스웨덴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는 임무를 가진다.
- 국가서지목록을 제작한다.
- 해외 소재 서지기관과의 서지정보 교환과 함께, 연구도서관들에 입수된 외국문헌을 통합목록으로 제작하는 임무를 가진다.
- 스웨덴 도서관들의 통합목록인 LIBRIS를 책임진다.
-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 기관 및 국제 조직 등과 협력한다.
- 문헌 수집에 관해서 연구도서관들 간 협력 방안과, 정보기술에 기초하는 서비스의 효율을 강화하고 증대시키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에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한다.
- 이 법 제7조 1항에서 언급된 보고서를 준비한다.
- 스톡홀름 지역 내 연구도서관들 간 협력사업에 대한 책무를 수행한다.

제2조

왕립도서관은 도서관분야의 협력과 개발, 연구 성격의 사업 등에 책임을 지며, 또한 도서관들에게 특정 분야의 사업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조 국무부령의 적용

국무부령(1995:1322)은 제2조 및 제4조 2항을 제외하고 왕립도서관에 적용된다.

제4조 공공기관 경영협의회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는 왕립도서관의 관장이다.

제5조 이사회

왕립도서관의 이사회(governing body)는 국가사서를 포함하여 10명을 넘지 않는다.

제6조 직원 대표

직원대표법령(1987:1101)은 왕립도서관에도 적용된다.

제7조 이사회의 책임과 훈령

직원대표법령 제11조~제13조(1995:1322)에서 진술된 것에 더하여, 이사회는 스웨덴에서의 연구도서관들 간 개발 현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3년마다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원칙의 범주 안에 있지 않은 규정이나 기타 측면에서 중요치 않은 규정 등에 관한 결정을 국가사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Sweden, <http://www.kb.se/english/>
2) Nordic Libraries and their organizations in the 21st Century. 2005. <http://www.dbf.dk/Default.aspx?ID=4126>

스페인

「국립도서관 정관 1991」

▌스페인

「국립도서관 정관 1991」

–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Biblioteca National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전국의 도서관시스템을 관장하고, 스페인 국가기록유산의 수집과 보존 및 보급을 기본임무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문화부에 속하여 문화부장관의 감독을 받지만, 자체의 정관에 따라 사업목적과 활동에 자율적 권한을 가지는 자치적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정관의 주된 내용은 국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배구조(Governance)의 역할분담과 각각의 기능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국립도서관의 최고 책임자는 국립도서관 의장(President)으로서 문화부장관이 겸직한다. 국립도서관 운영의 실무적 관리책임자는 관장(Director General)이 되며, 문화부장관의 추천으로 각의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는 왕령에 의해 임면된다. 국립도서관의 의장과 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관리기구로서 경영전반의 책임을 분담하며, 자문기구인 왕립위원회(Royal Board)와 경영위원회(Board of Management)의 의견과 조언을 받는다.

스페인국왕을 명예의장으로 구성되는 왕립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문화계나 과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유명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며, 국립도서관장, 왕립학술원장, 재경부 재무관, 문화차관, 교육과학부 교육국장, 행정부 공공국장, 카탈로니아연구소장 등 14개 위원으로 구성된다. 왕립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로 운영되며, 전체회의는 정례회의와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한다.

1712년 필립 5세에 의해 궁정공공도서관으로 시작된 국립도서관은, 스페인 내 인쇄되는 모든 출판물의 납본을 강제하는 왕령에 의해 국가도서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1836년 왕실에서 행정부 소관으로 재산이 이관되며 국립도서관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국립도서관은 1896년 현재의 도서관 건물로 이전하여 열람실을 대폭 확장하였으며,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스페인내전 시기에는 고문헌의 보호를 명분으로 징발위원회(Junta de Incautación) 주도로 전국의 왕실과 성당, 개인저택 등에서 수집된 50만권의 장서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국립도서관은 1955년 증축을 통해 도서관 수장 공간을 3배로 확장하였지만, 1958년 납본제도의 개선으로 점증하는 장서량을 해결하기 위해 1986년 마드리드 소재 별도 부지에 신관건립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신축건물의 완공을 통하여, 현재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구관과 신관의 2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1986년 스페인 국립신문도서관(Hemeroteca Nacional)과 스페인서지기구(Instituto Bibliografico Hispanico), 기록자료 및 서지귀중본 센터(Centro del Tesoro Documental y Bibliografico) 등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서지중심기관으로 성장하였고, 1990년에는 문화부소속 자치기관인 독립법인으로 발족하였다.

스페인 국립도서관은 18세기 중반부터 왕령에 의한 납본제도의 덕분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광범위한 인쇄본을 수집하여 왔으며, 1938년에는 사진과 영화필름이 납본대상에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CD-ROM, 디스켓, DVD, 비디오테이프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매체기술의 변화에 따라 납본대상 자료로 추가되어 왔다. 오랫동안 왕령에 의존하였던 납본제도는 1958년 제정된 「납본서비스규정」으로 한동안 운영되었고, 1971년부터는 교육과학부의 부령으로 납본관련 규정이 실시되어 오고 있다.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분권적 권한이 매우 강하여, 일부 지방정부는 자치정부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지역 내 자료납본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55곳 납본사무소에서 납본대상 자료를 수집하여 국립도서관과 각 지방정부가 운영 공공도서관 등에 납본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은 전국 17개 지역자치정부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지방정부에 의해 모두 4,115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51개이고, 광역자치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14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3,842개,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75개로 구분된다. 2007년 현재 스페인 인구가 약 4,520만 명이므로 공공도서관 1관 당 약 11,000명 규모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1관 당 약 87,000명 규모와 비교할 때, 약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페인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은 334개, 전문도서관은 1,749개 등 스페인의 도서관 수는 모두 6,523개로 전해진다.

한편, 스페인의 도서관 활동을 규율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본고에서 다루는「국립도서관정관(Estatuto de la Biblioteca Nacional, 1991)」외에도 전국의 공공도서관활동을 지원하는「도서관서적독서법(Ley de la Lectura, del Libro y de las Bibliotecas, 2007)」과「일반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 규정(Reglamento sobre Préstamo de Libros en las Bibliotecas Públicas de Carácter General, 1972)」,「스페인도서관시스템 및 주립공공도서관 규정(Reglamento de Bibliotecas Públicas del Estado y del Sistema Español de Bibliotecas, 1989)」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하「국립도서관정관」전문>

「국립도서관 정관 1991」

- Real Decreto 1581/1991 del 31 Octubre 1991

제1조 특징, 구분 그리고 법적 형태

제1항 1991년 총괄 국가예산에 관한 1990년 12월 27일 법 31/1990(Act 31/1990 of December 27th, 1990 on the General State Budgets for 1991)의 제97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스페인도서관시스템의 수장으로서 국가 최고 도서관 기구인 국립도서관은, 총괄예산에 관한 1977년 1월 4일의 11/1977 법의 개정 본문 제4조 1항 a)에 포함된 행정적 특성을 가지는 자치 기구이며, 이는 1988년 9월23일의 1091/1988 왕실 입법령(Royal Legislative Decree)에 의해 승인되었다. 국립도서관은 문화부에 소속하여 서적 및 도서관 담당국(Directorate General for Books and Libraries)에 보고한다. 담당국은 법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역할에 더하여 국립도서관을 모니터링 하고, 다른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현재 적용법령에 따라 그 유효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제2항 국립도서관은 자체 사업목적에 의해 활동할 권한을 가지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58년 12월26일 자치국가기구법(Autonomous State Entities Act of December 26th, 1958)의 법적 형태로서 설립되고 운영된다. 또한 국립도서관은 총괄예산 법(General Budgets Act)과 스페인 역사유산 법(Spanish Historical Heritage Act), 국가도서관에 적용되는 최신 법률과 자치기구에 적용되는 기타 조항 등에 의해 운영된다.

제2조 목적 및 기능

국립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연구와 문화적 혹은 정보 목적을 위해,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서 모든 매체로 생산된 인쇄자료, 필사본, 비도서의 단일 및 정기적 서지아카이브를 편찬하고 편목하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상술한 아카이브로 소장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b) 자체의 서지적 및 문서적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자료의 자문, 연구, 대출, 복제 등을 통하여, 인문학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촉진하는 것.

c) 법정 납본 기록의 명부에 근거하여 스페인 서지생산에 대한 정보를 편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법정 납본 과정의 검열과 감시를 수행하는 것.

d) 도서관학 및 서지학 분야에서 주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자문과 연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스페인의 서지 유산에 관한 정보를 보전하고, 증대하며, 보급시키는 것.

e) 자체의 기능수행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 및 과학 기관과 다른 도서관 등과 연구 및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f) 자체의 권한 내에서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조정하며 촉진하는 것.

g) 자체 범위 내에서 법정 혹은 관리 규정에 따라 국립도서관에게 속하는 기타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제3조 관리 및 자문 기구

제1항 국립도서관의 관리는 다음에 의해 수행된다. :

의장(President)

국립도서관 관장(Director General of the Biblioteca National)

제2항 자문기구는 아래와 같다:

왕립위원회(Royal Board)

경영위원회(Board of Management)

제4조 의장

제1항 국립도서관의 의장은 문화부장관이다.

제2항 의장은 다음을 책임진다.:

1. 기관의 행정 지도
2. 기관의 장기 전략계획, 연간목표, 연간보고서, 그리고 예비 예산안 등의 승인
3. 기관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
4. 스페인의 국왕과 여왕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왕립위원회의 회의 주재.

제5조 왕립위원회

제1항 왕립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의 최고 자문기구이다.

제2항 스페인의 국왕과 여왕을 명예 의장으로 구성되는 왕립위원회는 다음의 성원들로 구성된다.:

a) 위원장: 문화계 또는 과학계 출신 탁월한 대표로서, 문화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b) 부위원장 : 위원회 성원 중에서 왕립위원회 만장일치로 선출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회의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c) 직무상 위원회 구성원:

1. 재경부의 재무예산 담당관
2. 교육과학부의 대학 및 연구 담당관
3. 문화담당 차관
4. 교육과학부의 교육담당국장
5. 공공행정부의 공공행정담당국장
6. 문화부의 서적, 아카이브 및 도서관 담당국장
7. 세르반테스(Cervantes) 연구소장
8. 과학연구회 의장
9. 국립도서관장
10. 왕립스페인학술원장
11. 왕립바스크(Basque)어학원장
12. 까탈로니아(Catalonian) 연구소 회장
13. 왕립 갈리시안(Galician)연구원장

14. 왕립 발렌시아(Valencia)어학원장

d) 임명직 위원회 구성원: 문화부에 의해 위원회로 지명된, 문화 경제 사회 분야 특별한 명성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최대 30명. 임명직 위원회 구성원들은 임명일로부터 3년 동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항 왕립위원회는 이사회의 멤버이기는 하나 투표권이 없는 간사를 임명해야 하고, 이는 기관에 배치된 공무원 중에서 국립도서관장에 의해 추천된다.

제4항 왕립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왕립위원회의 모든 사업을 촉진하는 것
b) 최고수준에서 왕립위원회를 대표하는 것
c)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에서 기관장을 지원하는 것
d) 왕립위원회 회의 소집과 일정을 준비하는 것
e) 왕립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합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

제6조 왕립위원회 운영

제1항 왕립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상임 위원회로 활동한다.

1. 전체회의는 모든 위원들로 구성된다.
2.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문화부 차관, 문화부의 서적·아카이브·도서관 담당국장, 국립도서관장,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추천하는 최대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2항 왕립위원회 전체회의는 도서관장에게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과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 하는 것 등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전체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도서관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국립도서관에 할당된 임무의 수행을 촉진하는 것
2. 장기 전략계획, 연간 목표, 연차 보고서, 기관의 임시 예산안 등을 보고하는 것
3. 수집, 보존, 보전 계획 및 프로그램, 그리고 출판물 종합계획 등을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
4. 국립도서관이 소장하는 서지 아카이브의 증진, 보존, 보전, 보급 등에 있어서 스페인 사회의 참여를 촉구하고 조장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제안을 개발하는 것
5. 문화부장관에게 국립도서관의 후원자 추천을 신청하는 것과 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가 두드러지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
6.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립도서관 의장이나 국립도서관장의 검토사항으로 제출된 문제들에 관해 보고하는 것.
7. 방식을 연구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자료를 구하는 것.

전체회의는 위원들에게 특별한 임무나 사업을 맡길 수 있다.

제3항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을 위해 전체회의에 제출되는 제안들에 관해 연구하고, 검토하고, 알리는 것,

2. 왕립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의 이행, 개발 그리고 실행을 보장하는 것.
3. 왕립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맡겨진 기타 임무를 맡는 것.
4. 상술한 임무의 수행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관해 왕립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

제7조 왕립위원회의 회의

제1항 왕립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례회의와 특별회의가 있다. 정례회의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된다. 반면, 특별회의는 기관의 의장이나 왕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양쪽 모두가 자진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2항

1. 왕립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들을 지명하여 특정 사업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창립할 수 있다.
2. 왕립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이나 제3의 기관의 관리임원 및 전문가들의 특별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승낙하고, 그 참석은 검토 중인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항 상임위원회는 최소 분기별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위원장의 결정 혹은 부위원장이나 국립도서관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제4항 현행 왕령에 의해 예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왕립위원회의 운영은 행정 절차 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표제 I의 제2장에서 인정된 사항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제8조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의 기능은 자문 및 조정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립도서관장의 임무 수행을 도와주는 것이다.

제9조 국립도서관장

제1항 기관은 관장의 직명을 가지는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관장은 문화부장관에 의해 추천되고, 각의에서 승인되며, 왕령에 의해 임면되어야 한다.

제2항 국립도서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왕립위원회에 의해 지시된 목적과 목표의 실행을 선도하는 조치들을 채택하여 기관의 경영을 지도하는 것.
2. 기관의 공식 대표로서 행동하는 것.
3. 국립도서관의 단위분서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장려하며 감시하는 것.
4. 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을 승인하고 지불을 명하는 것.
5. 왕립위원회에게 국립도서관 예비 예산안과 장기 전략계획, 기관의 연차사업목표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
6. 국립도서관 의장에게 다음의 제안사항을 제출하는 것.
   a) 장기간의 전략 계획 및 연례 검토
   b) 예비 예산 안 및 연간 목표 그리고 기초적 활동
   c) 연차 보고서 및 연례 재정보고서

7. 왕립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보급하고, 촉진하며, 채택하는 것.
8. 스페인 역사 유산을 관리하는 관련법령에서 설정된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국립도서관의 유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
9. 국립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규칙 및 규정, 그리고 왕립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준수를 책임지는 것.
10. 국립도서관에 영향을 끼치는 국내외 도서관 및 도서관기구들과 협력협약을 추진하고 공식화하는 것.
11. 현행 법령에 따라 자료 및 인적자원의 내적 배분을 인가하는 것.
12.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시정조치들을 채택하는 것.
13.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도서관장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도서관장이 수행해야 하는 기타 기능을 실행하는 것.
14. 일반적인 응용조항에 따라 자치기관장에게 귀속하고, 국립도서관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기타 경영 및 자문기구에 명백하게 위임되지 않은 모든 부가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

제3항 공석, 부재, 질병의 경우에, 도서관장은 그 순서에 따라 기술 관리자나 부장에 의해 대행될 수 있다.

제4항 국립도서관장은 현행 실시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본 정관 제10조의 조항과 같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임무를 부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기본 구조

제1항 조직 구조상 부관장의 범위에 할당된 다음의 부서들은 국립도서관장에게 보고한다.

1. 기술 관리직(Technical Directorate)
2. 관리(Management)

제2항 기술 관리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된 목적 및 목표의 적절한 운영과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배당된 업무와 자원을 관리하는 것.
2. 기관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고,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원을 국립도서관장에게 보고하는 것.
3. 기술 관리직의 목적을 제안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장려하는 것.
4. 서지 및 보전 처리, 대외 서비스 제공, 국립도서관 소장 서지유산의 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항을 국립도서관장에게 제안하는 것.
5. 서지 및 보전 처리, 대외 서비스 제공, 서지유산 관리 등의 적절한 실행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
6. 국립도서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개발하는 것.

7. 서지 장서의 증진, 보존, 보전 그리고 보급을 위해 스페인 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실현하고, 동일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것
8. 자신의 감독임무를 수행하는 국립도서관장을 지원하는 것.

제3항 관리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자신에게 위임된 목적과 목표의 적절한 운영과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할당된 업무와 자원을 관리하는 것, 특히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1. 기관의 인적자원 계획을 제안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 직원 채용 절차를 실행하는 것.
2. 직원 대표들과 사회적 활동 및 유대관계를 조성하고, 직원대표의 선거절차에 참여하고, 작업장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
3. 직원 인사관리를 수행하고, 사건과 인가 및 훈련활동에 대한 관련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
4. 자산관리, 소유 또는 배당 자산의 재고 조사, 필요물품 예고 등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대출, 상호대차, 수집 등과 관련하여 문헌을 처리하는 것.
5. 정부 조달 문헌을 처리하고, 조달절차와 관련한 해당기구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
6.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것과, 모든 해당 업무들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와 기술적 문헌을 작성하는 것.
7. 내부적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행정, 의전, 총괄 등록부, 공공 정보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
8. 수입 납입을 처리하고 자금예측을 제공하며, 신용기관과의 신용거래를 관리하고 입증하며, 자금운영을 해명하는 것.
9. 예산 및 프로그램의 예비안을 준비하는 것.
10. 국립도서관장에 의해 위임된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것.

제4항 총괄지원부서가 관리에 할당되어, 다음의 기능을 갖게 된다.

1. 기관의 계획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
2. 조직적인 연구 및 설계
3. IT자원 관리

제11조 자산 및 경제 수단

1. 국립도서관의 자산 및 경제 수단은 다음과 같다.:
2. 국립도서관의 토지를 구성하는 자산과 해당 토지의 생산물과 수입
3. 총괄국가예산에서 매년 배당되는 대출금 및 보조금
4. 공적 또는 사적 수입의 수령, 특히 모든 매체의 출판물 판매로 얻은 수입;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기록; 상호대차; 문헌 복제; 위임된 서지 검색; 선별적 보급; 강좌, 강연 및 세미나의 제공; 출판물 대출; 협력 협약; 그리고 기관의 임무와 관련된 기타 활동 등에서 비롯하는 수입

5. 보조금, 자발적 기증, 기부, 공적 혹은 사적 개인들에 의해 선호되어 수여되는 유산 및 유증
6. 정규 혹은 비정규 기타 경제 자원으로서, 법적으로 수령을 인가받은 자원

[참고자료]

1) Biblioteca Nacional de Espana. Estatuto de la Biblioteca Nacional. [cited 2008.8.25] <http://www.bne.es/eng/BNE/estatuto.htm>
2)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Libraries Statistics 2006 in Spain. [cited 2008.8.25] <http://www.ine.es/>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국립및대학도서관법 1994」

「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법 1994」

– 장관과 위원회, 관장의 지배구조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 그린란드 동남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1918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하여 1944년 이래 공화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의 면적은 남한과 비슷하지만 북극지방에 근접한 탓에 황무지가 많아 인구는 30여만 명에 불과하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업과 관광 및 금융업이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1818년 건립된 아이슬란드국립도서관은 오랫동안 아이슬란드에서 유일하게 외국문헌을 수집하는 연구도서관이었다. 1911년 설립된 아이슬란드대학교는 1940년이 되어야 공식적인 대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오늘날의 아이슬란드국립 및 대학도서관은 1994년 「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법」에 따라 이들 두 도서관을 통합한 것이다. 국립도서관은 대학도서관으로서 복합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학, 지질학, 생물학 등 분과건물마다 모두 16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9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아이슬란드대학과 아이슬란드교육대학이 통합됨에 따라 도서관 관련법령의 정비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홈페이지에서 소개되는 국립도서관의 역할로는, 1) 아이슬란드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2) 기록유산으로서 필사본의 보존, 3) 모든 납본자료에 대한 편목, 4) 인쇄 및 기타 매체에 대한 수집과 열람서비스, 5) 아이슬란드 대학의 연구 및 교수활동 지원, 6) 정부와 산업, 연구 등을 위한 도서관정보서비스, 7)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열람시설 및 자료의 제공, 8) 아이슬란드 도서관통합목록 운영, 9) ISBN 및 ISSN 국가센터

운영, 10) 학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소개되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납본법령에 따라 아이슬란드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1949년부터는 시청각자료, 1977년부터는 전자매체, 2002년부터는 온라인출판물을 수집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아이슬란드 웹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Harvest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도서 및 연속간행물, 기타 매체 등의 도서관자료는 모두 90만종에 이르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아이슬란드 디지털기록자원에 대한 접근과 열람을 제공하는 기본적 임무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1) 아이슬란드 기록유산의 디지털이용을 제공하는 것과 2) 학술연구자 및 공중 등에게 세계 디지털지식자원에 대한 편리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 등을 주요한 역할로 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도서관은 1920년까지의 모든 아이슬란드 신문과 연속간행물의 디지털제작을 완료하여 웹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어서 2000년까지의 신문자료와 1990년까지의 도서에 대한 디지털제작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도서관은 기록유산의 디지털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나라 덴마크왕립도서관의 보존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전통기록물 보존의 기본전략을 보완하여, 신문에 대한 마이크로필름제작을 디지털제작으로 전환하고, 근간 신문부터는 PDF파일을 수집하기로 하는 등 수집 및 보존에 있어 디지털 방식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립도서관은 해외 주요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자원에 대한 공동구매컨소시엄을 주관하는 국가라이선스 계약기관으로서, 아이슬란드 전국의 도서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구매모델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체구매 패키지 가격의 20%는 국가, 36%는 대학도서관, 20%는 의학도서관, 12%는 연구도서관, 8%는 정부 공공부문 도서관, 4%는 민간도서관이 분담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법은 모두 4개 장(chapter) 13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국립도서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이 설정되고 있다. 교육문화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 위원과 도서관장(국가사서)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국립도서관을 지휘하고,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의 정책결정과 재정계획 및 업무추진 등을 직접 감독하며,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일상적 업무를 책임지고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장관과 위원회, 도서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국립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이자 대학도서관이며 연구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규정하고, 모두 18개 항의 임무를 나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립도서관의 운영은 국가재원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제본소, 수리소, 복제소 등의 일부사업을 외부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대차와 온라인탐색, 복사 및 출력서비스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불필요한 자료의 제적처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도서관 실무 및 관리의 책임문제, 위원회 회의의 구성과 소집 등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아이슬란드국립및대학도서관법 1994」

– The Statute of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제1장 행정

제1조 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은 자체 관리위원회를 가진 독립적인 대학 기관이며, 교육과학문화부의 관할 하에 있다.

제2조 교육문화부의 장관은 4년 임기의 도서관 위원회(Library Board)에 다음의 5인을 임명해야 한다. : 대학협의회에서 지명하는 2인, 아이슬란드 연구협의회에서 지명하는 1인, 아이슬란드 도서관협회에서 지명하는 1인, 장관에 의해 선정되는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대리인도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교육문화부 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또 다른 1인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정책을 결정하고, 도서관 운영은 물론 도서관 재정계획과 업무일정 등을 감독해야 한다. 도서관장인 국가사서(National Librarian)는 도서관직원 대표 1인과 함께 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권과 제안권을 가진다. 교육문화부장관은 위원회 위원들이 받는 보수를 결정한다.

제3조 교육문화부장관은 5년 임기의 국가사서를 임명한다. 국가사서는 도서관위원회가 적임자로 생각하는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국가사서는 해당 직위에 대한 공시절차 없이 도서관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한 차례 재임명될 수 있다. 국가사서는 도서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일상적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사서는 연간 운영계획과 예산을 기안하고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국가사서는 도서관위원회가 적임자로 판단하는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부(副,deputy)국가사서를 임명한다. 국가사서는 또한 기타 도서관 직원을 임명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5조 도서관 개별 부서의 구분은 도서관자문위원회(library advisory committee)의 경우처럼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야하고, 이는 국가사서부(the Office of the National Librarian)와 부서장들 간 합동자문을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제2장 기능과 목표

제6조 이 법의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이자 아이슬란드대학의 대학도서관이다. 국립도서관은

과학과 학술, 정부와 산업분야에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연구도서관이다.

제7조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특히 다음과 같다.

1. 인쇄본과 기타 형태의 모든 출판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며,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모든 아이슬란드 자료를 수집하는 것, 특히 납본법령에 따라 모든 아이슬란드 저작물을 수집하고, 아이슬란드 문제를 다룬 모든 외국 저작물을 수집하는 것.
3.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기존 필사본 장서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아이슬란드 필사본과 보다 현대적 매체 형태의 유사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 이는 아이슬란드와 관련한 외국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가능한 최량의 자료로서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보존하는 것. 이를 위해 도서관은 특별히 제본소와 보존소 및 복제소 등을 운영해야 한다. 납본법령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저작물의 한 부는 정규 이용에서 제외되어 별도 관리되며 후손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5. 희귀장서를 보존하는 것.
6. 필요에 따라 주제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슬란드 도서, 필사본, 기록물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
7. 아이슬란드 서지 및 서적역사 분야 연구를 촉진하고, 아이슬란드 출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8.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체제와 도서관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유형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유사번호체제를 위한 국가사무를 운영하는 것.
9. 도서관 이용자에게 열람시설과 도서관 자료에 대한 편리한 접근 등을 제공하는 것.
10. 도서관 이용자가 가능한 효율적으로 도서관 자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1. 아이슬란드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
12. 아이슬란드 대학생의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것.
13. 산업, 정부, 연구 등을 위하여,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모든 예술 문화활동을 위하여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4. 아이슬란드 도서관들을 위한 통합목록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도서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서관들에게 컴퓨터 및 편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5. 아이슬란드 도서관들의 실무 표준화를 위해 일하는 것,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규모의 협력을 수행하는 것.
16. 국가 도서관상호대출센터가 되는 것.
17. 도서관정보서비스 연구 분야의 다국적 협력에 참여하는 것.
18. 강연, 전시, 예술행사 등을 통하여 학술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 도서관의 임무는 규정에서 보다 충분히 명기되어야 한다.

제3장 재정 문제

제8조 도서관의 운영비는 국가 재원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연차예산의 대학 부분은 국립도서관과 아이슬란드대학의 특별협약에 따라 도서관에 배정된다. 부동산, 비품, 설비 등의 운영, 갱신, 유지비용은 특별 예산항목으로 국가재원에 의해 지불된다.

제9조 레스토랑 운영이나, 제본소, 서적수리소, 서적복제소 등 관련 특정사업과 같은 도서관운영업무의 일정 부분을 입찰에 부치는 것이 허용된다. 도서관 위원회는 또한 법적으로 도서관이 실행해야 하는 특정업무 수행을 다른 기관과 도급 계약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 밖에, 국립도서관은 교육문화부의 승인을 얻어, 해당기관의 소유물을 국가장서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효력을 가지는 협약을 다른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도서관은 상호대차, 온라인탐색, 특별참고봉사, 모든 종류의 복제서비스, 컴퓨터출력 등과 같은 일정 유형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요금수준은 도서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기타 문제

제11조 도서관이 더 이상 도서관장서로서 소장하는 것이 불필요한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국립도서관 장서에서 제적하고 처분하며 기타 관련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가사서는 도서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제적자료의 선정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12조 문화교육부 장관은 법규에 따라 본 법의 수행과 관련한 보다 정확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들 규정은 무엇보다도 도서관 실무, 관리의 책임부분, 위원회 회의의 구성과 소집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제3조 1항과 제4조 1항에서 명시된 문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보다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은 또한 도서관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를 상세히 할 수 있다.

제13조 이 법은 즉시 발효된다. 국립도서관은 1994년 4월 28일에 아이슬란드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1994년 12월 1일에 운영을 시작한다.

[참고자료]

1)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http://www.bok.hi.is/ Apps/WebObjects/HI.woa/wa/dp?id=1011633>

2) The Statute of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http://www.bok.hi.is/id/1011638>

아이슬란드

「도서관법 1997」

「도서관법 1997」

– 1997년 5월 16일 제정, 법률 제 36호

북대서양에 위치하는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는, 인구 30만의 작은 나라이다 보니 외국의 동향과 정보에 대한 관심과 문자해득률이 높아 도서관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북유럽 5개국 도서관활동을 소개하는 IFLA자료에 의하면 아이슬란드는 1955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에 모두 57개 중앙도서관과 7개 분관이 운영되고 있고, 국립도서관 외에도 45개의 연구도서관이 산재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편, IFLA/FAIFE의 2007년 세계보고서(World Report)에서는 아이슬란드의 공공도서관수를 93개 대학도서관은 8개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슬란드의 도서관계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아이슬란드도서관정보학연합회(the Icelandic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sociation), 아이슬란드기록관리협회(Icelandic Records Management Association), 문헌정보학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Professiona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tists) 등의 전문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다. 아이슬란드 초기 도서관학 교육은 1956년 아이슬란드대학에서 학사과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전문화된 도서관정보센터들은 대부분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요구한다고 한다. 실제로 도서관법 제8조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도서관전문교육을 갖춘 직원채용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장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도서관법은 사실 내용에 있어서 공공도서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조 공공도서관의 정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은 물론

병원, 양로원, 교도소 등에서 운영되는 도서관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1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정의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임무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며, 모든 아이슬란드인은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공공도서관 역시 최상의 협력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신들의 활동을 연계·조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공공도서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더러(제3조), 초등학교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중학교 또는 대학수준의 학교와도 서비스협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아이슬란드 전국은 도서관구역들로 구분되어 각 구역마다 해당 구역의 도서관서비스를 책임지고 도서관 간 협력을 주도하는 지역공공도서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지정에 필요한 조건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도서관은 구역 내 다른 도서관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협력을 장려하며, 구역의 정보센터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도서관은 구역 내 학교나 병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도서관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들 간 협약에 따라 연간예산의 일부로 분담되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앞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서 병원과 양로원,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듯이, 이들 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두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적절한 이용료의 지불을 조건으로 구역 내 공공도서관과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제10조).

아이슬란드국립 및 대학도서관은 이들 공공도서관들의 업무절차를 조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도서관들 간 협력을 주도하여야 하고(제11조), 교육부장관은 공공도서관문제의 주무장관으로 관련된 결정권한을 가지며(제13조), 장관과 지방정부, 도서관행정 등에게 자문하는 공공도서관자문위원회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도서관법 1997」

- 1997년 5월 16일 제정, 법률 제36호

제1조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문화의 기관이다. 그들의 목적은 국민과 어린이, 성인 등에게 컴퓨터장비와 기계가독형식의 정보를 포함한 도서 및 기타 매체의 다양한 보존소에 대한 편리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의 보고에 대한 공중의 자유롭고 제약 없는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각자의 서비스 구역에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서비스에 관한 공공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목표는 아이슬란드어를 장려하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며, 독서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슬란드인은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령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전국적인 도서관들 간 최상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조

공공도서관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b. 관련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 양로원, 교도소의 도서관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합을 형성하거나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허가된 기타 방식으로, 도서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만일 도서관 행정기관과 학교운영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나 관련 자치단체들의 승인을 얻어서면 협약을 체결한다면, 공공도서관과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은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공동 운영되는 해당도서관은 방과 후에도 공중이 도서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계약 관리 및 서비스 협력은 특수한 사정으로 그러한 협약이 적절한 곳에서 공공도서관과 중등학교 혹은 대학수준의 학교 사이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

제5조

전국은 도서관 구역들로 나뉜다. 교육부장관은 아이슬란드 지방자치단체 연합의 권고에 기초한 규칙에 따라 구획을 정한다. 각 구역은 해당 구역에 봉사할 책임이 있는 지역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구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그들 간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제6조

각 도서관 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에 있는 어떤 공공도서관이 지역도서관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어떤 도서관이 지역도서관의 역할을 맡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조건, 예를 들어 전문직원, 소장자료, 수서와 기술적인 장비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지역도서관은 구역 내 다른 도서관들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협력을 장려하며, 구역의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도서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도서관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거나 혹은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지역도서관은 학교와 병원과 같은 협회 및 기관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지역도서관은 구역의 경제부분과 관련한 정보서비스나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각 공공도서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정부에 의해 선임된 3~5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관장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도서관 관장위원회의 선출 임기는 지방정부 선거 임기와 동일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관장위원회의 관련조건을 제정해야 한다.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서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휴 협약은 위원회의 책무와 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표성 등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동일한 사항은 지역도서관의 관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건물과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모든 채용은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활동 범위에 적합한 전문교육을 갖춘 직원의 채용을 보장하도록 시도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관장은 가능한 경우, 문헌정보학 또는 기타 상응하는 관련분야에서 학위를 마쳐야 한다. 도서관 건물의 설계와 도서관 재산의 구입이나 임대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 접근을 보장하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도서관에의 예산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 제휴 협약은 도서관의 위치를 참작하여 경비의 배분에 관해 규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제6조에 따라 지역도서관에 대한 협약은, 해당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도서관으로서 구역의 도서관에게 배분하는 분담금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전국의 모든 병원, 양로원 그리고 교도소는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적절한 이용료의 지불을 조건으로 구역 내 공공도서관과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아이슬란드국립도서관-대학도서관은 아이슬란드 도서관들에게 있어서 업무절차에 대한 조정을 촉진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법률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서 추가로 규정된 대로 다른 도서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부장관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이 법의 조항과 이 법에 의해 제정된 규정에 대한 준수를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다. 공공도서관들은 그들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추가 관리 조항에 따른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다른 관계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부장관은 3년 임기의 공공도서관자문위원회를 선임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의 1인은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에 의해, 1인은 국립도서관 - 대학도서관에 의해, 세 번째 위원은 아이슬란드도서관협회에 의해 천거되어야 한다. 장관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연합조직, 지방정부, 도서관 행정기구나 공공도서관장 등에 의해 제기되는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자체의 발의로 위 기관들에게 의견 및 권고를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5조

교육부장관은 이 법령의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시행령은 아이슬란드도서관협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연합조직과 협력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제16조

이 법령은 1997년 8월1일자로 효력을 갖는다.

임시조항

공공도서관들이 현대정보기술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정보네트워크에서 전국의 도서관들 간 상호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무부처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연간 최소 4백만 ISK(역주; 아이슬란드 화폐단위 “크로나”)를 할당할 것이다. 기금은 이 법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컴퓨터장비의 구입을 위해 도서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서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대중을 위한 새로운 정보기술사용법 교육 자료를 간행하는 것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기금은 공공도서관의 관심분야, 특히 연구나 교육 분야의 개발 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금

의 사용에 대한 규정(1)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제13조에 의한 공공도서관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의 적절한 배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1) 1997년 제765호 규정

[참고자료]

1) Libraries Act, No.36, 1997.
<http://eng.menntamalaraduneyti.is/Acts/nr/2431>
2)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http://landsbokasafn.is/index.php?page=english>
3) Nordic Libraries and their organizations in the 21st Century. 2005.
<http://www.dbf.dk/Default.aspx?ID=4126>

에스토니아

「공공도서관법 1998」

▌ 에스토니아

「공공도서관법 1998」

– 행정수준별 위계적 분담구조

에스토니아는 전국 16개 주(County)를 광역자치단위로 하고, 주에 소속된 227개 자치단체를 기초 행정단위로 하는 국가행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인구 130만 명의 에스토니아에는 56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도서관 1관 당 주민 봉사인구는 2,300여명으로, 핀란드 6,000여명, 호주 13,000여명, 뉴질랜드 13,400여명, 일본 41,000여명, 한국 80,000여명 등에 비교하면, 현재까지 확인되는 선진국 공공도서관 서비스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서관문화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에스토니아 전국의 도서관협력체계는 행정수준에 따라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도서관행정은 문화부에 소속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도서관을 두고, 16개 주정부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주립공공도서관을 운영한다. 하위 227개 자치단체는 관내 공공도서관 중 대표도서관으로서 중앙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각각의 행정 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도서관들은 지역단위 협력사업을 주도하고, 전국적인 도서관서비스 협력체제의 위계적 구조를 연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에스토니아에는 학교도서관 523개관과 전문 및 연구도서관 83개관 등 전국에 모두 1,167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이들 각종 도서관에 근무하는 유자격 사서들은 3,027명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공공도서관법의 조항에서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에스토니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10,000명이상 도시에 의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두어야 하며, 설립 사항을 문화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주정부는 주립도서관을 운영하고, 기초 자치단체는 중앙도서관을 지정하여, 각각의 행정수준에서 장서수집 및 등록, DB구축과 관리, 통계적 보고, 직무훈련과 조언, 참고업무 등의 조정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되어, 자치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문헌정보학 분야 대학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서 전문자격의 해당 등급에 따른 전문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예산과 기부금, 수수료, 기타 수익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전국적 프로그램의 구현비용과 공공데이터통신망 연계사업비용, 주립공공도서관 직원 4명에 대한 보수와 관리비용 등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연계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서비스의 무료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복사, DB이용, 번역 등의 특별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섯째, 대출자의 신분이 소재지 행정주민이 아닐 경우는 대출 보증금을 요구하도록 하고, 값비싼 자료나 귀중본 도서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곱째, 대출이용자가 문헌을 분실 혹은 훼손하였을 경우, 현물로 대신하거나 10배의 배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배상금의 지연이나 체납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명령하는 법적인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공공도서관법 1998」

1998.11.12 제정 1998.12.10 발효; 관보 I 1998, 103, 1696
2000.11.15 개정 2001.01.01 발효; 관보 I 2000, 92, 597
2007.02.08 개정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제1장 총칙

제1조 법의 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도서관의 각종 활동, 장서, 서비스, 경영 및 재정운영 등을 위한 기초를 제시한다.

제2조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인류의 사상과 지역민의 문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 및 성과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생애학습과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2) 공공도서관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출판물과 시청각 문헌, 기타 문헌(이하 '문헌'이라 한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열람에 제공하는 자치단체의 도서관이다.

제3조 공공도서관의 법적지위

(1)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 소속기관이다.

(2) 공공도서관은 이 법과 기타 법령,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헌장,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제2장 공공도서관의 사업조직

제4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1) 지방정부의회는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결정해야 한다.

(2) 공공도서관망의 설치는 다음의 원칙에 기초되어야 한다.:

1) 주민 10,000명 이상의 도시에 최소 한 개의 공공도서관

2) 주민 10,000명 이상 도시에 매 15,000명마다 최소 한 개의 공공도서관

3) 주민 평균 500명이하의 봉사지역마다 최소 한 개의 공공도서관

(3)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은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문화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해당

통보사항에는 공공도서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5조 주립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중앙도서관

(1) 모든 주(county)에는 주립도서관을 두어야 한다. 주립도서관은 주 내에서 도서관서비스의 조정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이다.

(2) 문화부 장관은 주지사의 건의에 따라 주립도서관을 선정해야 한다. 주지사는 이 조 (5)항에 열거되는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리고 상응하는 자치단체의회나 시의회의 동의에 기초하여 주립도서관의 선정을 제안해야 한다.

(3) 복수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당국에서, 각 의회는 도서관서비스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중앙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주립도서관 및 중앙도서관의 임무는 동일 도서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5) 도서관서비스의 조정을 수행하는 주립도서관 및 중앙도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서의 수집과 등록
2)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서지데이터베이스, 전문(full text)데이터베이스, 기타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축과 관리
3) 공공도서관활동의 통계적 보고 및 분석의 조직
4) 도서관 직원의 실무훈련 편성과 전문적 조언
5) 서지 참고업무의 조직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제6조 공공도서관 업무의 규정 및 조직

(1) 공공도서관 경영의 기능 및 조직, 관장의 권한과 의무, 공공도서관 활동의 조직과 관련한 기타 중요한 문제 등은 지방의회에 의해 승인된 법규 내에서 규정된다.

(2) 공공도서관 업무의 조직을 위한 지침은 문화부장관령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제7조 공공도서관의 관장

(1) 관장은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2) 관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 당국은 공개경쟁을 공고하고, 경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장은 관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장과의 고용계약은 특정 기간 혹은 불특정 기간 동안 체결되어야 한다.

(4) 관장은 이 조 (6)항에서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5) 관장이 문헌정보학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사서전문자격의 4번째 등급을 갖추어야 한다.

(6) 봉사구역 내 주민 500인 이하인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이 조 (4)항 혹은 (5)항에서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서 전문자격의 3번째 등급을 갖추어야 한다.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제8조 공공도서관 협의회

(1) 최소 3관 이상으로 구성되는 공공도서관협의회는 지방정부에게 도서관서비스 조직에 대한 제안을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업무평가, 그리고 공공도서관 활동과 관련한 기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협의회의 권한과 절차규정, 조직절차 등은 공공도서관 법규에서 규정된다.

(2) 공공도서관 관련 특정 프로그램과 발전 동향 등을 검토하고, 협력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문화부 장관은 자문기구로서 공공도서관협의회를 조직하고, 그 정관을 승인해야 한다.

제9조 공공도서관의 자산

공공도서관이 소유하는 자산은 지방정부의회에 의해 승인된 절차에 따라 소유되고, 사용되고, 처분되어야 한다.

제10조 공공도서관의 재정

(1)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재원을 갖는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
  2) 정부 예산
  3) 기부
  4) 주요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 수수료
  5) 기본금과 기부금에서 비롯하는 수익

(2)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1) 이 조 (3)항 3)에 명기된 직원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직원들의 보수
  2) 공공도서관 봉사지역의 주민 수에 기초하는 문헌 장서의 정례적 공급
  3)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특성화에 적합한 공간, 비품 및 관리비용

(3) 다음의 비용은 문화부의 제안으로 정부 예산으로부터 지원된다.
  1) 문헌 수집 비용
  2) 전국적 프로그램의 구현 비용
  3) 주립도서관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의 직원 네 명에 대한 보수와 관리비용
  4) 공공 데이터 통신망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

(4) 이 조 (3)항에서 명기된 지출 조항을 위한 절차는 문화부장관령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2000.11.15 통과, 2001.01.01 발효; 관보 I 2000, 92, 597)

제11조 감사, 감독과 보고

(1)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감사한다.

(2) 문화부는 공공도서관망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3) 주지사는 주립도서관의 임무 수행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4) 공공도서관은 그 활동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은 매년 1월20일까지 정부 예산에서 할당된 총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5) 주 내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통계적 및 실제적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주립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립도서관들은 매년 3월1일까지 해당 주 내 공공도서관들의 통계적 및 실제적 업무데 대한 통합보고서를 문화부에 제출해야 한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제12조 공공도서관의 기구 활동의 재편성과 종결

(1)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 의회의 결의에 의해 재편성되거나, 그 활동이 종결된다.
(2)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은 최소 예정일 한 달 전에 공공도서관 활동의 재조직이나 종결사항을 문화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장서, 서비스와 열람자

제13조 장서

(1)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서비스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언어, 형태, 종류의 문헌을 포함하도록 그 구성에서 보편적이다.
(2)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 의회나 시 의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에 불필요한 문헌을 무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3) 공공도서관이 소장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헌과 중대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헌은, 문화적 기념물과 관련한 법령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조건에 따라 등록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역 내 도서관서비스의 조직

(1)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역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2) (폐기 -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3) 공공도서관은 해당 서비스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도서관들과 도서관서비스에 협력해야 한다.

제15조 열람자와 서비스

(1)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이 법 제17조 (3)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관내 대출, 문헌의 가정대출, 공공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제공 등은 공공도서관의 기본 서비스이다. 공공도서관의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다.
(2-1) 정보를 요구하는 개인은 공공정보법(Public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공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컴퓨터 이용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만일 한 도서관이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정보이용을

요구할 경우, 도서관은 정보이용을 요구하는 개인들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도서관 직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들의 웹 사이트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3) 특별서비스(복사, 데이터베이스 이용, 번역 등)에 대해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액수는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4) 공공도서관 장서에 없는 문헌은 요청이 있으면 열람자의 비용으로 다른 도서관에 주문된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5) 다음의 경우, 문헌의 가정대출 때 열람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1) 열람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공공도서관 소재 지방자치단체나 시가 아닌 경우

2) 문헌의 가치에 따라 필요한 경우(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5-1) 이 조 (5)항에 명시된 보증금의 징수와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6) 공공도서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무료로 가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공공도서관 규정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조직, 열람자의 권리와 의무 등은 자치단체 의회에 의해 승인된 공공도서관 규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이는 모든 열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17조 열람자의 책임

(1) 열람자는 납기일까지 대출 문헌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열람자가 납기일까지 대출문헌을 반납하지 못하면, 공공도서관은 연체기간 동안의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마다 매 연체일당 1크룬(kroon)을 넘지 못한다.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2) 문헌을 훼손하거나 반납하지 못한 경우, 열람자는 새 문헌으로 대신하거나 해당 문헌가격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3) 공공도서관이 정한 납기일까지 이 조 (2)항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열람자는 최대 일 년까지 대출권리를 박탈당한다.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4) 공공도서관은 이 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금액의 지불에 대해 열람자에게 기한을 제시해야 한다. 납기일까지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은 열람자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납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납부명령서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기한 및 절차 등을 밝혀야 한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5) 이 조 (4)항에서 명시한 경고장에서 제시한 기한 내 납부명령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은 집행절차규정(Code of Execution Procedure)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갖는다.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6) 지방자치단체나 시 당국은 이 조 (4)항과 (5)항에 명시된 권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 행정기관, 혹은 행정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기관 등에게 양도할 수 있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7) 이 조 (1)항과 (2)항에서 명시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제4장 법의 이행

제18조 정관

공공도서관 정관은 법이 발효되고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조항에 의거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제19조 주립도서관

이 법이 발효되는 때, 발효 전 주립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은 주립도서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20조 문화부의 규정

공공도서관법(관보 1992, 17, 250; 관보 I 1993, 41, 606; 79, 1180; 1996, 49, 953)의 이행을 위해 발의되는 문화부장관령은 이 법이 발효되고 3개월 이내 이 법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제20-1조

교육 및 전문 자격에 대한 고용 계약과 요건

(1) 2007년 5월 1일 이전에 관장과 맺은 고용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며, 그들은 에스토니아 공화국 고용 계약법의 절차에 따른 조건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다.

(2) 2007년 5월 1일 이전 유효했던 교육 및 전문 자격은 2007년 5월 1일 이전 재직했던 관장에게 적용된다(2007.02.08 통과, 2007.05.01 발효; 관보 I 2007, 19, 93).

제21조 [본문에서 생략됨].

[참고자료]

1) Estonian Public Libraries Act.
http://www.legaltext.ee/en/andmebaas/tekst.asp?loc=text&dok=XX10029&keel=en&pg=1&ptyyp=RT&tyyp=X&query=Public+Libraries+Act

2) Estonian Ministry of Culture. http://www.kul.ee/index.php?lang=en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洲) 공공도서관법 1990」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 자치단체 간 도서관행정 협력체계의 기초를 제공

1.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지원정책

캐나다는 10개의 주(州)와 3개의 준주(準州)로 구성된 연방제국가이다. 지방분권적 자치전통이 강한 구미선진국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캐나다 역시 공공도서관행정지원 체계의 책임은 주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프랑스와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큰 면적(1,076,395㎢)에 캐나다 인구의 약 38%(약 1,250만 명)가 집중되는 캐나다 정치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주로서, 주도는 토론토이다.

「공공도서관법」은 온타리오 주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 법령이다. 온타리오 주 내 다양한 자치단체들은 이 법령에 기초하여, 공공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무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한다.

주 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는 문화부이다. 문화부장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서비스 진흥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부의 공공도서관지원프로그램은 온타리온 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북부지역에 대한 공공도서관지원은 “온타리오 도서관서비스 - 북부(The Ontario Library Service - North; OLSN)”가 대행하고, 남부지역에 대한 공공도서관지원은 “남부온타리오 도서관서비스(Southern Ontario Library Service; SOLS)”가 대행한다. 이들 OLSN과 SOLS는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북부 및 남부지역 공공도서관활동을 지원하는 이전지불기관(Transfer Payment Agencies)으로서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위원회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들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컨설팅과 사서교육훈련,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문화부는 '온타리오 공공도서관서비스 상'을 제정하여 공공도서관서비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매년 10월3째 주에 '온타리오 공공도서관 주간'을 실시하며, 공공도서관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기금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문화부는 주 전역의 공공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온타리오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기획 및 서비스, 자원 등 분야별로 구성되는 127개 항목의 인증지침을 운영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공공도서관에게는 주정부의 인증을 발급하고 각종 지원정책에서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4년을 주기로 갱신되는 인증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도서관자율로 실시된다.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2005년 현재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수는 445개 자치단체에서 분관을 포함하여 모두 752개관으로, 1개관 당 서비스인구는 약16,6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법」의 주요내용

캐나다의 지방자치 행정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주의 역사적 및 지리적 사정에 따라 고유한 자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州)정부에서 제공하는 자치단체 소개정보에는 행정구(regions), 군(counties), 단독자치단체(single-tier municipalities), 자치구(districts)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속하는 하위 자치단체로는 자치체(municipality), 시(city), 읍(town), 면(township), 동(village) 등이 예시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정확한 자치행정체계는 우리의 행정단위명칭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비유하여 예시해 보았다.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법은 모두 42개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공공도서관서비스, 제2부 온타리오공공도서관서비스, 제3부 총칙 등으로 나누어진다.

온타리오 주 모든 자치단체는 본 법 제3조에 따라 조례에 의해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운영기구로서 공공도서관위원회(public library board)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연합위원회(union board)를 설립하고 참여 자치단체 간 위원회 운영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는 이들 위원회를 규정하는 조례와 협약을 신속하게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에서는 군(county)은 하위 자치단체 의회가 2/3 의결로 군립도서관을 요구할 경우, 군 의회는 조례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를 위한 군립도서관을 설립하고 군립도서관위원회(county library board)의 관리와 감독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郡)은 군 내 하위 자치단체나 인근 단독자치단체 등과 협약하여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county library co - operative board)를 설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제9조에서는 이들 공공도서관위원회, 연합위원회, 군립도서관위원회,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 등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 의회가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각 위원회 위원의 지명자격은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으로서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제14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 위원회는 공공도서관직원에 대한 임면권한을 가지며 공공도서관의 최고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0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에서는 1) 지역공공도서관서비스 제공, 2) 법과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 3) 장관에게 연차보고서 제출, 4)자산보장규정의 제정, 5) 회계업무에 대한 보장조치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서

비스의 무료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명시하고, 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의 구체적인 범위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25조는 영미권역의 자치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서관채권에 대한 관련조항으로서, 신규 도서관부지 매입과 신개축비용, 도서 및 시설장비 구입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27조에서 모든 자치단체나 군 의회는 금전, 토지 혹은 건물 지원의 방식으로 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0조에서 담당 장관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도서관목적의 모든 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부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조항에서는 온타리오 지역을 남북으로 양분하여, “온타리오 도서관서비스 - 북부(The Ontario Library Service - North; OLSN)”와 “남부온타리오 도서관서비스(Southern Ontario Library Service; SOLS)”가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신하여 자치단체 공공도서관위원회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Canada, Ontario State, Public Library Act)
(R.S.O. 1990, CHAPTER P.44)

(정의)
제1조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위원회**"는, 제1부에서는 공공도서관위원회, 연합위원회, 군립도서관위원회 혹은 군립도서관 협동위원회 등을 의미하며, 제2부에서는 온타리오도서관 서비스위원회를 의미한다. ("conseil")

"**하급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목적으로 군(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municipalité de palier inférieur")

"**장관**"은 문화부장관이나 또는 국무회의법에 따라 이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다른 국무위원을 의미한다.("ministre")

"**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한다.("municipalité")

"**규정된**"은 내규에 의해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prescrit")

"**규정**"은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을 의미한다.("règlements")

"**단독 자치단체**"는 군(郡)과 관련하여, 지리적으로는 군 안에 위치하지만 지방자치를 목적으로 군을 구성하지 않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제1부 공공도서관 서비스

공공도서관위원회(Public Library Boards)

(공공도서관의 승계)
제2조 1985년 3월 29일 직전에 운영되고 있었던 선행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모든 공공도서관은 이 법령(part)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도서관의 설립)

제3조 (1) 자치단체의회는 조례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장관에게 제출되는 조례의 사본

(2) 전(1)항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면, 주문관은 신속하게 조례의 사본을 장관에게 우송하거나 배달해야 한다.

위원회

(3) 공공도서관은 위원회의 관리와 감독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영어로는 'The Public Library Board', 프랑스어로는 'Conseil de la bibliothèque publique de'로 불리는 법인이다.

연합위원회(Union Boards)

(연합도서관의 승계)

제4조 1985년 3월 29일 직전에 운영되고 있었던 선행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모든 연합공공도서관은 이 법령(part)의 적용을 받는다.

(연합공공도서관의 설립)

제5조 (1) 둘 이상의 자치단체 의회는 연합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2) 전(1)항의 협약은 기존 도서관들의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연합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과 유지비용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는 분담비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연합위원회

(3) 연합공공도서관은 연합위원회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 둔다. 이 위원회는 영어로는 The Union Public Library Board, 프랑스어로는 Conseil de la bibliothèque publique unie de로 불리는 법인이다.

공공도서관위원회의 해산

(4) 전(1)항에 의해 협약이 체결될 때

(a) 연합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공공도서관 위원회는 해산된다.

(b) 해당 공공도서관위원회의 자산과 채무는, 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연합위원회에 귀속되어 인수된다.

장관에게 제출되는 협약의 사본

(5) 전(1)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면, 최대 인구를 보유한 자치단체의 주무관은 신속하게 협약의 사본을 장관에게 우송하거나 배달해야 한다.

군립도서관 위원회(County Library Boards)

(군립도서관의 승계)

제6조 1985년 3월 29일 직전에 운영되고 있었던 선행 법령에 의거해 설립된 모든 군립도서관은 이 법령(part)의 적용을 받는다.

(군립도서관의 설립)

제7조 (1) 지방자치를 목적으로 군(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치단체가 최소 2/3의 의회 결의로 군립도서관을 설립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군 의회는 조례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를 위한 주립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장관에게 제출되는 조례의 사본

(2) 전(1)항에 따라 조례가 통과되면, 주무관은 신속하게 조례의 사본을 장관에게 우송하거나 배달해야 한다.

추가회원 : 협약

(3) 군립도서관이 설립되고 나면 언제든지, 협약에 참가하지 않는 하급 자치단체 혹은 단독 자치단체의 의회와 군(郡) 의회는, 해당 하급 자치단체 혹은 단독 자치단체를 군립도서관에 참여시키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군 의회는 그에 맞게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협약의 내용

(4) 전(3)항의 협약은 군립도서관의 설립, 운영과 유지비용에 대해 군(郡)와 단독 자치단체가 각각 지불해야 하는 분담비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위원회의 해산 등

(5) 군립도서관이 설립되면,

(a) 군립도서관이 설립된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자치단체나 하위 자치단체를 위해 설립된 모든 공공도서관위원회와 군립도서관 협동위원회는 해산된다.

(b) 해산되는 도서관위원회의 자산과 채무는, 군립도서관을 설립하는 조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군립도서관위원회에 귀속되어 인수된다.

동일사항

(6) 자치단체가 군립도서관에 참여할 경우, 전(5)항은 필요한 수정을 거쳐 적용한다.

군립도서관 위원회

(7) 군립도서관은 위원회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 운영되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영어로는 The (주 이름) County Library Board, 프랑스어로는 Conseil de la bibliothèque du comté de(주 이름)로 불리는 법인이다.

군립도서관 협동위원회

(군립도서관 협동위원회의 승계)

제8조 (1) 1985년 3월 29일 직전에 실제 운영되고 있었던 선행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모든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는 이 법령(part)의 적용을 받는다.

해산되는 경우,

(2)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가 군립도서관이 설립된 지역에서 관할권을 갖는다면, 해당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는 해산되어, 그 자산과 채무는 군립도서관위원회에 귀속되어 이전된다.

총칙

(공공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9조 (1) 공공도서관위원회는 자치단체 의회가 지명하는 최소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합위원회의 구성

(2) 연합위원회는 전5조(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서 명시하는 비율과 방식으로, 관련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지명하는 최소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군립도서관위원회의 구성

(3) 군립도서관위원회는 군 의회가 지명하는 최소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동일사항

(4) 단독 자치단체가 군립도서관에 참여할 경우, 군립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군 의회 및 단독자치단체 의회에 의해 합의된 비율에 의거하여, 군 의회 및 단독자치단체 의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 구성

(5)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는 군 의회가 지명하는 최소 5인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

제10조 (1) 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는 자격을 갖는 개인은,

(a) 적어도 18세 이상;

(b) 캐나다 시민이며;

(c)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i) 공공도서관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립되는 자치단체의 거주자, 연합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립되는 자치단체 중 한 곳의 거주자, 군립도서관위원회의 경우에는

참여 자치단체 중 한 곳의 거주자, 또는 군립도서관 협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봉사하는 지역의 거주자

(ii)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와 계약을 맺는 자치단체의 거주자

(iii)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와 계약을 맺는 지역서비스위원회의 해당지역 거주자

(iv)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인디언 집단의 일원

(v) 두 번째 위원회의 거주자를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구득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

(d) 위원회 혹은 군이나 자치단체, 연합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자치단체 모두에 고용되지 않은 자

위원회에 대한 의회 의원 수의 제한

(2) 위원을 지명하는 의회는 다음의 수보다 많은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

(a) 공공도서관위원회나 연합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과반수보다 한 명 적은 수

(b) 군립도서관이나 군립협동도서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근소한 과반수

임기

(3) 위원회 위원은 지명의회의 임기와 일치하는 기간 동안, 혹은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일회 이상의 임기에 재임명될 수 있다.

임명 시기

(4) 새로운 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 임명은 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위원은 임명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이후 위원의 임명은 매 임기마다 의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의회가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의 임명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명은 의회의 첫 번째 회의로부터 60일 이내 개최되는 정기 혹은 특별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공석의 공지)

제11조 (1) 위원을 임명하는 자치단체나 군(郡)의 주무관, 또는 연합위원회의 경우에 관련 자치단체의 주무관은, 위원의 공석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유통 중인 신문에 공시하고 응모자를 공모함으로써, 해당 사항을 공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동일사항

(2) 전(1)항에서 언급된 공시는 영어로, 혹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적절히 명시되어야 한다.

(3) 폐기

(공석)

제12조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임명권한을 가진 의회는 신속히 잔여 임기 임무를 수행하고 해당 공석을 채울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45일 이내일 때는 제외한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박탈)

제13조 자격박탈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기소범죄로 유죄가 입증된 경우

(b) 무능력하게 된 경우

(c) 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고, 연속 3개월간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d) 제10조 (1)항 (c)호의 요건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정지 된 경우

(e) 기타 자신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위원의 자리는 공석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즉시 공석을 공표하며, 임명권한을 가진 의회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첫 번째 회의)

제14조 (1) 새로운 임기의 위원회 첫 번째 회의는 다음의 경우 소집된다.

(a) 아래(2)항에 의한 조례가 통과되면, 제15조 (2)항에 따라 임명된 최고경영자에 의해

(b) 아래(2)항에 의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다면, 임명권한을 가진 의회의 주무관이나, 혹은 연합위원회의 경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의 주무관에 의해

첫 번째 회의를 요구하는 조례

(2) 자치단체 의회, 혹은 연합위원회의 경우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과반수는 제15조 (2)항에 의해 임명된 최고경영자에게 매 새로운 임기에 있어 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

(3) 위원회는 새로운 임기의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 중 한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위원장 대리

(4) 의장의 부재 시, 위원회는 위원들 중 한명을 위원장 대리로 지명할 수 있다.

(직원)

제15조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직원을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임기와 급여를 결정하고 그들의 직무를 규정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

(2) 위원회는 공공도서관과 그 직원의 운영방침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최고경영자를 임명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모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위원회가 때때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기타 권한 및 책무를 갖는다.

간사

(3)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위해 간사를 임명한다.

(a) 위원회의 공식 서신을 처리한다.
(b) 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관리한다.

회계원

(4)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위해 회계원을 임명한다.
(a) 위원회의 모든 자금을 수령하고 회계 관리한다.
(b)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인은행과 신탁회사, 신용조합 등에서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
(c) 위원회를 대신하여 수령한 모든 자금을 해당계좌 예금으로 예치한다.
(d) 위원회의 지시로 자금을 지출한다.

동일사항

(5) 동일인이 간사와 회계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전(2)항에 의해 임명된 최고경영자는 해당 간사 및 회계원이 될 수 있다.

(회의)

제16조 (1) 위원회는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최소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시기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

(2) 위원장 또는 두 명의 위원은 누구나, 각 위원들에게 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타당한 통지를 보냄으로써 위원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폐기
(4) 폐기

의결정족수

(5) 위원회는 사업 의결을 위해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하다.

투표

(6)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회 다른 위원들과 함께 모든 의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으며,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모든 의제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공개 및 비공개 회의)

제16조1 (1) 이 조항에서

"소위원회(committee)"는 모든 자문 혹은 기타 소위원회와, 위원의 50%이상이 위원회(board)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나 유사 기구를 의미한다.

"**회의**"는 위원회(board)의 모든 정기회의, 임시회의, 소위원회 회의 혹은 기타 회의를 의미한다.

공개회의

(2) 이 조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행동

(3)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추방할 수 있다.

비공개회의

(4) 의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회의나 회의 일부는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a) 위원회 재산의 보호

(b) 개인 신분에 대한 사적인 문제

(c) 위원회에 의해 제안되거나 계류 중인 토지의 획득이나 처분

(d) 노사관계 혹은 고용협상

(e)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f) 해당 목적에 필요한 교신을 포함하여, 소송의뢰인의 면책을 조건으로 하는 조언

(g)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다른 법령에 의해 그에 관해 비공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문제

기타 규범

(5) 만일 회의안건이 「지방자치의 정보자유 및 사생활보호 법(the Municipal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따른 요구사항의 항목과 관련이 있다면, 만일 위원회 위원이나 소위원회 위원이 당해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장이라면, 회의는 공중에게 비공개되어야 한다.

결의

(6)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회의나 회의의 일부를 개최하기 이전에, 위원회나 위원회 위원은 결의에 의해 다음의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a) 비공개회의의 개최 사실

(b) 비공개회의에서 검토되는 문제의 일반적 특징

공개회의

(7) 다음 (8)항에 따라 회의는 투표실시 동안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예외

(8) 다음의 경우, 회의는 투표과정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a) 전 (4)항이나 (5)항에서 해당 회의가 공중에게 비공개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한다면,

(b) 해당 투표가 절차상의 문제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위원회의 간부, 직원 혹은 대리인, 위원회 위원, 위원회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등에게 지도나 명령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 경우

(언어)

제17조 위원회는 영어나 프랑스어 혹은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로 회의를 할 수 있다. 「2001년 지방자치법(the Municipal Act, 2001)」 247조 (1), (4), (5), (6)항 혹은 「2006년 토론토시법(the City of Toronto Act, 2006)」 195조 (1), (4), (5), (6)항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한다.

(지출)

제18조 위원회는 위원으로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한 여행경비 및 기타 비용에 대해 해당 위원에게 보상할 수 있다.

(부동산)

제19조 (1) 위원회는 지명권을 가진 의회의 승낙으로, 혹은 연합위원회의 경우 설립에 관련된 자치단체 의회의 과반수 동의로 다음을 행할 수 있다.

(a) 구매, 임대, 수용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위원회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토지를 획득할 수 있다.

(b) 건물을 건설, 증축 혹은 개조할 수 있다.

(c) 도서관 목적에 요구되는 규모보다 큰 건물을 취득하거나 건립할 수 있고, 건물의 나머지 여유부분을 임대할 수 있다.

(d) 위원회의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토지나 건물을 팔거나 임대 혹은 처분할 수 있다.

수용법의 적용

(2) 수용법(Expropriations Act)은 전(1)항에 의한 토지수용에 적용된다.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20조 위원회는

(a) 다른 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특징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능률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b) 필요한 곳에서 프랑스어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c) 하나 이상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해당 도서관들이 이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특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e) 위원회 회의의 시간과 장소, 회의의 소집 및 진행방식 등을 결정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의사록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f) 장관에게 보내는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법과 규정에 의거해서 요구되거나 때때로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g) 위원회의 부동산과 동산을 보증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h) 회계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군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한 분관 도서관의 운영)

제21조 군립도서관위원회는 군 의회와 관련 자치단체 의회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치단체가 군립도서관시스템의 일부로 참여하기 전에 공공도서관을 운영하였던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분관도서관을 운영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혜택

(연금)

제22조 (1) 위원회는 결의에 의해 직원 혹은 모든 직급의 종업원들과 그들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병가

(2) 위원회는 결의에 의해 직원 혹은 모든 직급의 종업원들에게, 「2001년 지방자치법」 281조 또는 경우에 따라서 「2006년 토론토시법」 220조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해당 방식으로 병가보상 제도를 제정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중에게 개방되는 도서관)

제23조 (1) 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입장료나 도서관자료 이용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특정 무료 도서관서비스

(2) 모든 위원회는 공중에게 다음을 허용해야 한다.

(a) 지정되거나 지정된 부류에 속하는 대출 자료를 예약하고 빌릴 수 있도록.

(b) 위원회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고정보서비스를 요금의 지불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3)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해당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전(1)항과 (2)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서비스

(b) 공공도서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건물 일부의 이용

(c) 위원회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 의한 도서관서비스의 이용

규칙

(4)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도서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규칙

(b) 공중의 도서관 입장에 대한 규칙

(c) 도서관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을 도서관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한 규칙.

(d) 규칙위반에 대한 벌금부과 규칙
(e) 규칙위반에 대해 도서관 혜택을 중지하는 규칙
(f) 도서관 및 도서관자산관리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를 규정하는 규칙

(예산)

제24조 (1) 공공도서관위원회, 군립도서관위원회나 군립도서관협동원원회는 지명권한을 가진 의회에, 매년 해당일 혹은 이전에, 해당 의회가 지정한 형식으로 위원회 목적을 수행하는 한 해 동안 요구되는 총액의 예산을 제출해야 한다.

예산의 승인

(2) 의회로부터 승인되거나 수정된 위원회 예산 총액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고 위원회용 배분 자금에서 위원회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동일사항

(3) 위원회는 승인된 예산에 따라 전(2)항에 의해 위원회에 지불된 자금을 다음 (4)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변용

(4) 의회는, 위원회 예산의 승인과정에서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언제나, 위원회가 전(2)항에 의해 위원회에 지불된 자금의 특정 금액 혹은 비율을, 승인된 예산항목과 달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사항: 연합위원회

(5) 연합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설립된 각 자치단체 의회에게 자신의 예산을 제출해야 하고, 연합위원회는 전(1), (2), (3), (4)항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될 경우

(6) 연합위원회는 자체 예산과 함께 자치단체 각각에게 부과되는 예산의 비율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예산이 위원회가 설립된 해당지역의 인구 1/2이상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의 의회에 의해 승인 혹은 수정되었다면, 위원회 예산은 모든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재정보고서 감사

(7) 공공도서관 위원회, 군립도서관위원회 혹은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는 사정에 따라 의회가 정한 일자 혹은 이전에 의회에게 매년「2001년 지방자치법」296조 혹은「2006년 토론토시법」139조에 의해 임명된 사람에 의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연차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사항: 연합위원회

(8) 연합위원회는 위원회 설립에 참여한 각 자치단체 의회에게 위원회의 연차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7)항은 연합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된다.

(도서관 목적의 채무증서)

제25조 (1)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을 위해 요구되는 토지 획득을 목적으로, 신축이나 개축하기위해서 혹은 도서와 기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위원회 또는 연합위원회에 의해 요구되는 총액은 위원회의 신청으로 지방자치 채무증서 발행에 의해 조달될 수 있다.

의회에 대한 신청

(2) 위원회의신청은 자치단체 의회 또는 위원회 설립에 참여한 자치단체 의회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의회의 신청 처리

(3) 의회 또는 하나 이상의 각각의 의회는, 신청서를 받은 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 혹은 신청서를 받자마자 가능한 빨리 개최하는 회의에서 해당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각 의회의 표결에서 투표결과가 가부동수가 되면, 해당 신청은 의회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채무증서의 발행

(4) 만일 의회나 관련 의회의 다수가 해당 신청을 승인한다면, 해당 자치단체 의회 혹은 다수 자치단체가 관련될 경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는 자치단체 의회는 '2001년 지방자치법' 또는 경우에 따라 '2006년 토론토시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채무증서 발행에서 요구되는 금액을 조달해야 한다. 모든 자치단체 의회는 희망에 따라 자체 채무증서 발행에서 요구되는 비율의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

군 예산: 자치단체에 의한 시설

(운영비)

제26조 (1) 군립도서관위원회의 운영비를 충족시키는 예산총액은, 군 의회가 승인함으로써 '2001년 지방자치법' 제289조 (1)항 (d)호 아래에 의해 군이 규정하는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분 징수

(1.1) 전(1)항에서 전술한 총액은 군의 상위수준 일반 과세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 목적으로 군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군립도서관에 참여한다면, 그럴 경우 해당 금액은 군의 상위 수준 특별 과세의 일부가 되어야한다. 이는 지방자치 목적으로 군의 일부를 이루고 군립도서관체제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들에게서 상위 수준의 목적에 비례하는 평가액에 근거해서, '2001년 지방자치법' 제311조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시설.

(2) 하나 이상의 참여 자치단체 의회는, 군립도서관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게 시설을 임대할 수 있고, 위원회 사업목적용 건물의 건축비용을 위한 자치단체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와 자치단체 의회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소유권은 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

(의회의 보조)

제27조 모든 자치단체나 군의 의회는 금전, 토지 혹은 건물의 방식으로 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록의 점검)

제28조 (1) 다음(2)항에 따라, 개인은 일상 업무시간 동안 위원회의 서기가 소유 혹은 관리하는 모든 기록, 도서, 계좌와 문서들을 조사할 수 있다.

예외

(2) 서기는 부서장이 '자치단체 정보자유 및 사생활보호법'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라 공개를 거부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전(1)항에 의한 조사를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서기는 해당 법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전(1)항에 의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계약)

제29조 (1) 자치단체 의회, 지방서비스위원회 혹은 인디언지역 의회 등은, 자치단체나 지방서비스위원회 지역의 주미들에게 또는 인디언 지역 일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대신, 공공도서관위원회, 연합위원회 혹은 주립도서관위원회 등과, 또는 아래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법권을 가지는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위원회와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된 기간과 조건에 의거하여 도서관서비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연보 및 기타보고서

(2) 자치단체 의회와 지방서비스위원회 또는 전(1)항에 따라 계약을 맺은 지역 의회는 장관에게 연간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법 혹은 규정이 요구하거나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모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의 지불)

제30조 (1) 장관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도서관 목적의 모든 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동일사항: 자치단체 등이 도서관서비스계약을 맺는 경우

(2) 장관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서비스 계약을 맺은 모든 자치단체와 지방서비스위원회 혹은 인디언지역 등에게 도서관목적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동일사항: 지역(regional) 자치단체의 도서관

(3) 지역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위원회를 설립한 경우는, 장관은 이 법에 의한 위원회처럼 도서관 목적의 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동일사항: 인디언지역 도서관 혹은 지방서비스위원회

(4) 인디언지역 의회 혹은 지방서비스위원회가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경우, 장관은 이 법에 의한 위원회처럼 도서관목적의 인디안 지역 또는 지방서비스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제2부
온타리오 도서관 서비스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의 설치 등)

제31조 장관은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을 온타리오 도처에 설립 및 지정할 수 있고,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의 경계를 결정하고 때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을 해산할 수 있다.

(회계연도)

제32조 온타리오도서관 서비스 구역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고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위원회)

제33조 (1)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두어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영어로(장관이 명시한 이름)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위원회, 불어로는 Conseil du service des bibliothèques de l'Ontario de(장관이 명시한 이름)으로 알려진 법인이다.

위원회의 구성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1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 내 모든 자치단체마다 공공도서관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 1인.

(b)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 내 모든 군마다 군립도서관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 1인.
(c) 만약 전(a) 및 (b)호에 의해 지명된 위원의 수가,
(i) 9명 보다 적은 경우, 장관이 지명하는 추가위원 수는 전체 위원이 9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거나,
(ii) 9명 보다 많은 경우, 장관이 지명하는 추가위원 수는 전(a) 및 (b)호에 의해 지명된 수보다 한 명 적은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첫 회의 등

(3) 장관 혹은 장관 대리인은 위원의 지명을 조정해야 하고, 한 회계연도의 첫 번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직무 임기

(4)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지명된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어느 쪽이 더 오래 걸리든지 자신의 직무를 유지해야 하고, 1회 이상 임기에 재임될 수 있다.

공석

(5) 위원회 위원 중 공석이 발생하면, 지명권한을 가진 공공도서관위원회나 군립도서관위원회 혹은 장관은, 경우에 따라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목표)

제34조 (1) 위원회의 목적은 장관을 대신하여 다음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a) 공중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위원회 및 기타 정보 제공자 간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는 것.
(b) 자문, 교육훈련과 서비스개발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위원회를 지원하는 것.

북부 온타리오의 직접 도서관서비스

(2) 북부 온타리오 도서관서비스 구역이라고 장관에 의해 지정된 온타리오 도서관서비스 구역의 위원회는, 29조 (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 의회, 지방서비스위원회 혹은 온타리오 도서관서비스 구역의 인디언지역 의회 등과 계약에 의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도서관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 권한과 책무

(위원회의 권한)

제35조 (1) 위원회는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한 권한을 가지며, 전술한 일반원칙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다음(2)항 (a)호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을 만들 수 있다.
(b) 결의에 의해 위원회를 대신하여 계획을 수행할 개인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위원회의 인장을 맡길 수 있다.
(c)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소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d) 공공도서관위원회, 연합도서관위원회, 군립도서관위원회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책무

(2)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장관이 정한 경영정책 및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b) 위원회 회의를 위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소집 방식을 결정하고, 정식 회의록을 유지한다.
(c) 장관에게 제출하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장관이 요구하는 기타 보고서를 작성한다.
(d) 위원회의 부동산 및 동산을 보증하기 위한 규정을 만든다.
(e) 회계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예산)

제36조 (1)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는 장관이 명시한 일자 혹은 이전에 그 해의 해당 구역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총액의 예산을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예산의 승인

(2) 장관에 의해 승인된 위원회 예산 총액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고, 장관이 고려하는 적절한 기간과 조건 및 시기에 예산총액 중 도서관사업 목적으로 입법부가 승인한 금액에서 위원회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재정보고서 등)

제37조 위원회는 장관에게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a)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회계감사 재무제표와 위원회의 프로그램 및 활동 내역
(b) 때때로 장관이 요구하는 그 밖의 정보

(총칙의 적용)

제38조 (1) 제14조 (1)항과 제16조 (1)항을 제외한, 제10조 (1)항과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위원회에 적용된다.

제3부 총 칙

(규정)

제39조 부총독(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도서관 용도로 입법부가 승인한 모든 자금의 분배에 대한 규정.

(b) 보조금 지불을 관리하는 조건의 규정.

(c) 공공도서관의 설립, 조직, 관리, 자산 및 규칙에 관한 규정.

(d) 제23조 (2)항 (a)호의 목적을 위한 대출자료 혹은 대출자료 분류에 관한 규정.

(전문도서관서비스위원회)

제40조 (1) 장관은 장관이 명시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입법부가 승인한 도서관 목적의 예산에서 전문도서관서비스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적용

(2) 제37조는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전문도서관서비스위원회에 적용된다.

토론토공공도서관위원회

(3) 토론토공공도서관위원회는 전문도서관서비스위원회로 간주되어야 하며, 온타리오지역 도서관들에게 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의 불이행에 의한 보조금의 보류)

제41조 위원회가 어느 회계연도에 이 법이나 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년도 위원회에 지불되어야 할 법적 보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장관에 의한 해산)

제42조 (1) 장관은 공공도서관위원회, 연합위원회, 군립도서관위원회, 군립도서관협동위원회 등이 해산 직전 2년간 도서관을 관리 및 운영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해산할 수 있다.

동일사항

(2) 장관은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해체되는 경우,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위원회의 자산과 채무

(3) 위원회가 전(1)항 따라 해산된 경우, 그 자산과 채무는 자치단체나 군에 귀속되어 인수되며, 연합위원회의 경우에는 연합위원회 설립에 참여한 자치단체 간에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분배된다.

동일사항

(4) 전(2)항에 따라 해산되는 위원회의 자산과 채무는 온타리오와 함께하는 국왕에게 귀속되어 인수된다.

[참고자료]

1) Government of Ontario, Canada. <http://www.gov.on.ca/>

2) Ministry of Culture, Ontario. <http://www.culture.gov.on.ca/english/index.html>

3) Public Library Act, Ontario. <http://www.e-laws.gov.on.ca/>.

캐나다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납본제도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적 출판물을 국가대표도서관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963년 '도서관법'의 제정 이래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실시하여 오고 있다.

캐나다의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납본제도의 기본법령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에서 "출판물의 납본"을 규정한 제10조(아래 별첨)에 근거하고 있다.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은 이 법의 제10조 2항에서 출판물 납본과 관련하여 주무장관이 관련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세 규정에 따라, 캐나다 유산부장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에 의해 2006년 12월 11일 제정된 하위법규이다. 이는 1995년 제정된 '국립도서관 도서납본규정(National Library Book Deposit Regulations)'을 대체하고 있다.

원래 캐나다에서 출판물 납본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것은 1537년 프랑스 프랜시스 1세 국왕에 의해 제정된 몽펠리에 칙령*(the Ordonnance de Montpellier*)을 기원으로 한다. 이후 출판물 납본의 전통은 캐나다의 정치적 독립이후에도 전국적 출판물 수집의 제도적 원리로서 지속되었으며, 1953년 '캐나다국립도서관'의 설립과 2004년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통합 이후에도 캐나다 출판물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응용되어 왔다.

캐나다에서 출판물의 납본은 당초 인쇄도서에 한정되었던 것이, 1965년에는 연속간행물이 추가되었고, 1969년 녹음자료, 1978년 시청각자료, 1988년 마이크로필름자료, 1993년 CD-ROM 및 비디오녹화자료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5년에는 디스켓 및 테이프 등 물리적 매체에 고정된 모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지도와 온라인출판물까지 납본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캐나다에서 납본제도로 수집되는 출판물은 인쇄물부터 인터넷자원까지 유·무형의 매체로 출판되는 모든 형식의 출판물을 포함하게 되었다.

2006년 제정된 납본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서 출판물을 생산하는 개인, 정부기관, 협회, 단체 등의 모든 납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100부 이상 제작되는 모든 출판물은 2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3부 이상 100부 이하 제작되는 초판 출판물은 1부씩 납본해야 하며, 3부 이하 제작되는 출판물은 납본을 면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로 제작되는 음악음원자료와 온라인 출판물 등에 대해서는 1부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납본절차에 따라서 출판자는 출판물 제작 전에 캐나다도서관기록관에 ISBN, ISMN, ISSN 등의 국제표준번호를 신청할 수 있고, 캐나다 CIP(Cataloguing in Publication, 출판시도서목록) 프로그램에 서지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근간도서서비스와 같은 거래출판물DB를 통하여 서점과 도서관 등에게 제공되는 해당 출판물의 임시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또한 납본의무자는 납본부수를 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간 후 일주일이내에 해당 출판물을 캐나다도서관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은 제출된 납본자료에 대하여 출판자에게 납본수령증을 발부하고, 출판물의 서지기술레코드를 생성하여, 국가서지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서지정보서비스를 개시한다. 한편, 캐나다도서관기록관에 제출되는 2부의 납본자료 중, 1부는 보존 장서에 수용되어 세심히 관리되고, 나머지 1부는 서비스장서에 비치되어 열람 및 복사 등 이용자 서비스에 제공됨으로써, 각각의 용도로 활용된다. <이하 법령 전문>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이 규정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제10조 2항에 따라 캐나다 유산부장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에 의해 2006년 12월 11일 제정됨.

(해석)

제1조 이 규정에서는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법"은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을 말한다.

"출판자"는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개인을 말하며, 해당 개인은 출판물의 내용을 감독하고 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비도서출판물 납본)

제2조 사서 및 기록관이 입수하기 쉬운 종이 이외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출판물과 그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 출판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i) 출판물에 포함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제해야 한다.

(ii) 해당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보안시스템이나 장치를 제거하거나 불용화 해야 한다.

(b) 사서 및 기록관에게 출판물 사본을 제출할 때,

(i)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것으로 출판자에 의해 특별히 고안된 소프트웨어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ii) 출판물에 첨부되는 매뉴얼 사본을 포함하여, 출판물 접근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타 정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iii) 출판물의 표제, 저작자, 언어, 출간일, 판형, 주제, 저작권정보 등을 포함하여, 출판물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부 납본)

제3조 제4조에서 언급된 부류의 출판물을 제외하고,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1부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출판물이 해당된다.

(a) 음악적 녹음자료

(b) 2개 이상 물리적 부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다매체 출판물

(c) 제작부수 100부 이하 출판물

(d) 요청에 의해 100부 이하 제작된 출판물로부터 복사 제작한 출판물

(e) 온라인 출판물

(납본요구)

제4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출판물에 대해서,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제10조 1항에 따라 2부를 제출하는 의무는, 사서 및 기록관으로부터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

(a) 온라인출판물을 제외하고 4부 미만 제작된 출판물
(b) 캐나다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캐나다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인쇄출판물
(c) 캐나다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녹음자료로서, 캐나다적인 내용이 없거나, 작곡자, 가수, 해설자, 지휘자, 관현악단, 연주자, 작자, 작사가나 제작자 등과 같은 중요한 기여자로서 캐나다인의 참여가 없는 것
(d) 이미 납본된 출판물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재발간물 또는 부분 발간물.
(e) 종이로 인쇄된 신문
(f) 사업 및 행사 등의 진행표
(g) 작가, 예술가 또는 출판자 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매권이 다른 것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창의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서 책을 포함한 출판물
(h) 교역목록, 광고, 홍보자료, 안내문, 가격표
(i) 운행시간표
(j) 해설 문구가 없는 백지장부
(k) 해설 문구가 없는 달력 및 비망록
(l) 교정본, 진행 중인 저작물, 사전인쇄물, 초고
(m) 교과목 이수과정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학위논문, 기타 저작물
(n) 문자 없는 화집 및 색도감, 아동용 절단 도서
(o) 신문보도자료, 안내전단
(p) 협회, 교구, 고용인 단체, 노조지부, 학교 등에서 발간하는 지역 이익단체의 회보
(q) 회의록 및 조례
(r) 포스터 및 깃발
(s) 도안, 모형, 설계도, 청사진
(t) 서표
(u) 우편엽서
(v)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앨범
(w) 오락기
(x) 온라인 토론그룹, 리스트서브, 게시판, 전자우편
(y) 포탈, 개인 웹사이트, 서비스사이트, 인트라넷, 다른 사이트에 대한 연계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웹사이트
(z) 유력한 데이터베이스 및 미가공데이터

(폐기)
제5조 1995년 국립도서관도서납본규정은 폐기된다.

(효력)
제6조 이 규정은 2007년 1월1일자로 실시된다.

[근거법령]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법정 납본

출판물의 납본

제10조 (1) 규정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이용되는 출판물을 제작하는 출판업자는 자비로 출판물의 두 사본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서 및 기록관리관은 다음과 같이 그 수령을 확인한다.

(a) (b)에서 언급되는 것과 다른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

(b) (2)항 (d)에서 규정된 부류에 속한 출판물의 경우,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부터 서면요구를 받고나서 7일 이내, 또는 그 요청에서 언급한 연장기일 이내

규정

(2) 장관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들을 포함하는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출판업자"를 정의하는 것

(b) 종이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출판업자들이 그들의 출판물을 사서 및 기록관리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조치에 관한 규정

(c) 오직 사본 한 부만이 요구되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d) (1)항의 의무조항이 오직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부터의 서면요청에 의해서만 적용받는 출판물의 부류를 규정하는 것

소유권

(3) 이 장에 의거하여 사서 및 기록관리관에게 제공되는 출판물은 여왕 폐하에게 귀속하며 캐나다도서관기록관의 소장 장서를 구성한다.

(4)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출판물의 모든 재판, 개정판 또는 변형은 별개의 출판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도서관연구소.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8.
2)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cited 2009.3.16].
<http://lois.justice.gc.ca/en/L-7.7/249401.html>
3) Library and Archives Canada. Legal Deposit. [cited 2009.3.16].
<http://www.collectionscanada.gc.ca/legal-derposit/index-e.html>.

터키

「국립도서관설립법」과
「국립도서관이용자서비스규정」

▌터키

「국립도서관설립법」과 「국립도서관이용자서비스규정」

– 「Law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
「User Services Regul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오스만제국의 역사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동서양 교류의 중심지로서, 엄격한 회교윤리를 신봉하지만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는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으로 통치되고 있다. 2004년 유럽연합의 후보국으로 지정되어 최근까지 유럽경제권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의 97%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등의 문화적 여건이 유럽연합의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지적되며 유럽연합가입이 지연되고 있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FAIFE, Committee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에서 발간하는 2007년 '세계보고서'에 의하면, 터키의 공공도서관은 1,179개관, 대학도서관은 115개관, 학교도서관은 19,684개관으로 소개되고 있다. 터키의 추정인구가 약 7,300만 명이므로 공공도서관 1관 당 약 6만2천여 명 수준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1관 당 8만여 명 봉사인구보다 양호한 보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터키국립도서관은 1946년 4월 15일 교육부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현재 앙카라공공도서관으로 쓰이는 새로운 건물에서 잠시 운영되다가, 1950년 3월 29일 공표된 새로운 '국립도서관설립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1955년 동 법령의 개정을 통해 '서지연구소(Bibliographical Institute)'를 설치하며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국립도서관은 점증하는 장서량 및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여 1965년부터 1982년에 이르

는 장기적인 건립계획 및 건축기간을 거쳐 1983년 8월 3일 신축 건물로 이전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터키 「국립도서관설립법」의 내용은 간결하다. 제1조에서 국립도서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2조에서 국립도서관의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조사연구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가의 문화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 이용가능한 모든 저작 및 기록을 수집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립도서관의 조직 내부에 서지연구소(the Bibliography Institute)의 설립을 규정하고, “터키의 국가서지와 터키어 기사색인을 작성하는 임무”를 기본으로, 국내 도서관 소장 출판 자료에 대한 공동목록 작성과 과학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정보센터로서 부가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2002년 제정된 터키 「국립도서관의 이용자서비스 규정」에서는 국립도서관 이용자를 대학교수, 대학 및 대학원생, 의원, 공무원, 군인, 공직퇴직자, 시각장애인, 연구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는 우리의 실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평생출입카드, 연간이용자카드, 일일출입카드, 임시이용출입카드 등으로 구분되어 이용카드를 발급받으며, 평생 및 연간이용카드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소속기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일부 열람공간은 평일 정규업무 시간에만 개방되고 있다. 또한 소장자료의 대출을 위해서는 직접방문과 이메일, 전화 등에 의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국립도서관의 각 주제전문 열람공간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라 열람 및 대출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서관자료는 원칙적으로 도서관 내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호대차협력 등에 의해 요청된 자료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최대 2주일간 대출이 가능하며, 국내에 대해 2개월, 국외에 대해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립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반출을 금지하고 이용통계를 집계할 목적으로 도서관등록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용서비스규정에 의하면, 이용자는 외투, 상의, 모자, 핸드백, 가방 등을 맡기고 입장해야 하며, 퇴관 시에는 이용자 소지 자료를 도서관직원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기타 이용자는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음식물 먹기, 커피나 차 마시기, 큰 소리로 대화, 핸드폰사용, 집단담화 등이 금지되며, 열람 구역에서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비디오, 녹음기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목록카드 등에 대한 그림그리기, 낙서하기, 점찍기, 찢기, 다른데 꽂기, 없애기 등이 금지되며, 목록카드나 컴퓨터를 손상하거나 옮기는 것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서관이용규정 및 직원의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는 도서관등록카드를 반납 받아 적절한 기간 동안 도서관이용이 금지되며, 동일사유가 재발할 경우 도서관카드 재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국립도서관설립법」

– Law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법률 제5632호
제정일 1950년 3월 23일
관보공표 1950년 3월 29일, 제7469호

제1조 (2003년 4월 16일 개정, 조항4848,737)
국립도서관이 문화관광부의 기관으로 앙카라에 설립되었다.

제2조
터키국립도서관은 모든 종류의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조사연구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가의 문화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 이용가능한 모든 저작 및 기록을 수집하는 임무를 가진다. 국립도서관은 이러한 임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작을 구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고, 공중에게 이들 저작물을 분류 보존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설비를 구매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제3조
국립도서관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지는 교육부가 제정한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4조
문화관광부는 개인 및 기관이 국립도서관에 기부하는 도서 및 장비를 수령한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위 명령에서 결정된다. 공공회계법 규정 제1050호는 금전적 기부에 관하여 적용된다.(1)

제5조
첨부된 명세 번호(1)에서 직급, 직무, 급여가 언급된 직원은 1946년 6월 10일자 법령 제4928호에 관련된 해당 명세 번호(1)로부터 해임되고, 대신에 첨부된 명세 번호(2)에서 직급, 직무, 급여가 언급된 직원이 배치된다. (2)

부칙
제1조 (이는 1955년 5월 18일자 제6568호 부가법령의 첫째 조항의 규정으로 부가조항으로 제정되었다) 국립도서관의 조직 내에 서지센터(a Bibliography Centre)가 설립되었다.
서지연구소(the Bibliographical Institute)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터키의 국가서지와 터키어 기사색인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는 모든 분야 가능한 서지를 편찬하고 출간하는 것, 또한 해당 부류의 연구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도서관 소장 출판 자료에 대한 공동목록을 작성하는 것.

동시에, 서지연구소는 과학자들이 국내외 출판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센터로서 봉사하고, 국내외 도서관간 인쇄자료 및 연속간행물의 교환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필름과 기타 기록물의 전시를 지원한다.(3)

임시 조항 1 : 관련 명세 번호(3)에서 언급된 직원은 1950년 예산법령에서 유래하는 (D)표시 명세의 교육부 부문에서 해임되고, 대신에 첨부 명세 번호(4)에서 언급된 직원으로 대체된다.

임시 조항 2 : (64 200)리라의 이전은 1950년 예산법령에서 유래하는 (a)표시 명세의 첨부명세 번호(5)에서 언급된 명령 간에 실행되었다.

제6조

이 법은 공표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제7조

이 법의 조항은 문화교육부에 의해 실시된다.(4)

(1) “문화교육부”라는 표현은 2003년 4월 16일자 법령 제4848호 제37조에 따라 “문화관광부”로 변경되어 기록되었다.

(2) 이 조항에 의해 확인되고 1955년 5월 18일자 법률 제6568호 제3조에 의해 재 변경된 직원은, 1970년 7월 31일자 법률 제1322호 일반인사법규 제9조에 의해 해임된 이래 해당 명세에서 기록되지 않았다.

(3) 서지연구소의 명칭은 1983년 12월 13일자 법률 제187호 포고법령 제45조에 따라 “서지센터”로 변경되어 기록되었다.

(4) 이 조항에서 언급된 “교육부”라는 표현은 2003년 4월 16일자 법률 제4848호의 제37조에 따라 “문화관광부”로 변경되어 기록되었다.

「국립도서관 이용자서비스규정」

– User Services Regul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제정 : 2002년 11월 9일 터키정부 관보 공포 제24931호
개정 : 2008년 3월 22일 터키정부 관보 개정 제2682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도서관의 이용자 및 연구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원칙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은 절차와 원칙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제3조 기준

이 규정은 국립도서관의 설립에 관한 법령 제5632호와 문화부의 조직 및 임무에 관한 법령 제4848호 제15조 등에 부가된 법령 제6568호 제1조에 대한 부칙에 따라 준비되었다.

제4조 정의

2002년 9월11일자 법령 제24931호로 관보에 공포되었던 국립도서관이용자서비스규정 제4조에서 규정하였던 도서관자료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서관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필사본, 귀중서적,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디스크, 콤팩트디스크, DVD, 레코드, 밴드, 서판, 지도, 우표, 화폐, 영화, 조각, 회화, 사진, 인쇄판, 신문 오림, 복사, 비디오, 장식, 터키 국가복권티켓, 광고, 전단, 표, 초상화, 포스터, 엽서, 기타 기록자료 등을 의미한다.

제5조 도서관자료이용

대학교수, 대학 및 대학원생, 의회 의원, 정부공무원, 군인, 퇴직자, 시각장애인, 연구자 등이 국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립도서관이용은 그들의 연구의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터키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학생들은 다른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도서관등록카드

국립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도서관등록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학교수, 대학 및 대학원생, 의회 의원, 정부공무원, 군인, 퇴직자, 교육수준에 관계없는 시각장애자 등은 평생출입카드를 발급받는다. 해당카드는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카드는 관리자의 필

요(카드형식의 변화 또는 도서관 이용시스템 및 기타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재 발급될 수 있다. '연간이용자출입카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발급된다. 해당카드는 매년 재 발급된다. '일일출입카드'는 이 조항에서 명시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일회성 이용자들에게 발급된다. 회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그들의 서면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임시이용자출입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카드는 일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제7조 도서관등록카드 수령조건

평생 및 연간 도서관등록카드는 관련기관에 소속하고 있음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증명하고 이용자출입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신청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허위의 사항을 기술하는 경우 도서관등록카드는 압수된다. 압류 카드는 공식기록으로 관장에게 전달되고, 1년간 이용자격이 박탈된다. 이용자격이 박탈된 이용자는 동일한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신규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 임시도서관등록카드를 신청하는 개인은 자신의 공식 신분증으로 소속기관을 증명해야 한다. 외국인은 특별허가등록과 여권을 보여주어야 한다. 도서관등록카드를 갱신하기 위한 의무사항은 분실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8조 도서관이용시간

도서관은 일반적인 국가종교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9시까지 개관한다. 그러나 비도서자료실, 아타투르크 문서실, E-문화 카페실, 이븐 이 시나(Ibn-i Sina)필사본실, 귀중도서 열람실, 음악 감상실, 지도열람실, 시각장애인용 음성도서부, 정보처리기술센터 등은 평일 정규업무시간에 개방된다.

소장 자료의 대출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 이용자는 이들 시간이외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전화 등에 의해 도서와 연속간행물을 예약할 수 있다.

제9조 도서관자료의 이용

도서관직원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을 소개하고 도서관장서 이용을 돕는 임무를 맡는다.

제10조 뮤쥬건 쿤부루박사(Dr. M jgan CUNBUR) 열람실

뮤주건 쿤부르박사 열람실에서는 인쇄도서가 이용된다. 이용자는 분류법이나 알파벳순, 온라인 등으로 제공되는 서지목록으로 도서를 검색하고, 신청서에 서지사항을 기록하여 데스크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아드난 오투겐 참고도서실

아드난 오투켄 참고도서실에는 백과사전, 사전 서지 등의 자료를 두며, 이들 자료는 참고도서실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들 자료의 복사 및 유사 제작 등을 제외하고 이 도서실에서 어떠한 책도 반출이 금지된다.

제12조 연속간행물 열람실

신문 및 잡지 등의 연속간행물은 연속간행물 열람실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분류법이나 알파벳순, (컴퓨터단말기의) 온라인 목록 등을 통하여 서지사항을 탐색하고, 신청서에 청구사항을 기록하여 데스크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고활자본 터키어 연속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다. 미 제본된 신문 및 잡지는 평일 정규업무시간에 이용될 수 있다. 이들 자료의 복사와 마이크로필름제작, 유사 제작 등을 제외하고 이 열람실에서 어떠한 책도 반출이 금지된다.

제13조 이븐 이 쉬나 필사본 및 희귀본 열람실

도서관의 아랍어 서신과 함께 필사본과 희귀본, 터키어 도서 등은 이븐 이 쉬나 필사본 및 희귀본 열람실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이 열람실의 자료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용될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관자료의 안전에 대한 도서관직원의 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들 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제외하고 어떠한 자료도 도서관 밖으로 반출이 금지된다. 훼손된 문헌과 기술적 제작이 불완전한 자료는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제14조 음악감상실

레코드, 밴드, 롤러 밴드, 카세트, 비디오녹화, CD 등의 시청각자료는 이 실에서만 이용된다. 이 홀은 시청(視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

제15조 비인쇄자료실

(레코드, 밴드, 회화, 포스터, 비디오녹화, CD 등의) 비인쇄자료와 순수예술분야 참고자료는 이 실에서만 이용된다. 이용자는 분류법이나 알파벳순, (컴퓨터단말기의) 온라인 목록 등을 통하여 서지사항을 탐색하고, 신청서에 청구사항을 기록하여 데스크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비인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제작을 제외하고 어떠한 자료도 도서관 밖으로 반출이 금지된다. 회화, 사진, 초상, 조각, 장식용 자료 등은 관장의 허락을 받아 이용될 수 있다.

제16조 지도열람실

소장 지도 자료는 지도열람실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지도열람용 탁자는 지도열람용으로만 사용된다. 지도의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자료의 사진복제 및 유사 제작을 제외하고 어떠한 자료도 도서관 밖으로 반출이 금지된다.

제17조 음성도서부

브라유식 점자도서와 전자매체에 기록된 오디오자료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음성도서부에서 제공된다.

제18조 특수열람, 연구실, e-문화 카페

이들 공간은 이용자 자가 열람을 위한 사적인 이용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관장의 허락을 받아 이용된다.

제19조 정보처리기술센터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정보처리기술센터에서 구독하는 현존 CD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출력자료와 CD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제20조 도서관자료의 예약

연구자가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날 재이용하기 위해 신청되는 자료는 해당 이용자를 대신하여 예약된다.

제21조 대출자료

이용자는 도서관 내에서만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재단 및 기관 그리고 상호대차 협력 등에 의해 요청된 자료는 관장의 허락을 얻어 최대 2주일간 대출될 수 있다. 이 대출기간은 국내에 대해 2개월, 국외에 대해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소장 도서는 장관, 차관, 차관보, 국장, 국립도서관직원 등에게 2주일간 대출될 수 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대출기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필사본 및 인쇄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대출이 허락되지 않는다. 회화, 사진, 초상, 유사 귀중본 비인쇄자료 등은 대출을 위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는 2주일간 음성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자료의 배달을 위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장애 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2조 복사와 마이크로필름 제작

상업목적의 복사 및 유사복제는 1951년 12월 15일자 법령 5846호 '지적자유와 예술법(Intellectual Freedom and Art Law)'의 조항에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외 연구자와 대학 및 기타 과학기관 등에 의한 마이크로필름 이용은 도서관 마이크로필름과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마이크로필름의 이용은 '공공재단 및 기관에 속한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기본사항'에 대해 각료회의 결정으로 제정된 1986년 9월 25일자, 제86/11038호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필사본과 귀중본, 신문, 희귀지도 등의 복사는 허락되지 않는다. 단지 마이크로필름제작만이 허용된다. 전문가 의견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저작물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될 수 없다. 동일 자료의 별도 사본을 구할 수 있으면, 이용신청은 해당 사본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및 복제본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제23조 출입통제

이용자의 출입은 통제되어야 한다. 출입통제의 목적은 도서관등록카드 없이 도서관을 출입하거나 자료를 반출하려는 개인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도서관이용 통계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제24조 입관규정

입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a) 이용자는 자신의 외투, 상의, 모자, 핸드백, 가방 등을 맡기고,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b) 도서관등록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압수된다. 압수된 도서관카드는 해당기록과 함께 관장에게 제출되어 1년간 자격이 취소된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도서관카드는 영구히 금지된다.

제25조 퇴관규정

퇴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자신의 책과 잡지 및 기타자료를 도서관직원에게 보여주어 해당 자료가 도서관 소장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26조 기타규정

이용자가 숙지해야 하는 규정

a) 음식물 먹기, 커피나 차 마시기, 큰소리로 떠들기, 핸드폰 사용, 집단토론 등은 카페테리아 이외에서 금지된다. 이용자는 밀폐된 구역에서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비디오, 녹음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b)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직원의 허락 없이 입관할 수 없다.

제27조 목록카드 및 컴퓨터의 사용

목록카드에 대한 그림그리기, 낙서하기, 점찍기, 찢기, 다른데 꽂기, 없애기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자는 목록카드를 자신의 좌석으로 가져갈 수 없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기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컴퓨터를 손상하거나 옮기는 것은 금지된다. 컴퓨터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는 도서관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국립도서관의 외부 사용

도서관서비스와는 별도로 국립도서관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위해 만든 회의실, 전시실, 로비, 식당 등의 구역 사용은 주무부처의 허가에 의한다.

제29조 처벌규정

이러한 규정을 소홀히 하거나 도서관직원의 주의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규정 및 카드소지규정에 반하여 행동하는 이용자는 관장에게 카드가 반납되며 적절한 기간 동안 도서관이용이 금지된다. 특정사유로 카드가 취소된 이용자가 동일사유로 적발되는 경우 도서관등록카드의 재발급은 엄격히 금지된다.

추가로, 모든 종류의 도서관 자료 및 장비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이용자, 그리고 기관명으로 시설을 배치 받은 기관은 함께, 각료회의 결정으로 시행 중인 '동산저당규정'(2006년 12월28일자 제2006/11545호 법령)에 따라 해당 손상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

제30조

이 규정으로, 2002년11월9일자 제24931호 관보에서 공표된 '국립도서관이용자서비스규정'은 폐지된다.

제31조 규정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2조 시행

이 규정의 조항은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시행된다. 이 규정에 부칙조항이 적용된다.

부칙

제1조 아타투르크(Atatürk)문서실

아타투르크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기록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자료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소장 자료는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4시~17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규정의 개정

관보공표 및 시행 : 2008년 3월22일 제26824호

개정조항 :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참고자료]

1) National Library of Turkey. Law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http://www.mkutup.gov.tr/menu/13>

2) National Library of Turkey. USER SERVICES REGUL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http://www.mkutup.gov.tr/menu/14>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10)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Ⅱ

2009년 6월 11일 인쇄
2009년 6월 15일 발행

발 행 인 : 모 철 민
기획·편집 : 도서관연구소(담당 정현태)
발 행 처 : 국 립 중 앙 도 서 관
도 서 관 연 구 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화: (02) 590-0653
팩스: (02) 590-0502
http: //www.nl.go.kr

인 쇄 : 신성인쇄상사(Tel. 02-2272-0345)

<비매품>